

본 백서는 FSC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 몽블랑과 모조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 농협중앙회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백서

Nonghyup(NACF) Reformation WhitePaper

부록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636-01

농협중앙회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백서 — 부록

인 쇄 2012년 12월 31일  
 발 행 2012년 12월 31일  
 발 행 인 서규용  
 편 집 인 박범수  
 지원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작 인쇄 디자인생선가게 02)3673-2220

이 책의 내용 중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전화 044)201-1751

본 책자는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농협중앙회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백서

Nonghyup(NACF) Reformation WhitePaper

부록

# Contents

## 제1장 회고와 전망

1. 농협개혁, 이제 시작일 뿐이다	006
2. 지역농협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협개혁의 연착륙 기대	008
3. 농민들의 희망을 살리는 시대적 과제	013
4. 진정한 협동조합 정신을 살려야	019
5. 끝까지 인내한 합의개혁	027
6. 협동조합 가치와 역할 재창출의 전기	039
7. 농협을 농민조합원에게	046
8. 17년 논쟁의 첫 매듭	051

## 제2장 농협개혁 관련 발표문

1. 청와대	060
2. 농림수산식품부	088
3. 농협중앙회	111

## 제3장 농협개혁 일지

1. 통합 추진 일지	120
2. 정부 농협개혁위원회 활동실적	122
3. 농협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122
4. 농협법 개정안 국회 논의 경과	124

## 제4장 언론 보도 목록

1. 중앙일간지	128
2. 전문지	130

## 제5장 성명서

1. 농협개혁위원회	136
2. 농협중앙회 회장 최원병	137
3. 단체	139

## 제6장 법령

1. 농업협동조합법	172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34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47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49

# 제1장

## 회고와 전망

# 제1장

## 회고와 전망

### 1. 농협개혁, 이제 시작일 뿐이다

최인기(전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3월 경제사업과 금융사업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논의 17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농협중앙회 설립 50년 만에 조합원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판매농협으로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에는 수익성 높은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주인인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어왔다. 하지만 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표류하였고, 2011년 3월 법이 통과되기까지 그 진통은 계속되었다.

2012년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개정 농협법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면, 농협중앙회 개혁의 마무리는 요원해 보이기까지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로서 개정 농협법을 통과시켰던 필자조차도 완벽한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협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2년 3월 2일 개정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분리가 사실상 시작되고 8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당초의 약속과 달리, 정부는 자본금 지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꿔 농협중앙회에 채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 출자분조차도 산업은행 민영화에 가로막혀 무산될 처지에 있다. 출범만 하면 판매농협으로 탈바꿈하리라던 기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일각에서는 개정 농협법을 백지화하고 사업분리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농협법 개정 당시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답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주인인 회원조합과 농민들까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농협개혁은 이대로 좌초될 수도 있다.

문민의 정부 시절인 1994년 필자가 농림수산부장관 재직 때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의 일환이었던 농어촌발전계획의 하나로 농협중앙회 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를 위한 독립사업부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초로 제도화의 틀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일종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었다. 장관 퇴임 후, 15년 만에 농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18대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운명처럼 농협중앙회 개혁은 첫 과제가 되었다.

농협중앙회 개혁은 17년이라는 논의과정만으로도 어느 누구도 쉽사리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강경했던 농민단체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렸고, 사업분리 방식에 있어 조합으로 할지 지주회사로 할지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의견이 팽팽해 조율은커녕 이번에도 농협법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농협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소명임에는 분명하였지만, 과제를 푸는 데에는 누구하나 소신을 갖

고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누구도 사업분리로 인한 득실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뜻 나섰다가 실패라도 하게 되면 그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특히 표를 구걸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무엇보다 첨예한 농협개혁 문제에 선봉리 뛰어들어 결론을 내려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

17년간 영킬 대로 영킨 농협개혁이라는 실타래를 끊어버리지 않고서, 풀겠다고 욕심을 냈다면 우리는 또다시 17년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고 농협개혁은 그렇게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도 해야 하는 게 사명이라 여기고, 시대적 과제 앞에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고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영커버린 농협개혁의 실타래를 끊어 '농협을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시작은 순탄치가 않았다. 정부는 "농협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준비기간 동안 쟁점과 이견을 조정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와 국민, 그리고 농민 조합원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민단체 역시 의견이 엇갈리면서 '농협은행을 상장 후 매각하자는 의견과 농협은행을 존속시키되 매각은 절대 안 되며 사업분리 이후에도 이익을 경제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는 지주회사 방식을 농민단체는 협동조합 방식'을 고집하면서 맞섰다.

나는 농협개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농협법 개정의 핵심은 농협이 주인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데 있는 만큼, 경제사업에 대한 담보가 없는 농협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견과 쟁점을 농협개혁의 원칙에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무엇보다 사업분리 방식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농협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지주회사나 협동조합이냐는 결국 지배구조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직접 소유하

느냐 아니면 농협중앙회가 소유하느냐'인데,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출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처럼 품목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사업으로 출자가 몰릴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지배력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필자가 직접 펜을 들고 당시 박현출 농림수산물부 기획조정실장(2012년 농촌진흥청장 승진) 등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대폭 손질'을 하기 시작했고, 개정 농협법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분리를 넘어, 농협중앙회를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돌려주는 판매농협으로 변화하고, 금융사업도 농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주회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갔다.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배구조가 정해진 다음 국회에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분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6조 원가량의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놓고 또다시 논의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은 무엇보다 자율성 보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본금 지원이 자칫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수하기 쉬운 금융사업에만 국한해 지원할 경우 상장 후 매각이라는 방식으로 민영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오랜 진통 끝에 국회는 '정부가 6조 원을 출자하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의결 우선주로 하며, 정부 보유 주식의 현물출자일 경우 시장 가치가 높은 산업은행 등의 주식으로 출자'하도록 정부(기획재정부·농림수산물부)의 약속을 받아 법안을 마무리하였다.

2011년 3월 4일 금요일, 드디어 역사적인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책무를 설립 50년 만에 농산물 판매·유통 중심의 경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협 자본금의 30% 이상인 5조 4천억 원을 경제사업



부문에 우선 배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 통과 직후, 위원장으로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로 공동생산·공동유통·공동이익이라는 농협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농민이 주인인 농협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 통과로 농협개혁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농업계와 여야 정치권이 실질적인 농협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간곡히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법을 바꾸는 것도 법을 운영하는 것도 모두 사람의 몫이다.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기 위한 법적 단초를 마련한 것은 국회지만, 이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결국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몫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더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농민들의 불신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농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3월 농협법 공포 후, 1년이 지나 농협중앙회 사업분리가 되었고 이제 9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농협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어느 역대 정권보다 농협개혁에 매달렸던 이명박정부는 초심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 책임이 두렵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가가 이르긴 하지만 농협중앙회 역시 주인인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보다는 철저히 농협중앙회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들께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농협개혁은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에만 맡겨서도, 감독기관인 정부에만 맡겨서도 완수될 수 없다. 역설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개혁이라면 이미 개혁이 아니다.

농협법 통과 당시 밝힌 것처럼, 농협개혁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어려울 때일수록, 실타래가 엉킬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란 결국 주인인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농협개혁의 마무리이

자, 새로운 농협개혁의 출발점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50년 농협중앙회의 역사, 17년간 이어온 개혁의 열망, 1년여 동안의 시행착오’가 농업협동조합의 뿌리를 깊게 내려 회원조합과 조합원 농민에게 진정으로 실익을 주는 협동조합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농민·조합·정부·국회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여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간곡히 당부한다.

## 2. 지역농협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협개혁의 연착륙 기대

성진근(충북대 명예교수, 전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장)

2008년 3월 어느 날, 만찬 초대에 응하여 들어선 서울 어느 음식점에는 농협 최원병 회장과 집행간부 한 분이 계셨다.

농협개혁 문제를 다룬 위원회를 농협중앙회 내에 새로 구성해서 개혁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해서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달라고 했다. 인사를 겸한 가벼운 식사자리 정도로만 알고 별생각 없이 왔던 터라 의외의 요청에 솔직히 좀 놀랐다.

“왜 개혁작업에 나서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진정성이 없는 통과의례 정도의 개혁이라면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는 점, ‘비료, 사료, 유류 등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점,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쉽지 않아서 신용사업마저도 흑자경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한미 FTA 협상타결과 관련해서 농협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 등 농협개혁 작업에 나선 배경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위주로 하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만이 있었던 터라 농협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개혁작업의 진정성이 느

껴졌다.

개혁(改革)이란 껍질을 바꾸는 작업인데 쉽지만은 않겠지만 관련주체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위원장직 제의를 수락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에서 제시한 인선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농민단체 대표 5명(박의규, 한도숙, 윤요근, 김동환, 김기숙 씨 등), 학계 대표 5명(성진근, 김정주, 이만우, 양승룡, 박성재 씨 등), 소비자단체 대표 2명(김재욱, 박정희 씨 등), 조합장 대표 5명(조성열, 최계조, 이규삼, 홍성권, 문병완 씨 등), 농협중앙회 대표(서인석 상무) 등 18명의 위원들로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8년 3월 24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첫 회의를 가졌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농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과제와 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과제 및 농협중앙회 전략기획단이 취합하여 제시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제시된 개혁과제 중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경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별도의 용역과제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분리 이후의 신용사업의 건전성(BIS 기준 등) 확보대책 등 농협 자체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농협조직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영방식 재설계(Reengineering)에 개혁작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전체 개혁과제는 ① 조직 구조조정, ② 사업혁신과 재편, ③ 지배구조 개선 등 3개의 유형별로 나누었다. 보다 치밀하고 집중된 논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직 구조조정 소위원회는 박성재 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으로, 사업혁신과 재편 소위원회는 양승룡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는 김정주 건국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서 3개월 간 총 10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토

론과 조정과정을 거쳤다.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상정된 개혁과제는 1개월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총 14개의 단기 및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확정하였다.

2008년 7월 10일 제7차 농협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확정된 농협개혁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농식품부 박현출 농정국장 입회하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농협개혁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 독려하기 위한 별도의 가칭 농협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5개월 간의 농협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 선정된 농협개혁과제의 개요

각계에서 제기된 개혁과제는 총 64개 과제였다. 이 중에서 농협조직이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30개의 작은 과제를 제외하고 남은 과제는 34개 과제였다. 34개 과제 중에서도 농협이 자체계획으로 개혁하도록 하는 권고과제 20개를 제외하고 개혁위원회가 방향을 제시한 과제는 단기 개혁과제 11개, 중장기 개혁과제 3개 등 14개 과제였다.<sup>1)</sup>

개혁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룬 14개 과제는 조합 개혁과제 3개와 중앙회 개혁과제 11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조합장 선출방식과 중앙회장 임기 등에 관한 개혁과제는 위원회 내부의 의견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1안과 제2안 등의 형식으로 복수의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먼저 조합 개혁과제는 3개의 단기과제로 확정되었다.

제1과제는 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추진하는 과제로서 시군당 2~3개소 또는 1시군 1조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합병·규모화하되, 규모화가 진행되는 경과기간 중에는 조합의 신용사업을 군단위 1개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제2과제는 도시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제로서 조합별로 300평 이상의 농축산물 판매장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농촌조합에 대한 강화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3과제는 조합장 선출방법 개선과 전문경영인 책임경영체제 강화과제로서 조합장 선거방식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1) 단기과제는 1~2년 안에 완료할 과제이고, 중장기과제는 3~5년 내에 완료할 과제이며, 권고과제는 농협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과제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토록 하는 1안과 대의원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가능토록 하는 2안이 복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제를 의무도입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앙회 개혁과제는 8개의 단기과제와 3개의 중장기과제 등 총 11개 과제로 확정되었다.

현재의 종합농협체제하에서 신용사업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사업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조직 구조조정 등에 중앙회 개혁과제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단기과제는 총 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1과제는 중앙회장의 자격, 권한, 선출방법 개선의 과제로서 핵심은 중앙회장의 임기였다. 제1안은 현행대로 4년 임기에 1회 연임이고 제2안은 4년 임기 단임제가 복수로 제시되었다. 제2과제는 대표이사 및 집행간부 선출방법 개선의 과제였다. 부문별 대표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하여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집행간부는 부장급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받은 3인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토록 하였다. 제3과제는 중앙회 이사회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과제였다. 중앙회 이사 수를 현행의 35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사외이사 추천은 대표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였다. 제4과제는 감사기구 독립과 선출방법 개선과제였다. 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조합감사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의 3배수 추천으로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토록 하였다. 제5과제는 중앙회 구조조정 과제였다.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의 기구 축소와 인원감축 및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선출방법을 통일시키고 두 경제사업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제6과제는 계열사 경영평가방법 개선 등 경영혁신 과제였다. 경영평가에 의한 임원 재신임과 자회사 직제 축소 및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계열사 임원선출방법을 공모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제

7과제는 농축산 홍보마케팅 강화 및 농협통합 브랜드 육성 과제였다.

중앙회 개혁을 위한 중장기과제는 총 3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1과제는 세계적인 선진협동조합금융그룹 발전방안 과제로서 신·경 분리에 의한 사업분리와 연계하여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해외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이었다. 제2과제는 해외신시장 진출 및 해외농업 자원개발 진출과제로서 해외농축산물 직영판매장 진출과 해외농업 자원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3과제는 조합상호금융과 중앙회 은행의 운영체제 개편과제로서 상호금융과 중앙회 금융간의 상호교환(빅딜)을 추진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제를 도입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제출되었던 개혁과제를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현행제도와와의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사족(蛇足)같지만, 개혁과제가 확정되기까지의 몇 가지 숨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가 더 재미있고 때론 역사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앙회장 임기 단임제(單任制) 문제

“회장임기를 단임제로 하는 것이 농협지배구조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 농협개혁위원회를 마치고 회장실에 인사차 들러서 회장 임기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최원병 회장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된다.

부실조합 구조조정과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던 어느 날, 회장면담을 신청했는데 회장이 출타 중이어서 돌아오는 대로 연락해 주겠다고 했다. 회의 도중에 메모가 왔다. 회장님이 돌아오셨으며 잠시 후 다시 외출하실 예정이란다.

20분간 휴회선언을 하고 농협간부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을 찾았다.

신용과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

표. 주요 농협개혁과제 내용 검토 대비표

과제명	현행	개혁과제	비고
1. 조합 규모화,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단에 의한 합병 권고</li> </ul> </li> <li>조합선택권 고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원 가입 구역: 시·군·면·리</li> <li>2개 이상 지역농협 가입 불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에 의한 단계별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별 2~3개 또는 1시·군 1조합</li> </ul> </li> <li>조합선택권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 구역: 동일 시·군 내</li> <li>동일기구가 1개 조합만 선택</li> </ul> </li> </ul>	법개정 (단기)
2. 도시농협 역할과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사업 소극적, 신용사업에 치중</li> <li>농촌조합에 자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명 이상 농축산물 판매장 의무 설치</li> <li>농촌조합에 자금보다 농자재 등 지원</li> </ul>	자체 추진 (단기)
3. 조합장 선출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장 선거방식 자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선, 간선제 조합이 선택</li> </ul> </li> <li>상임조합장 경우 2회 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 없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안) 조합장 선거방식 자율결정 상임, 비상임 모두 2회 연임</li> <li>(제2안) 대의원회에서 간선 선출 비상임, 1회 연임</li> </ul>	법개정 (단기)
4. 중앙회장 자격, 권한, 선출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장 임기 4년, 연임 제한 없음</li> <li>이건조정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조정권은 전무이사에게 위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안) 회장 임기 4년, 1회 연임</li> <li>(제2안) 회장 임기 4년, 단임 제한</li> <li>이건조정권 부여</li> </ul>	법개정 (단기)
6. 중앙회이사회 권한,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 수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장 20, 집행부 5, 사외이사 10</li> <li>조합장이사는 추천회의 추천</li> <li>사외이사는 회장 추천</li> <li>조합장이사와 사외이사 수당 동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 수 15명으로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장 6, 집행부 5, 사외이사 4</li> <li>조합장 이사는 대의원회 연기명 선출</li> <li>사외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li> <li>조합장이사 수당은 실비로 지급</li> </ul> </li> </ul>	법개정 (단기)
7. 감사기구 독립 선출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li> <li>조합감사위원장: 회장 추천, 대의원회 동의, 회장 임명</li> <li>중앙회 감사위원(6): 이사 중 선출</li> <li>중앙회 감사위원(5): 위원장제정, 회장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장: 대의원회 직접 선출</li> <li>조합감사위원장: 추천위원회 3배수 추천, 대의원회 동의, 회장 임명</li> <li>조합 및 중앙회 감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4명 구성, 추천위 추천, 위원장 임명</li> </ul> </li> </ul>	법개정 (단기)
8. 중앙회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경대표: 회장 추천, 대의원회 동의</li> <li>축경대표: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 회장이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경제사업 특례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지역)본부 기구·인원 감축,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간부 정원 축소, 유사부서 통폐합</li> </ul> </li> <li>농축경대표이사 선출방법 통일</li> <li>농축경 통합은 중장기과제로 추진</li> </ul>	자체 추진 법개정(단기)
9. 계열사 경영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열사별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신임 기준 없음</li> </ul> </li> <li>주로 중앙회에 의존한 소극적 경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평가에 의한 임원재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위 10% 퇴출, 상위 10% 보상 확대</li> </ul> </li> <li>직제 축소 및 구조조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자 사업수행 강화, 중앙회 의존 타파</li> </ul> </li> </ul>	자체 추진 (단기)
10. 계열사 임원 선출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원은 계열사주주총회에서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li> </ul> </li> <li>4개 계열사의 임원 공모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 원칙,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하여 대표이사가 임명</li> </ul>	자체 추진 (단기)
11. 농축산물 홍보 강화, 통합 브랜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회, 조합, 지자체별 브랜드 산재</li> <li>농협이 및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전담부서 각각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미디어 매체 도입, 브랜드 차별화</li> <li>브랜드 통합 관리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랜드 통합 등 대표 브랜드 육성</li> </ul> </li> </ul>	자체 추진 (단기)
12. 세계적인 협동조합금융 그룹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까지 사업 분리방안 확정, 추진</li> <li>현재 외부출자한도는 사업별 15%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분리방안과 연계, 지주회사체제 도입</li> <li>외부출자한도 100%까지 확대</li> </ul>	자체 추진 법개정(중장기)
13. 해외 신시장 진출, 해외 농업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은 뉴욕, 중국지점 설치 준비 중</li> <li>경제는 해외시장 및 자원개발 전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농축산물판매장 진출</li> <li>해외 농업자원 개발 청사진 제시</li> </ul>	자체 추진 (중장기)
14. 상호금융과 중앙회 금융의 운영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조합 신용사업 치중, 경제 소홀</li> <li>농촌조합은 중앙회와 사업 경험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금융과 중앙회간 빅딜(상호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도시조합은 중앙회로 통합, 이외의 중앙회 사무소는 조합으로 통합</li> </ul> </li> <li>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li> </ul>	법개정 (중장기 연구과제)

자료: 농협중앙회 전략기획단, 2008.7.





실조합의 퇴출과 영세조합의 합병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중앙회장의 연임(連任)제도가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 증거로 영세·부실조합의 경영개선 지원목적으로 연간 6~7조 원의 무이자 자금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중앙회장의 재선을 위한 '당근'으로 오해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조합의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심정으로 중앙회장 단임제를 수용해 주십시오.” 회장은 창밖만 쳐다보고 말이 없었고, 동석했던 간부직원의 어색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회장 단임제는 전체 회의에서 격론 끝에 소수의견으로 밀렸다. 그래서 제1안과 제2안으로 개혁안이 정리된 것이다.

#### 축산경제부문 구조조정 문제

중앙회 및 지역본부의 기구 축소와 인원감축을 통한 중앙회 구조조정을 논의하던 회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중앙회 관리구조를 슬림화한다면서 자회사만 잔뜩 늘여서 전체적으로는 관리인원이 훨씬 늘었다’는 힐난 속에서 개혁위원들의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집행간부 정원 축소와 인력 감축을 위한 개혁과제가 선정되었다. 감축된 인력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컨설팅 인원을 늘려서 농민조합원의 부채상환 잠재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중앙본부 유사기능 통폐합 문제에서 축산경제부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과 축협중앙회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지 10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관행은 화학적인 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한 지붕, 두 가족의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바로 잡아서 효율화시킬 때가 왔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축산부문의 조합장과 학자들의 반대가 집요했다.

“같은 농협 명단을 가진 직원들이 한 사람은 양파와 과일을 들고, 다른 사람은 소고기와 계란을 들고 군납 마케팅 활동을 하는 업무 중복기능이라도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축산부문의 특수성과 독자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밤 중에 축산경제대표와의 장시간 통화를 통한 답판 끝에 농·축 경제대표 선출방법의 통일, 중복업무는 가능한 업무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중장기과제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시키자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 구성된 농식품부의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축산 쪽 주장대로 원위치되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역진한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 상호금융과 중앙회 은행금융의 빅딜 문제

“인구 1만 5천 명의 보은읍에는 농협중앙회 지점과 농협, 축협, 원협과 각 지소 등 총 8개의 농협간판을 내건 농협점포들이 치열한 예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통합이 어렵다면 신용사업연합화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회지부는 지역농협으로 이관하고 농민조합원이 없는 도시농협은 중앙회지점으로 바꾸는 빅딜(상호교환)을 이 기회에 성사시켜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조합장, 특히 도시농협 조합장들의 반대가 매우 심해서 결국 이 문제는 중장기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개혁이란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주체들이 갖은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혁은 피할 수가 없다.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5개월간의 농협개혁위원회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하나들이 아니다.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가 필요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잘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점,<sup>2)</sup> 대통령의 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한 정부의 농협개혁위원회가 신·경 분리문제에 관련된 자본금 배분문제에 함몰되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의 현장주체인 지역농협개혁과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고민과 지혜를 나누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정성 부족도 아쉬웠다. 심지어는 농식품부의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이하 개혁위원 중 어느 한 사람도 자문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화라도 걸어온 적이 없었다.

개혁이란 실패와 시행착오를 딛고 완성해 가는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 농협개혁에 거는 기대

구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된지 50년 만에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다시 분리·독립시키는 소위 신·경 분리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손쉬운 돈 장사(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농협의 사업운영 행태를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잘 팔아 주는 일(경제사업)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개혁작업의 최우선 목표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사업은 청과도매물류센터 건설과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 쌀 가공공장 설치, 소매시장 확충 등 농업경제부문과 축산물 종합물류센터와 도축시설 확충 등의 축산경제부문 및 유통계열화 시스템 구축 등 총 15개 분야의 4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규모이다. 여기에는 정부지원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sup>3)</sup>

‘판매농업 실현’을 통한 농민조합원의 실익 증대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을 추진해야 할 현장주체인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추진능력의 강화와 지역농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된 농협개혁은 중앙회 통합에만 치중하였을 뿐 농촌현장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역 농협개혁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판매조합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정부의 농협개혁 역시 본질적인 지역농협의 개혁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이미 공용화된 중앙회(경제지주) 사업규모만 더 키워 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조합경영의 규모화와 광역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농협의 통합문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농협 신용사업의 고비용·저효율 체제마저 개선시킬 수 없다. 농촌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고 농가인구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농협간판을 내건 금융기관은 전혀 줄지 않은 채 제한된 지역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농협의 통합이 어렵다면 농협 신용사

업을 연합사업화하여 광역화, 규모화하는 시책이라도 이번 기회에 실현해야 조합금융의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비율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액도 줄일 수 있다.

왜 아까운 국민세금을 농협개혁 작업에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다시 따져 봐야 한다. 막대한 정부자금의 지원효과가 농협조직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실익 증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추적해야 한다. 농협의 자체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재설계 추진을 조건부로 하여 정부지원액을 늘려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규모화에 의한 효율화와 거래교섭력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판매농협’의 실현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사업구조 개편 시기를 다소 늦추는 일이 있더라도 경제사업 현장주체인 지역농협 개혁과 신규 경제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협개혁 작업이 연착륙(Soft landing)하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이다.<sup>4)</sup>

### 3. 농민들의 희망을 살리는 시대적 과제

김안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08년 12월 초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대평 장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난났더니, 대통령께서 가락동 도매시장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협개혁을 촉구하셨고, 이에 따라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니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10여 년 이상을 끌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한 난제와 씨름할 생각에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으나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한 일이기에 거절하기 힘들었다. 대신 위원회 구성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결정하되 위원회의 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의 안으로 받기로 하였다.

바로 며칠 후인 12월 9일 농민단체 대표 3명(협동

3) 체제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 농협이 추정된 부족자본금 규모는 12조 2천6백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6조 2천6백억 원을 제외한 6조 원 규모의 정부지원액이 요청되었고, 총 5조 원 규모의 정부지원액이 진통 끝에 결정되었다.

4) 2011년 9월 농협금융정보는 중앙회 지점 1,149개소, 회원조합점포 4,451개소 등 합계 5,60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IMF 환란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지만 농협금융점포는 고비용·저효율의 영세경영체제를 지속해 왔다.

2) 조합 합병 등 개혁과제에 의해서 상실하게 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합장들의 집요한 반대가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조합연구소 이사장 정재돈, 한농연 사무총장 손재범,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 기원주),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대표 3명(중앙회 상무 박재근, 부산 대지농협 조합장 최계조, 순천농협 조합장 강성재),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4명(서울대 교수 김완배, 중앙대 교수 윤석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종만,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의식), 정부 대표 1명(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정학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공동위원장은 정학수 차관(나중에 민승규 차관으로 교체)과 본인이, 간사는 농정국장이 맡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회의의 주제는 민간위원인 본인의 몫이었다.

농협개혁 관련 내용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으므로 국회 일정을 고려해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2차 회의에 의제의 내용과 논의 순서를 상정하였다. 의제는 크게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 일선조합 관련 사항, 경제사업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설정하였다. 농협중앙회 관련 의제는 다시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사회와 기능 활성화,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 사업대표이사 등의 추천권 및 임원의 자격, 감독기능의 독립성 보강, 중앙회 및 자회사의 조직 개편 등 6개 소의제로 구분하였다. 일선조합 관련 의제는 조합장의 비상임화 및 이사회 기능 강화, 조합 선거주기의 일원화, 농업인에게 '조합선택권' 부여 및 조합 간 합병 촉진, '약정조합원'제도의 도입, 조합의 경쟁력 제고 등 5개 소의제로 구분하였다.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의제는 중앙회 자금의 농업인 실익지원 강화, 품목별 조합의 육성,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강화, 조합의 가격안정사업 강화 등 5개 소의제로 구분하는 등 모두 16가지의 소의제를 선정하였다.

위원들 대부분이 농협관련 전문가인 까닭에 의제 선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문제는 의제별 논의의 순서였다. 농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가 가장 중차대한 이슈이므로 이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위원들은 신·경 분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하지만 대안작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므로 이것만을 논의하다가 자칫 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성미 난무하는 등 엄청난 진통 끝에 신·경 분리문제는 가장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는 대신 나머지 15개 의제에 대한 대안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합의하였다.

연말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바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지만 일주일에 1~2회 위원회가 소집되었음은 물론 오전에 시작된 회의가 늦은 저녁시간까지 계속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위원들 간 문제에 대한 관점 및 이해관계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논쟁을 넘어 감정싸움까지 이어지면서 정회와 재·개회가 되풀이되었음은 물론 회의장을 박차고 가버리는 위원들도 속출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지금까지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주재해 보았지만 그때만큼 치열했던 경우는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월 8일에 개최된 제6차 회의까지 신·경 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개최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역사적 기록은 물론 농협개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향후 작업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15개 의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회 관련 의제 중 이사회와 기능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사 수는 현행 35명보다 축소토록 하며, 조합장이사는 전체 이사의 1/2 이상으로 하되 여기에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 전원과 별도로 선임될 품목조합 대표를 포함토록 하고,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는 폐지토록 하며, 이사의 전문성 제고 및 자문위원 활용 등을 위해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실시하며, 선출직 회장이 차기와 관련 없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단임(單任)제를 도입하였다. 사업대표이사 등의 추천권 및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문이사, 조합감사위원

장, 사외이사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에서 선출토록 했다. 사외이사 중 일정 수의 이사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선임하고, 농업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과 전문이사의 경력요건 중 '농협중앙회 10년 이상' 조건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토록 하였다. 감독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감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상임 감사제를 도입하며, 감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토록 하였다. 중앙회 및 자회사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하고, 유사기능의 자회사들은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며,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은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과 결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하며, 조합원·대의원·조합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산하 조합원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일선조합과 관련된 의제 중 조합장 비상임화 및 이사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조합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임화를 추진하되 우선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토록 하며,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의 조합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사외이사 영입을 의무화하고,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이사회에 상임이사 업무성과 평가 및 해임건의권을 부여하며,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경제사업 비중 확대) 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하도록 하였다. 조합임원의 선거주기가 제각각인 탓에 거의 매년 선거가 치러져 조합이 정치장화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선거주기를 4년 기준으로 일원화하도

록 하였다. 농업인에 대한 조합선택권 부여 및 조합합병 촉진과 관련해서는 조합가입의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확대하되 부작용에 대한 보완을 위해 합병 외 조합신설 금지, 지사무소 설치 제한, 조합재가입 기간 제한(1년 6개월), 조합원 이탈 등 설립요건 미충족 시 행정조치 유예(2년), 이사회 조합원 확인 기능 강화 등의 장치를 마련하며, 정부와 중앙회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하여 광역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고 합병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약정조합원제도와 관련하여 농협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고, 약정조합원에 대해서는 배당 및 시설이용에 있어 우대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합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전문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며, 조합과의 사업경합 금지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대의원까지로 확대하고, 우선출자 대상에 조합원도 추가토록 하였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의제 중 중앙회 자금의 농업인 실익지원 강화를 위해 조합지원 자금(조합 상호지원 자금, 회원지원 적립금)을 조합합병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부문에 집중 지원토록 하며, 중앙회 고유목적 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 비중을 확대하고, 중앙회 교육지원 사업비 중 경제부문을 경제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다. 품목별 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쌀·한우·양돈·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국단위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결성토록 하되 우선참여희망 조합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해 중앙회의 출자를 허용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우선토록 하며, 향후 다른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케 하였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 대상을 중앙회·타 공동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까지 확대하고, 농업인·농협직원·관련업체 등에 대한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출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며, 정책자금을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회에 보증기금을 설치하

고, 도시조합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일정액의 출자를 의무화하였다.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지에 농산물 판매장 건립 시 도시조합 참여를 의무화하며, 품목조합과 도시조합 간 상호출자를 허용하고, 도시 지역 원예조합이 공판장(경매방식)운영 위주에서 벗어나 거래방식의 다양화(수익매매 방식 도입 등), 상품화 기능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판매 위주의 조합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토록 하였다. 조합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공동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조합의 유통손실 보전을 위해 조합 매출 총이익의 일부(예: 1% 이내)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함과 동시에 조합 적립금에 대한 정부와 중앙회의 지원을 강화하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토록 하였다.

그 밖에도 중앙회의 조합장 이사에 대한 과도한 수당 지급을 제한토록 하며, 조합비용을 이용한 조합장 개인명의로 애·경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현행 조합직원을 채용할 때 도 단위 공동모집은 허용되고 있으나 채용 후에는 조합 간 교류가 차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소한 도내 순환근무가 가능토록 하며, 중앙회에 대한 우선출자 대상에 회원조합과 조합원도 추가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1월 11일에 열린 제7차 회의부터 신·경 분리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최초의 의견충돌은 연합회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을 두고 시작되었다. 그동안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중앙회 산하에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를 두는 이른바 연합회 방식을 주장해 왔고 따라서 일부 위원들은 이 방식의 채택을 희망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경제지주회사와 신용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상당한 논란 끝에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보다 부합함은 물론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금 규모 면에서도 유리하며, 선진국 협동조합에서도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 분리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이 무렵 농협중앙회는 거금

을 들여 산하의 농협경제연구소와 외부의 맥킨지 컨설팅회사에 공동으로 신·경 분리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었다. 1월 중순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강이 끝에 2월 초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위원 대부분이 이안에 대해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은 물론 중앙회의 안이한 시각을 성토했는 등 위원회는 마치 별집을 쭉신 것과 흡사한 형상이었다. 이 안의 핵심내용은 중앙회 신용사업을 우선 금융지주로 분리하고, 중앙회 자본금 12.2조 원 중 8.6조 원을 금융지주에, 이후 분리되는 경제지주에 2.6조 원을 출자하며, 금융지주의 부족자본금 4.8조 원은 정부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상호금융부문은 현행과 같이 중앙회 내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위원들의 이안에 대한 증론은 50여 년 이상을 힘들여 키워 온 농협을 비농업부문에 내어준은 물론 형식적인 경제사업을 수행하면서 비대한 중앙회만 유지하겠다는 것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의 신·경 분리안 마련을 위한 기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신·경 분리의 목적인 조합원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제사업을 가장 잘 실천할 수 방안을 선택한다. 둘째, 경제사업 추진방식도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소매유통, 식품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 셋째,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외부자본 유입에 유리한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킨다. 넷째,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여 일선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1월 초 제6차 회의에서 확정하여 농협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한 내용을 유지하고, 사업추진 방식은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업적 방식을 보강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의 체제개편 방향, 자본금 배분 및 부족

자본금의 조달방안 등 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뜻하지 않았던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 확정하여 농협법 개정에 반영기로 한 내용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니 위원장이 야당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니 핵심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농협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 분리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내용만 개정할 수 없으니 신·경 분리를 마련한 후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민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의 범위를 도 단위까지 확대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야당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함과 동시에 절충점을 찾기 시작하였다. 도 단위까지의 조합선택권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원들의 지역구 범위와 유권자에 관련되어 있었다. 지역구의 범위는 시·군 단위가 일반적이며 유권자 중 일선조합 조합장들의 영향력이 크게 마련인데 조합장들이 조합선택권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조합선택권 확대의 불가피성과 반대하는 논리를 두고 몇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절충안으로 조합선택권을 시·군 단위까지만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경 분리안이 마련된 후에 일괄적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근거에는 한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 신·경 분리작업을 흐지부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농민단체가 주장해 왔던 연합회안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었다. 연합회안의 문제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신·경 분리는 교수의 명예를 걸고 3월 말 이전에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법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3당의 합의 아래 신·경 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개정 법률안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으나, 그런 행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더더욱 가장 중요한 신·경 분리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

태에서 너무 일찍 축배를 드는 것 같아 수업을 이유로 참석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신·경 분리안 마련작업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고 특히 자본금 배분과 상호금융부문의 상호금융연합회로의 독립에 대해 중앙회 측의 반발은 엄청난 수준이었다. 난산 끝에 3월 말 위원회의 신·경 분리 추진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의 체제개편 방향은 첫째, 지도사업 중심의 중앙회를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개편하고 둘째, 농협경제연합회가 출자하는 농협경제지주 및 금융지주회사를 동시에 신설하며 셋째,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상호금융중앙금고)로 독립법인화한다는 것이었다. 자본금 배분 및 부족자본금의 조달방안으로는 첫째, 현 중앙회 자본금 전액(당시 추정액은 12.2조 원)을 전국농협경제연합회로 이관하고 이 중 5.3조 원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0.8조 원은 상호금융중앙금고에, 나머지 6.1조 원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케 함으로써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게 한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한 BIS 비율(8% 기준) 충족을 위해 부족한 자본금은 6조 원 규모가 되는데, 이를 모두 정부출자에 의존하는 것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농협 내부에서 부족자본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분만 정부 또는 외부로부터 조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권고한 방안은 먼저 일선조합(원)이 우선주 또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토록 하며, 정부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에 직접 출자하기보다는 일선조합의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일선조합의 출자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는 신용지주회사를 상장하는 시점에서 신용사업의 내재가치를 먼저 조합(원)에게 환원시킨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논의과정에서 중앙회는 '중앙회 명칭 유지가 필요하고, 상호금융연합회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소수의견으로 포함하여 3월 31일 위원회의 신·경 분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위원회의 안을 공론에 올린 후 5월부터는 위원회·농민단체·농림수산물부가 공동으로 도 단위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복잡한 내용의 신·경 분리안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7월 말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순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은 첫째, 연합회라는 명칭 대신 중앙회의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며 둘째, 중앙회는 자본금을 갖지 않는 비출자법인으로 하고 교육 및 지도기능만을 담당케 하며 셋째, 축산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축산경제지주회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하는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중앙회를 없애려 한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신·경 분리다”, “신·경 분리는 농민조합원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혀 실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8월 27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농림수산물부 담당국장은 중앙회가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위원회안을 뼈대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위원회를 더는 소집하지 않았다. 10월 15일 농협중앙회의 임시 이사회를 통과하였다는 신·경 분리안(중앙회 자본금의 대부분을 신용사업에 투입하고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순간 중앙회의 무모하면서도 안하무인 같은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안은 중앙회가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 연구용역을 주어 2월 말에 발표한 것보다도 더욱 퇴보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0월 26일 당시 농림수산물부 민승규 차관이 담당국장과 함께 입법예고안을 설명하겠다고 하기에 위원회의 정재돈 위원과 함께 참석하였다. 안을 접하는 순간 우리 두 사람은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잇을 정도였다. 정부의 안은 중앙회가 배짱 좋게 내민 안과 거의 대동소이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앙회 조직의 비대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옥상옥 구조로 되어 있고,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분리 독립이 시급함에

도 단계적 분리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앙회 내에 존치시키고 있었다. 특히 정부안은 자본금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 그 이유를 문자 법안 내용에는 답을 수 없는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 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를 하겠으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날 입법예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므로 불가하다는 한 마디였고 바로 위원회가 토사구팽당하는 순간이었다. 10월 27일 정부와 농협대표는 불참한 채 위원회가 소집되어 정부안을 설명하니 위원들 모두 할 말을 잇고 명한 표정들이었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마주 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그동안 거의 1년에 걸쳐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 온 위원회가 정부와 중앙회의 암묵적인 담합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10월 28일 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였으나 기자실을 폐쇄하는 바람에 과천 정부청사 안내소의 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 위원회는 자진 해산하였다.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새롭게 구성된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와 농민단체 등이 전면에 나서 정부안과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의 요청으로 몇 차례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으나,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딱딱한 벽, 국회의 무능함, 농협중앙회의 놀라운 로비력 등을 체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캠퍼스 생활로 침잠하였다.

전체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배분하기로 한 신·경 분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에 다소 안도는 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깝다는 심정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조합원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농협개혁의 핵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신·경 분리에만 관심이 집중된 까닭에 나머지 개선방안들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아직껏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할 뿐이다.

아무튼 주사위는 던져졌고, 주어진 상황에서 진정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세부작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에 걸친 밀고 당김으로 인해 농협 내부는 물론 주변을 둘러싼 모든 주체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동시에 주체들 간의 감정적인 골과 앙금이 여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다독이며 용기를 내게 하고 다시금 지혜를 모으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특히 공을 넘겨받은 농협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지혜를 구하는 작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농협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농협의 모습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농촌을 되살리고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먼 훗날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억으로 남음은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나의 꿈을 공유하고 싶다.

## 4. 진정한 협동조합 정신을 살려야

### 박현출(농촌진흥청장)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보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과연 옳다는 생각이 든다. 1961년 (구)농협중앙회와 농업은행을 합병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통합체제를 만든 지 60년 만에 이를 다시 분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의 농협 신·경 분리방침 결정과정과 2008년 이후 이명박정부의 신·경 분리과정을 비교하면, 그 결과에서는 차이가 컸지만 비슷한 절차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방 이후 협동조합의 역사를 간단히 되돌아보면, 1949년 5월 농민, 상공업자, 광공업자 등의 협동조합 기능을 포함한 ‘일반협동조합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일이 있었다. 이 법은 60년을 넘게 기다리

다 2011년 말 18대 국회에서 시대의 부름을 받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부활하였다.

농협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1951년 이후 전국의 리·동 단위로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1953년에는 리·동 단위조합이 13,628개, 시·군 조합이 146개에 이르렀다. 이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즉 농협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최대 쟁점은 신·경 분리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합체제로 갈 것이냐의 문제였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신·경 분리를 주장하던 재무부의 안이 받아들여져 일단 농협과 농업은행은 분리된 채 각각 출발하였다.

먼저 1956년 5월 1일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해산한 후 일반은행법에 의해 농업은행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족되었다. 그 이후 1957년 2월 14일자로 농업은행법과 농협법이 각각 공포되었지만, 이 두 건의 법은 또 한 차례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실제로는 1958년 3월 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농업은행이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농협중앙회는 그 해 5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당시 시급했던 농어촌고리채 정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30일 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방침을 발표하였고, 이후 통합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동년 8월 15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통합된 새로운 종합농협체제가 출범하였다.

나는 농림수산물부에서 일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농협과의 인연을 유지하였다. 첫 인연은 농업금융과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던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방안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

1999년 4월부터는 협동조합과장을 맡아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당시 나는 축산정책과장의 업무를 맡은 지 3개월 밖에 안 된 시점이었지만, 전임 협동조합과장이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협동조합과장

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당시 김성훈 장관의 탁월한 지휘 아래 수많은 난관을 뚫고 통합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약 1년 반 동안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를 통합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농업인들이 바라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날이 오기 전에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완성하기 위한 농협개혁은 애초에 끝날 수 없는 일이었다.

1995년 농협이 신용·경제사업을 각각 독립사업 부제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경 분리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등의 통합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동법 부칙에 한국금융연구원으로 하여금 신·경 분리의 타당성을 연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신·경 분리 논의를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참여정부 역시 농협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농협개혁을 가급적 농협 자율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강했고, 그 결과 2004년 농협법 개정에서는 동법 부칙에 농협 스스로 신·경 분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방안을 확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06년 6월 30일 신·경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농협 신·경 분리가 한창 검토되고 있던 2006년 9월 5일 나는 축산국장에서 농업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농협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갔다. 당시 농민단체도 신·경 분리를 원했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역시 이를 원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온 신·경 분리가 이번에는 정말 실행될 것 같은 형국이었다.

그러나 신·경 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제를 풀어야만 했다. 우선 신·경 분리 형태에 대해 농민단체와 재경부 등의 입장이 서로 많이 달랐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했다. 또한 신·경 분리 이후 과연 농협의 경제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으며, 끝으로 신·경 분리를 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금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농민단체는 신·경 분리를 하더라도 농업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농협연합회 방식의 구조를 희망하고 있었고, 금융당국은 농업인에 의한 지배체제 확립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였고, 그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과연 정부가 자본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었다. 신·경분리위원회 위원 중에는 심지어 신·경 분리가 농업인에게 주는 실익이 뭐냐며 끝까지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2006년 10월 26일 농협중앙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농협 노조원들은 신·경 분리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어떤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했더니 문제가 많더라면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고, 농민단체 출신의 어떤 의원은 신·경 분리는 당연하고 이 기회에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신·경분리위원회는 2007년 1월까지 개최된 11차례의 회의와 금융연구원 및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건의안을 만들고 이를 2007년 1월 24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1월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자본금 확충방안, 신·경 분리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고, 어떤 석간신문은 2017년에 농협의 신·경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때는 신·경 분리에 따라 소요되는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리 여부나 그 시기가 모두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농업인, 지역농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까지 4차례의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남, 경북, 충북에 이어, 2007년 2월 1일에는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 강당에서 네 번째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및 사업분리에 관한 중앙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좌장은 김영철 교수가 맡았는데, 방청석에서 한 원로교수가 당장 신·경 분리를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2007년 2월 28일에는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당시 박홍수 장관이 신·경 분리를 농협 자율에 맡기겠다고 언급해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정부가 자본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소요 자본금은 농협 자력으로 축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정부 내 논의는 당연히 언제 신·경을 분리할 것이냐, 즉 분리 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신·경 분리위원회는 분리 시한을 12년 후로 건의하였지만, 재정경제부에서는 신·경 분리 준비기간을 가급적 최대한 앞당기기를 희망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 전에 이 문제를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2007년 3월 9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농림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먼저 활성화한 다음 2018년에 분리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너무 느슨한 안이라며 분리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다른 부처도 상당수 이에 동조하였다. 한동안 관계부처간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7년 3월 27일 국무회의장에서 권오규 부총리와 박홍수 장관이 신·경 분리 시한을 10년으로 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3월 29일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논의를 일단 마감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신·경 분리 문제가 완전히 매듭

지어지지 않았다. 2007년 말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명박정부 역시 농협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던 시기, 이명박 당선인은 “농협은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매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농사도 대신 해주어야 한다. 농협이 금융사업에만 신경 쓰고 이런 일은 잘 안하는데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농협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었다. 2008년 3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양재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와 자양동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대통령을 수행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농협이 지금까지 신용사업만 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사업 등 경제부문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괴담이 국민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5월 초에는 소위 ‘춧불사태’를 야기하였다. 결국 정운천 장관의 사임과 장태평 장관의 취임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과정에서 농협개혁은 한동안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8년 12월 4일 새벽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농협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농협개혁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농협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8년 12월 9일에 농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농산물유통에 관해 식견이 높은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나는 2007년 당시 ‘10년 후 분리 방침’을 정할 때에 농정국장으로서 박홍수 장관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기에,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농협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고, 그래서 농협개혁위원들은 연말의 바쁜 일정을 모두 접어둔 채 작업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합장의 권한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지만, 농협개혁에 대한 농업인의 열망이 무엇보다도 컸었고, 또 당시 농림수산물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의 탁월한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해 원만하게 국회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2009년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농림수산물부장관, 농협회장, 농민단체, 조합장 대표 등을 불러 서명식 행사를 가졌다. 농업인의 숙원사항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 그만큼 의미가 컸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신·경 분리작업도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편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 신·경 분리에 대한 정부안이 만들어졌고, 이후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와 5차례에 걸친 토론회가 열렸다. 그 결과 최종 확정된 정부안이 2009년 10월 28일자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를 1연합회, 그리고 농협 경제지주 및 농협금융지주의 2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16일 국회로 제출되었다.

2010년 2월에는 동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상임위 법률안심사 소위원회가 가동되었는데, 여기서 신·경 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 및 보험특례방안을 놓고 격렬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4차례 열렸으나 국회-정부 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심사는 한동안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2010년 8월 말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 유정복 장관이 부임하고, 나도 2010년 10월 8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년 8개월 만에 농협법 개정작업에 다시 매달리게 되었다. 이 때는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이 최인기 위원장으로 바뀐 상태였다. 우선 상황은 상반기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국회

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던 유정복 의원이 장관으로 부임해 왔고, 최인기 상임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이래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시던 '작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 분의 농업에 대한 열정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최인기 위원장이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하던 1994년도에 실무자로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만드는 일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분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최인기 위원장과 유정복 장관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다면 농협법 개정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일단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유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재임기간 중 농수산물 유통개선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해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을 선진화하려면 농협개혁이 필수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먼저 국회 상임위원들을 만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부터 확인해 보았다. 신·경 분리 후에 농협경제사업이 어떻게 활성화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위원들이 많았고, 또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과 세제상 특례조치 등을 충분히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야당의원 일각에서는 소위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왜 야당이 협조를 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확신이 없이는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국회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기획실장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곧바로 농협에 판매를 맡기고, 농협은 이를 선별, 가공, 포장해서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아 주면 되는데 이 쉬운 일을 우리는 50년 동안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농협과 농업인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

런데 농협법 개정 실무작업을 한창 추진하던 1월 23일 농림수산물부 제1차관이 정학수 차관에서 민승규 차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도 2009년 2월 13일자로 약 2년 반 동안 몸담았던 농정국장의 직무를 마감하고 기획조정관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농협개혁과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등의 업무는 후임인 김경규 농정국장에게 인계되었다. 농협개혁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는 쌀직불금 제도개선과제를 맡아 그 해결방안을 찾느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덕분에 결국은 중앙경제위원회에 회부되는 어려운 사정에 놓인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위원회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준 결과 나는 다시 식품산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동안 농협개혁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농협개혁위원회는 실무책임자의 교체에 관계없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 드디어 신·경 분리에 관한안을 만들고 2009년 3월 31일에는 정부에 공식으로 건의를 하였다.

2009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된 1단계 농협법 개정안을 정부는 2월 말까지 시급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국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협회장이나 조합장의 권한을 줄이는 개정안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당사자인 농협 회장은 물론이며 조합장들도 자신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조합장의 경영능력을 무시한다며 반발했고,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간선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는 농협개혁안의 핵심인 신·경 분리에 대해 정부의 실천 의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 농협법 개정안을 굳이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월 1일 국회 상임위에 농협개혁위원회가 건의했던 신·경 분리 추진방안을 정리해서 보고하였으며, 정부의 신·경 분리 의지를 확인한 국회는 곧 바로 1단계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를 시작하여 4월 29일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 및

나는 이 때도 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논의에 참여하였는데, 위원회의 논의는 매우 진지하면서도 살얼음판을 지나듯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때론 위원들 간에 고성어 오고 가는 격렬한 토의가 벌어졌다. 다행스럽게도 그때마다 위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막장으로 치닫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위원으로 농민단체에서 나온 기원주 씨가 있었다. 그는 성질이 급했던 나머지 과격한 발언으로 토론 분위기를 자주 어렵게 하기도 했지만, 농협의 운영태와 문제점에 대해 매우 소상하게 알고 있어 농협개혁의 골격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의 열정적인 노력에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2009년 2월 11일까지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고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안,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조합의 유통손실보전자금 확보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했다. 그런 다음 농협개혁안 중에서 난제 중의 난제인 신·경 분리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농협개혁안을 농협법에 담는 방법과 관련해 당시 위원들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농협개혁에 관한 논의는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비상임화 등 거버넌스에 관한 것, 그리고 신·경 분리에 관한 것으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을 먼저 농협법에 반영한 다음에 신·경 분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한 다음 2단계로 농협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거버넌스와 신·경 분리를 한꺼번에 농협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많은 논의 끝에 입법조치는 2단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하고, 2009년 1월 16일에 그동안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1단계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에 고하게 되었다.

당시 정학수 농림수산물부 제1차관과 나는 농·축협중앙회 통합작업 때부터 호흡을 맞춰 왔기 때문에 서로 농협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협동조합 본연의 판매방식인 '수탁판매'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농협 임직원들의 인식의 변화, 중앙회 농산물 판매조직의 확충, 농산물의 선별·가공·포장 등에 필요한 물적시설 확충, 그리고 충분한 운영자본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들고 국회로 뛰어다녔다.

이와 함께 사업분리의 방식과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 및 보험특례 등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업분리를 연합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농업인단체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자본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농업인단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협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반감이 컸다. 농업인의 이익보다는 회사 자체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는 불신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점은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부터 제기된 문제였지만, 협동조합연합회가 사업체로서 갖는 비효율성 때문에 끝내 채택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연합회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농협연합회가 출자해서 만든 경제지주나 금융지주가 농업인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결국은 정부안대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하게 협의를 했던 것은 역시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와 그 지원방식에 관한 문제였다. 농협중앙회는 6조 원의 자본금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요청 근거가 되는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꽤 자세히 검토하였다. 농협의 투자계획 중에는 정부의 지원 방향과 다른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소매점포의 확장이나 사료회사 및 골판지공장의 인수자금, 기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 정부의 자본지원 소요는 4.6조 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6조 원이 아니면 조합원을 설득할 수 없다고 버티는 농협중앙회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나 예산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수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았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당시 왜 그렇게 비현실적

인 수치를 고집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이다.

국회에서는 농협이 경제사업을 잘 하겠다는데 왜 6조를 다 주지 않느냐고 성화였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자본금 지원의지를 몇 차례 따졌으나 정부의 입장은 자본실사를 해보고 부족한 자본만큼 지원하겠다는 약간은 애매한 답만 되풀이 되었다. 한동안 국회와 정부 간에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절충안을 만들게 되었다. 즉, 농협법 부칙에 정부는 농협자본금 지원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따른 세제 및 보험업법상의 특례조치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세제 및 보험상의 특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농업계로서는 그 혜택에 대해 참으로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12월 8일에는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 농협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함께 의결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는 국회 측에 농협법을 예산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에서는 농협법의 강행처리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농협법은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법률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는 그날 국회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농협법을 직권상정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외치던 최인기 위원장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2010년 11월 말 안동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신고가 들어온 후 12월에는 경기도까지 퍼져 나갔다. 12월 29일에는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천안과 익산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여 그 해 연말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했다. 구제역의 악몽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1월부터 농협법 쟁점사항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특히 농협법에 경제사업 관련 근거규

정을 대폭 보강하도록 최인기 위원장이 강력히 요구해 이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농민단체의 이해 폭도 점점 커져갔다. 2월 중순경 양당 대표에 의해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었다. 상임위를 3월 3일에서 3월 9일까지 열기로 한 것이다. 2월 하순에는 당정간담회를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야당의원들에게도 경제사업 비전, 1중앙회 및 2지주체제의 불가피성, 자본 및 조세, 보험 등에 관한 정부 입장 등을 본격적으로 설명하였다.

우리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날의 하나로 기억을 해야 할 날짜가 2011년 3월 3일이다. 이날 드디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정해결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김학용 의원, 황영철 의원, 조진래 의원, 윤영 의원, 김우남 의원, 김효석 의원, 김영록 의원, 류근찬 의원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정부의 자본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2차관과 세제실장을 출석시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확인하였고, 몇 차례의 정회를 거듭한 가운데 이날 저녁 7시를 넘겨 일단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은 뜻밖의 수확물이 하나 더 있었다. 류근찬 의원이 조합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전국 동시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이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조합장의 임기가 같아지게 되는데 향후 조합의 합병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3월 4일 오전에는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어제 합의한 내용을 의결하였는데, 회의장 밖에서는 전농 및 농협 노조원들이 농협의 지주회사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거칠게 항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곧바로 상임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거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3월 1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는 동 법률안을 3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 정부의 자본금 지원은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친 가운데 2011년 정기국회에서 2012년 예산안에 포함하여 처리되었다. 정부가 총 5조 원

을 지원하되, 이차보전 방식으로 4조 원, 현물출자 1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나는 농협자본금을 포함한 2012년도 정부예산의 국회의결을 앞두고 연말까지 국회에 매달려 정신없이 지냈는데, 2011년 12월 31일자로 뜻밖에도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농촌진흥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결국 농협과 나의 끈질긴 인연은 나로 하여금 농협법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와 농협자본금 확보까지 소정의 임무를 마치도록 하면서 마무리된 셈이다. 그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종합농협체제로 출범한 지 거의 61년 만인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의 3개 법인으로 분리되어 역사적인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한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는 실로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고 준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처리과정 중에 부딪힌 난관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농협개혁의 마지막 수순인 신·경 분리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농업인의 강력한 농협개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통한 계통출자가 정착되어야 한다. 수많은 농업인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신·경 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바라는 것은 다르지 않았다. 농협경제지주가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깊은 바람이 이번 법안 개정을 가능하게 한 핵심동력이었다고 본다. 둘째로, 국회가 농협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수 많은 해법을 제시하였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큰 명분 아래 절묘하게 정리하였다. 여야 간의 완벽한 합의로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최인기 위원장과 정해결 법안소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김우남 의원, 또 경제전문가 김효석 의원 등의 탁월한 중



재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정부의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개혁의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관련부처 간 의견 차이를 대통령실에서 적절히 잘 조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경 분리에 필요한 자본금 및 조세, 보험상의 특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 결정적 동력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10년 후 신·경 분리' 결정을 할 때만 해도 예산당국에서 부족자본금을 지원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이 법안을 힘으로 밀기 보다는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본다.

어쨌든 50년 만에 농협중앙회는 각각 교육 및 회원 지원, 상호금융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의 3개 법인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협의 발전은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신·경 분리가 협동조합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 분리를 통해 기필코 성공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들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즉 '착한 자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자본의 독점과 그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강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신·경 분리 이후 새로운 농협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프트웨어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진정한 협동조합 정신을 살려내야 한다. 협동조합은 농업인 개개인이 시장을 직접 상대할 수 없어 다수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상품을 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협동조합에 판매를 위탁한다. 협동조합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선별, 가공, 포장해서 이를 시장에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협은 대부분이

이러한 기본적 협동조합 판매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은 조합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확정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요구한다. 설사 가격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중간상인이 조금 더 비싼 값을 제시하면 그 상인에게 농산물을 내주고 만다. 이렇게 해서는 협동조합이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 가면서 농산물을 제값에 받고 팔아 줄 방법이 없다. 이번 농협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농협, 농업인단체 모두가 나서서 진정한 협동조합적 판매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협동조합 판매방식을 실천하는 조합들이 적지 않으며, 그런 성공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전파해야 한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그렇게 되기까지 5년, 10년이 걸리지 모르지만, 지금이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둘째, 협동조합에서도 기업적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평등을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하기에는 경직적 의사결정 구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기업을 소유하되, 그 경영은 전문가에 맡기는 '기업적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농협 개혁에서도 농협경제지주를 협동조합연합회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따라서 이제 농협경제지주회사나 그 자회사들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독자적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그 회사를 소유한 주인으로서 오로지 실적에 의해서만 전문경영인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면 그만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협동조합 임원들이 '자리에' 탐을 낸 나머지 전문경영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셋째, 경제지주회사는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소매 행위보다는 도매행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매판매점도 일정 수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매판매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농협경제지주는 대형유통업체를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과 직접 경쟁해서

대량의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할 수 없다. 소매판매점이 상대적으로 후자를 내기가 쉽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으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기 위해서는 도매판매가 더욱 중요하다.

넷째, 회원조합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합병하고 광역화해야 한다. 이제 중앙단위에는 새로운 협동조합 지배구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조합을 품목 중심의 전문적 경제사업체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조합장의 선출 시기를 전국적으로 같은 날로 맞췄다. 지금까지 조합 간 합병을 어렵게 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조합장마다 임기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일본처럼 보수적인 나라에서도 1990년도에 3,561개에 달하던 지역조합을 2010년까지 716개 수준으로 과감하게 합병하였다. 이제 내 지역의 조합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하여 농산물을 얼마나 잘 팔아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의 신·경 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함께 조합의 과감한 광역단위 합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 5. 끝까지 인내한 합의개혁

권오복(전 김효석 의원 보좌관)

### 5.1. 17년을 기다린 농협 신·경 분리 작업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해서 비판을 받아온 농협의 신·경 분리 논의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정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농협 신·경 분리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17년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협개혁을 위한 4대 과제로서 협동조합의 ㄱ) 민주화와 경영의 효율화, ㄴ)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의 육성, ㄷ)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ㄹ)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협개혁의 시발은 2008년 12월 4일 가락동 농수

산물 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시장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농협은 돈 장사로 번 돈으로 정치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농민조합원들에게 진정 봉사하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협개혁을 촉구하였다.

농협개혁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개혁의 1단계가 2009년 4월 농협중앙회장의 간선·단임제 도입 등 농협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과정이었다면, 개혁의 2단계는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 논의 과정이었다. 정부는 2009년 12월 16일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조진래 의원안(2010.1.12), 강기갑 의원안(2010.2.11), 김춘진 의원안(2010.2.18), 김영록 의원안(2010.4.15), 류근찬 의원안(2010.7.29), 문학진 의원안(2010.10.29) 등 총 6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농협법 개정안은 2010년 2월부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라 칭함)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적잖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

국회에서의 농협법 개정안 논의과정을 ㄱ) 농협개혁안 마련, ㄴ) 2010년 2월 임시국회 및 3월, ㄷ) 2010년 4월 임시국회, ㄹ) 2010년 정기국회, ㅁ) 2011년 2월 임시국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5.2. 농협개혁안 마련

농협의 신·경 분리안에 대해서는 농협개혁위원회 안, 농협안, 정부안이 제각기 마련되어 논의되었다. 농민단체, 농협, 학계, 정부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농업개혁위원회가 2008년 12월 9일 발족되어 개혁안 마련작업을 거쳐 2009년 3월 31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에 대한 농협개혁위원회안을 발표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안에는 농협중앙회를 전국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중앙회 신용사업을 분리시키되 향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와 지분 매각분은 경제사업 쪽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내

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중앙회 신용사업을 분리 독립 시킬 경우 개별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사업의 부실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별 상호금융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체화시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토록 하였다. 자본금 배분은 우선 경제사업에 5.3조 원, 신용사업에 5.8조 원, 상호금융사업에 0.8조 원을 배정하고, 신용사업 BIS 비율 유지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은 가급적 농협 내부에서(일선조합의 우선출자 등) 조달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일선조합에 지원해서 일선조합이 추가 출자토록 하는 방식이었다.

농협중앙회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농협은행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신·경 분리안을 공론화하여 2009년 10월 17일 대의원회를 거쳐 농협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하였다. 농협안은 중앙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분리 시기를 당초 2007년 사업분리 방안에서 명시한 2017년보다 대폭 단축하여 2012년에 금융지주를 분리하되 경제사업부문은 조합자립기반 구축, 비수익사업의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산지유통 활성화 등이 완료되는 2015년에 경제지주로 전환하되 충분한 자금지원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조기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부족자본금은 전제조건 없는 출연방식으로 하고, 조세 및 농업보험특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칭함)는 2009년 10월 28일,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2월 16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에는 농협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변경하고, 2011년 동시에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설립(1연합회-2지주회사 방식), 농협은행 설립, 출자에 의한 부족자본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농협개혁위원회는 정부안이 위원회의 건의안을 무시하고 농협 신·경 사업분리를 대형 은행 설립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도로 보고 10월 28일 자진 해체하였다.

조진래 의원은 2010년 1월 12일 선거운동 시 명함 배부, 문자 및 전자우편 이용, 사전 선거운동 방지 등 조합장 선거 방식의 일부를 개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강기갑 의원은 2010년 2월 11일 농협중앙회를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전환하고, 회원 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 설립,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을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 배분, 농협중앙회 시·군부의 회원조합으로 이관·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2010년 2월 28일 농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농협은행 설립,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2/100에 해당하는 명칭 사용료 부과, 중앙회는 교육, 연구조사, 홍보, 지도 및 감사 등을 담당한다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0년 4월 15일 발의된 김영록 의원의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연합회로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 상호금융대표이사체제 전환,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 설립,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3/100에 해당하는 명칭 사용료 부과, 경제사업연합회에 자금출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근찬 의원은 2010년 7월 29일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 29일에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명함 배포 및 문자 이용 등 선거운동 방식과 기부행위 위반 규정 등 조합장 선거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조진래 의원안, 류근찬 의원안, 문학진 의원안은 조합장 선거방식에 관한 개정안이고, 나머지 안들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개정안으로서 중앙회 명칭, 지주회사 설립 시기, 부족자본금 지원 방식, 보험 및 조세의 특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는 농협법 개혁에 대한 논의에 앞서 2010년 2

월 1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식품위라 칭함)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민승규 당시 농림수산부 제1차관 등 11인의 진술인의 진술이 있었다.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진술인 대부분이 공감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청회에서 민승규 차관은 부족자본금을 농협 자체 조달 후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이재관 당시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규모와 조달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를 적용을 최소 10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양부 올바른농협개혁법국민연대공동대표는 농협중앙회의 올바른 신·경분리는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동시 분리하고, 농협경제·농협축산·농협금융지주회사를 동시에 독립법인화해 농협경제연합회 산하에 두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사·농정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가 되는 농협중앙회는 비사업·비출자 특수법인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농협동인회 감사는 정부가 낸 농협법 개정안대로 실행된다면 농협은 협동조합의 이념은 사라지고 금융·유통주식회사로 변질될 것이라며 농촌사회는 오로지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시장논리만 무성해 공동체 상생의 기운과 농심의 미풍양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편의 기본방향은 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지주회사체제로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을 전문화·효율화하고 시장지향적인 사업능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가 경

제·축산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중앙회 명칭에 대해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중앙회' 유지 쪽에 힘을 실어 주었다. 조배숙 의원, 김영록 의원, 유성엽 의원, 류근찬 의원 등은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계획의 구체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 특례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농협보험의 경우 충분한 기반을 마련한 다음 일반 금융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 만큼 보험업계 기득권의 양보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사업구조 개편 체계, 지주회사 설립 시기, 보험 및 조세 특례 등 정부안이 담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 가시적인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공청회에 앞서 2010년 2월 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주최토론회가 '올바른 농협중앙회사업 분리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김경규 당시 농식품부 농정국장이 지주회사 방식의 정부 입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고,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연합회 방식의 신·경 분리 입법안 주요 내용을, 최양부 올바른농협개혁법국민연대 공동대표가 농협개혁연대 신·경 분리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의 제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토론회에서는 정부안과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연합회 방식, 그리고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2연합회-3지주 방식에 대해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5.3. 2010년 2월·3월 임시국회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2월 임시국회부터이다. 국회 농식품위는 2010년 2월 22일 지주회사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 연합회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안, 연합회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을 병행하는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안, 조진래 의원의 조합장 선거방식



개선 등 4개의 농협법 개정안 등 72개 법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벌였다.

농식품위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칭함) 대체 토론에서 의원들은 정부 측에 대해서 사업구조 개편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밝히라고 추궁하였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농협법 개정에 앞서 사업구조 개편 이후의 청사진부터 밝히는 게 순서라며 금융·경제지주에 대해 재정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투자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계획이나 비전이 개정안보다 뒤에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냐며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구조를 개편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정부의 확실한 부족자본금 지원도 주문하였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사업구조 개편 이전에 자본금 규모가 나와야 하고, 사람 구성 변화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본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자본금이나 세제와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불신감이 있다고 하였다. 류근찬 의원은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본금 지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의 중이라면 법 개정 이후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국회가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도 사업구조 개편 방식에 따라 소요자본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얼마까지 자본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의 출자에 의한 부족자본금 지원방식에도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출자는 출자한 만큼의 지배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느냐고 캐물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도 출연이 아닌 출자로 하면 농협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출자는 하되, 농협 경영이나 의결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 우려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석호 의원과 정범구 의원은 조세특례·보험 등에 있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토론에 대해 장태평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출자방식으로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실사후) 부족자본금이 6조 원이든 8조 원이든 얼마든지 지원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각서를 쓰겠다), 세금 문제는 현행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협중앙회 명칭은 국회 심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해서 중앙회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농식품위는 이날 대체 토론을 마친 후 농협법 개정안 4개를 상임위 법안소위에 넘겼다. 법안소위에서는 4개 개정안을 병합 심리하여 하나로 된 상임위 차원의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상임위 전체회의에 다시 넘기도록 되어 있다.

2010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법안소위가 열렸다. 2010년 2월 23일에 열린 제287회 농식품위 법안소위에는 4개의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모두 61개의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에 개의되어 오후 6시 1분까지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는 6건의 수협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서 농협법 개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날인 2월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수협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보내고 농협법 개정안 심의는 막판에 20여 분간만 진행되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여 분간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토의도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집중되어 농협법 개혁의 핵심쟁점인 중앙회 명칭이나 부족자본금 지원방식 등에 관해서는 전혀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 이용 방법 구체화 등에 대한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이 동의함으로써 법률

소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2010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을 뿐, 깊이 있는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법안소위를 기약하게 되었다.

임시국회 기간은 아니지만 2010년 3월 15일 제288회 농식품위 법률소위가 열렸다. 법률소위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강기갑 의원, 여상규 의원, 이계진 의원(소위원장), 정해걸 의원 등 4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개의한 지 32분 만에 폐회하였다. 심사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위원회회를 개최하여 야당 위원 대부분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4월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우남 의원은 3월 11일 농식품부장관과의 만찬에서 정부측 요청에 의해 3월 15일 소위가 열린 것으로 언급했다.

#### 5.4. 2010년 4월 임시국회

이만섭 국회의장은 2010년 3월 30일 제220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30일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13일 오전 11시 1분에 제289회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개의 후 곧 바로 산회하였다. 이날 소위에는 강기갑 의원, 김우남 의원, 류근찬 의원, 이계진 의원, 정해걸 의원, 조배숙 의원, 조진래 의원 등 7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법안소위 무산은 야4당이 주최한 정부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과 여당의 대응 기자회견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가 열리던 2010년 4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농협법 개정안 반대 야4당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야당 농식품위 의원들은 이계진 법안소위 위원장이 3월 15일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해 놓고 야당 의원들에게 소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것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했고 정부와 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 4당은 △정부와 농협 간 협상내용 공개

△경제사업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 제시 △자본금 배분 및 자산실사를 농식품위가 담당 △기존 농어업예산 축소 불가 △법안심사 시 농민단체,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상임위 내 ‘협동조합개혁 특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법안심사에 반영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간사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해진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계획은 4월 14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마치고 4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4월 13일 법안소위가 무산됨에 따라 4월 내 농협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농협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보험 관련 규정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도 김영선 위원장 명의로 정무위가 곧 보험업계의 입장을 들을 공청회를 열테니 농협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4월 말까지 미뤄달라는 공문을 농식품위에 보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0년 4월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시작되었다. 법안소위는 오전 10시 26분에 개의되었는데 김우남 의원이 전달 있었던 여야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야당이 제시한 여섯 가지 전제에 대해 먼저 토론할 것을 제안하자 이계진 위원장이 정회 후 그 얘기를 논의하자고 하여 10시 36분에 회의가 중지되고 정회 속에서 30여 분간 비공식적으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시간을 갖고 11시 5분에 법안소위가 속개되었다. 12시 법안소위가 중지될 때까지 주로 사업분리 방식과 시기에 대해 의원 간에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합의 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에 수익을 내는 경제사업을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을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가능성을 높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법안소위는 오후 2시 44분에 속개되었다. 오후 회

의에서는 먼저 지난 번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냈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에는 명칭사용료 사용 범위 및 상한선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1% 상한선을 제안한 강기갑 의원 등이 오전에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워 다른 위원들이 1%에서 3%까지 다양한 의견만을 개진하고, 4월 19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다음에 논의된 사항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연합회 의제에 관한 것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이전에 중앙회가 수행했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연합회로 의제하는 안이었다. 정부의 연합회안은 논의의 자리에 없었던 강기갑 의원이 제안한 경제사업연합회와 일맥상통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정부의 대안이 채택되었다. 다만 의제 범위를 확대해서 정부대행사업으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되는 연합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 의제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였다.

다음의 논의 대상은 부과금 면제 대상이었다. 당초 정부안에는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기존 자회사는 배제하되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조합 등과 연합회,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는데 농협 측에서 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농협보험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여 정부안에다가 농협 측의 건의를 수용하여 200억 원의 추가 부담금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금 면제 대상에 연합회 이외에 경제·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부과금 면제 대상에 이어서 사업분리로 인한 기존 혜택 유지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정부안은 농협은행의 신용 공여한도 적용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고, 연합회에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허용하지는 안이었던 것에 비해 농협 측은 유예기간을 항구적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까지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의 결과 당초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그 밖에 농협은행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 종전 행정·사법상 제재 효과 적용 배제, IT 업무 중앙회 통합 운영, 조합의 신용사업 범위

확대,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검토 등 추가 지원사항이 논의되었는데 대체로 큰 이견 없이 정부안이 수용되었다. 이중 IT 업무 중앙회 통합 운영 시한을 3년 유예 후 분리하는 것에서 필요한 경우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조합에도 신용사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주로 비쟁점사항을 논의한 4월 14일 법안소위의 큰 성과는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연합회로 의제하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부족자본금 지원규모 및 방식 등과 같은 첨예한 쟁점사항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2010년 4월 19일 법안소위가 또 다시 열렸다.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의사항 도출 없이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만 이루어졌다. 이 날 논의된 주요의제는 정부안의 연합회체제 속에서 축산경제 대표의 독립성 보장, 이윤추구 목적의 지주회사에 대한 우려, 자회사 이관 시기 등이었다. 위원들은 남성욱 당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이사를 별도로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펼쳤다. 축산경제대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지주회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익을 많이 내서 경제사업부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환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일부 위원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농협 측에서는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지주회사에 이관한다는 복안을 밝힌 반면 많은 위원들은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0년 4월 22일 법안소위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실질적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소위였다. 6월부터는 18대 국회 후반기 원을 재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오전 회의 중반까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사가 있었고 이어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식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되었다. 토의 내내 3개 연합회 방식을 제안한 강기갑 의원안과 1연합-2지주 방식의 정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을 제외한 많은

의원들은 강기갑 의원안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회원조합을 상대로 한 자본의 물적 분할과 함께 재가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안에는 경제지주회사 아래에 축산경제부회장을 두도록 돼 있는 것을 독립성 침해라는 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축산지주회사로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지만 연합회 내의 축산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승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에서도 사업분리 방식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오후 3시 31분 정회를 하고 약 두 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의견 절충을 시도, 강기갑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해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속개하여 표결한 결과 1연합-2지주의 정부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8명 중 5명 찬성). 이로써 핵심쟁점 중의 하나였던 사업분리 방식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다.

2010년 4월 22일 법안소위까지 농협법 개정안 28개 사항 중 13건[사업분리 방식(1중앙회 + 2지주회사 형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중앙회 의제(자회사 사업 중 중앙회 의제 대상 사업을 시행령으로 규정, 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 등)는 심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15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심사되지 않은 대표적인 안건은 중앙회의 대체 기관 명칭(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중앙회 대체 기관의 사업 범위(교육지원, 농·축경, 상호금융), 중앙회 자본 배분(경제사업 우선 배분 여부), 상호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별도법인화 설립 여부),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 개편 시기, 명칭사용료 부과 범위, 조세 및 보험특례 등이다.

농협법 개정을 서둘렀던 정부는 국회 일정에 없던 2010년 4월 26일이나 27일 하루를 정해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18대 후반기 국회로 미루게 되었다.

### 5.5. 2010년 정기국회(2010.9.1~2010.12.9)

18대 하반기 원 재구성에 따라 2010년 6월 18일 농식품위 위원장이 이낙연 위원장에서 최인기 위원장의

로 바뀌고, 운영 의원, 성운환 의원, 진수희 의원, 최인기 의원, 강봉균 의원, 김효석 의원, 송훈석 의원이 신임 위원으로 새롭게 위원회에 합류하였다. 또한 8월 8일 농식품부장관이 장태평 장관에서 유정복 장관으로, 8월 18일 민승규 차관에서 김재수 차관으로 교체되었다.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농식품위 위원의 절반가량과 농식품부 장관이 바뀌어 새로운 분위기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0년 9월 1일 한나라당 이근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010년 정기국회를 2010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294회 국회(정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농협법 개정안 논의는 2010년 9월 10일 제2차 농식품위 상임위와 2010년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진행되었다.

2010년 9월 10일에 열린 제2차 농식품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계속),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국정감사 관련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 이외에 농식품부를 상대로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농협법 개정 추진방안,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대응에 대한 현안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협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에서 핵심쟁점으로 남은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와 조세 특례 및 보험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되어 향후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좀 더 구체성을 띠 것을 예고하였다.

2010년 12월 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림조합법 개정안과 농협법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소위가 개의되자 김우남 의원이 쟁점이 많은 농협법 개정안 논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같이 시급한 다른 법률안을 먼저 심의하고 농협법 개정안은 나중에 몰아서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동의해서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첫 항부터 농협법을 다루기



로 의견 일치를 보아서 이 날은 더 이상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12월 6일 오전 10시 31분에 개의해서 오후 10시 13분에 산회한 법안소위에서는 다른 법률안은 일체 다루지 않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경제지주회사 외에 농경대표와 축경대표를 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농식품위에 들어온 김효석 의원은 자회사 관리만을 담당하는 옥상옥 구조의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제지주회사를 만들려면 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라고 주문하였다. 김우남 의원도 경제지주회사 위의 농경대표와 축경대표의 옥상옥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영록 의원은 중앙회가 산지유통과 같은 비수익 사업을 맡는 그림은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0년 4월 22일 법안소위 결정을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오후 2시 33분에 속개된 소위에서는 중앙회 대체기관의 명칭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측이 농협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농협중앙회로 바꾼다는 설명을 하자 대부분의 의원들이 농협중앙회 이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로고와 간판 교체에 따른 비용 추가(농협 측은 약 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 등의 이유 때문에 농협중앙회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지만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확정 짓지는 않았다.

다음에는 중앙회 대체 기관의 사업범위와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기갑 의원은 사업 범위를 교육·지원사업으로 하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김춘진 의원은 교육·지원사업에 한정하였으며, 김영록 의원은 교육·지원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 정부안은 교육·지원사업, 농경·축경사업과 함께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것이었는

데 정부안이 채택되었다.

중앙회 대체 기관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비출자 특수법인, 회원의 회비, 경비, 명칭사용료(강기갑 의원안), 무자본 특수법인, 회비, 경비, 과태금 수입(김춘진의원안), 특수법인, 회원의 회비, 경비, 명칭사용료 등의 수입(김영록 의원 및 정부안)이 제안되었다. 소위에서는 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및 구조개선사업 등 비수익 사업과 정부대행사업도 수행하므로 자본을 보유한 특수법인으로서 회원의 회비, 경비, 명칭사용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정부안이 수용되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 자본 배분과 관련하여 농협자본금의 과반수를 경제연합회에 우선 배분하는 안(강기갑 의원안), 중앙회 자본금을 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에 승계하되, 경제연합회 내에서는 경제지주회사, 축산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순서로 배분하는 안(김춘진 의원안),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적정자본금을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 배분하는 안(김영록 의원안)이 제안되었다. 정부안은 이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가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경제사업부문에 적정 수준의 자본을 배분해야 된다는 조항을 추가한 법안을 소위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농협의 부족자본금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지원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에는 당초 '경제사업부문에 적정수준의 자본을 배분하여야 한다'를 '경제사업부문에 적정 수준의 자본을 우선배분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원방식은 중앙회와 경제지주 모두에게 배분하되, 중앙회는 농경 및 축산 대표 회계를 분리하여 자본금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야당 의원들이 자본금 충당을 위한 재정부의 자금 지원계획서도 국회의 심의나 동의절차 없이 진행키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의원들은 재정부가 임의로 지원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금 규모와 시기·방식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당초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의원들은 정부의 자본금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예산은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라 국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 요구 수용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했다.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을 듣자는 김효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해길 소위원장은 농식품부 차관에게 기획재정부 차관을 법안소위 출석해 달라고 지시하고 상호금융 담당조직에 대해 심의를 이어갔다.

상호금융 담당 조직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신용사업연합회에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무이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춘진 의원은 상호금융연합회의 전무이사가 상호금융사업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김영록 의원은 중앙회 내에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고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연합회 내에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고 독립회계를 설치하는 등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것을 규정했다. 논의 결과 정부안이 채택되었다.

사업부문별 손익구분 관리에 대해서는 김춘진 의원은 상호금융연합회는 상호금융사업에 별도의 자본계정으로 상호금융중앙금고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안은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회계에는 별도의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정부안이 채택되었다.

축산 담당조직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기갑 의원은 경제사업연합회에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춘진 의원은 경제연합회에 축산경제 상임이사를 두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으로, 김영록 의원은 경제사업연합회에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두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부안은 연합회에 축산경제상임이사를 두고 농업경제지주회사에 축산경제부회장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축산부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김영록 의원이 채택되었다.

사업구조 개편 시기는 강기갑·김춘진 의원안과 정부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영록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사업구조 개편 시기는 농협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보험업무는 1년 6개월 후 실시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저녁식사 후 속개된 소위에서 농협 측의 건의로 2012년 3월 1일 동시 발효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조합과 농협은행의 보험대리점 법적 성격에 대해서 김춘진 의원은 조합은 보험대리점으로, 농협은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각각 의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협보험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인수심사·결정, 보험계약 유지·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 정부안은 조합, 농협은행을 모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고 있었다. 논의 결과 조합과 농협은행의 보험대리점 법적 성격은 정부안대로 조합 및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방카슈랑스 규정의 적용 유예 및 기간에 대해서는 김춘진 의원은 적용대상을 농협은행으로 해서 유예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신규 농협보험상품의 단계적인 축소를 규정하고, 연차별로 축소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김영록 의원안도 적용대상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은 10년으로 하였으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안은 적용대상을 조합과 농협은행을 같이 하며 5년 유예기간 및 단계적 축소를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세 당시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논의 결과 조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유예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기존 공제계약의 보험계약 간주는 「보험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공제상 담자격자의 보험모집자격 인정은 2년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간의 정치적 대립은 2011년 2월 임시국회 개원도 제 때 열리지 못하게 하였다. 원래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집하는 국회로서 16대 국회부터는 상시개원체제를 도입해서 2월, 4월, 6월의 1일에 자동 개회돼 왔었다.

## 5.6. 2011년 2월 임시국회 기간 (2011.2.18~2011.3.12)

해가 바뀔에 따라 검색되었던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민주당이 2011년 2월 13일 국회 등원 결정을 내려 2월 15일 여야 원내대표가 2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3월 3일에, 농식품위 상임위는 3월 3일부터 9일 기간에 열기로 일정이 잡혔다.

2011년 3월 3일에 열린 법률안 소위원회에서는 조진래 의원, 김영록 의원, 류근찬 의원, 강기갑 의원, 김춘진 의원, 문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에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안에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내용 이외에 최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농협의 계약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중앙회가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안소위는 2011년 3월 3일 11시 50분에 개회되었다. 이처럼 개회시간이 지체된 것은 법안소위를 정식으로 열기 전에 여야 위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회합을 갖고 부족자본금 지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위원회가 개회되자마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특례 문제에 대해 정부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오후에 열린 소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과 세제실장이 참석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후 소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하고 12시에 오전 회의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 31분에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50년 농협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게 된다. 오후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심의하기로 한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특례 문제 이외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논의된 것은 경제사업 수행주체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일괄적으로 이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위원들이 개정안에 이관시기를 명시적으로 담자고 요구해서 정부와 농협측이 협의를 하였다.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시기를 농협은 2020년, 정부는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하자 위원들은 이관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분사형태로 되어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농협유통, 농산물공판장 등 유통판매사업에 관련된 회사들은 농협법 개정안 시행 3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2년 후에 완전 이관하는 중재안을 내서 위원들과 정부측이 동의해 경제사업주체에 관한 내용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은 부족자본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에 따른 농협의 자율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은 출자 형식으로 하되, 의결권 없는 출자로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다음에는 경제사업에 자본금의 배분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제사업에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정부안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측에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그것은 자산 실사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법안에 담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법안소위는 오후 3시 52분에 정회를 하고, 오후 5시 33분에 회의를 속개하였다.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비공식 모임을 갖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을 시도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먼저 류성걸 당시 기

선거로 인해 임기가 단축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최소 2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문학진 의원안을 반영하여 선거운동 방법 규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공직선거법과 유사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10시 13분에 끝났다. 이날 법안소위까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5차례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된 3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했다. 합의된 사항은 3대 쟁점에 속했던 보험특례, 조세감면 외 개편 시기(12.3), 조합장 동시 선거 실시(15.3) 등이다. 미합의된 사항은 사업분리 방식, 중앙회 대체 기관의 명칭, 중앙회 대체 기관의 사업범위, 중앙회 대체 기관의 법적 성격, 사업부문별 손익구분 관리, 부족자본 지원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오전 농식품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최인기 위원장은 늦어도 12월 8일 법안소위가 열리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여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에 대비해서 12월 7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돌입했다.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대치한 상황에서 해당 위원들 참석이 곤란하여 법안소위가 자동적으로 무산되었다. 정해결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회의장이 여야가 대치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당일 10시경 상임위가 수석전문위원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 법안소위가 열리기로 한 12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12.9)을 하루 앞두고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국회 개의와 상관없이 열릴 수 있지만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법안소위가 곧바로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이로써 농협법 개정안 논의는 다음 해인 2011년 2월 쯤의 임시국회나 가서야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0년 말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빚어진 여야

오후 회의 도중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성걸 차관이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상임위의 승인을 얻든지, 또는 심의토록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유 차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결론이 나지 않자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추후 협의 후 서면으로 답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저녁 식사 후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8시 28분에 재개된 회의에서는 명칭사용료의 사용 범위와 상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갑 의원은 사용 범위를 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 그 상한선은 영업수익의 1%로, 김춘진 의원은 사용 범위를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상한선은 2%로 하고, 김영록 의원은 중앙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구분해서 중앙회의 경우에는 사용을 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 그 상한선은 영업수익의 3%를 제안하였다. 정부안은 사용 범위를 교육·지원사업과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으로 하고, 상한선은 영업수익의 2%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이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에다 추가해서 회원조합에 관련된 여러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한선을 당초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저녁 회의 도중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출석하여 농협법 개정에 따르는 세금감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였다. 주 실장은 농협의 사업 구조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는 최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가능한 한 세제 특혜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조합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류근찬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라서 처음으로 조합장 선거를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되 동시



획재정부 제2차관과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 차관은 실사 후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세특례 제공 담보 여부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개혁 이후 영업활동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농협이 구조조정 전에 부담하던 수준보다는 높지 않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위원들은 기재부 관료들에게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고 두 관료를 돌려보내고 2010년 12월 6일 합의한 '자본지원계획서의 국회 농식품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정부 측을 압박했다. 정부 측은 위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자본지원계획서의 국회 농식품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여기서 심의는 의결권은 수반되지 않는 개념인 것을 분명히 했다.

다음에는 오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앙회 자본금 배분 문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경제사업부문에 적정수준의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라는 조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배분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들은 '적정 수준' 대신 '상당 부분', '경제사업부문 활성화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자본 배분', '경제사업부문에 더 많은 수준의 자본을 배분하여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조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제사업부문에 얼마 이상을 배분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정해줘야 한다고 하고, 농협 보유자본금의 30% 이상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재관 당시 농협중앙회 전무 이사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 농협 보유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배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로써 그동안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사항이 모두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 '농산물판매활성화평가

협의회'를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로 수정하는 건,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농협중앙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농협법 시행일을 법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건, 조합장 동시 선거일 조정건 등에 대해 의결하고 오후 7시 18분 소위원회를 마쳤다.

이튿날인 2010년 3월 4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가결을 위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려 만장일치로 동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어서 농협법 개정안은 2011년 3월 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1년 3월 본회의에서 찬성 210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5.7. 평가와 전망

2011년 3월 11일 농협법의 국회 통과로 농협은 2012년 3월 2일을 기점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주회사 형태로 분리한 채로 출발했다.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특례, 사업분리 방식 등 많은 쟁점이 있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등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간 그리고 여야 간에 의견차가 컸지만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하나의 성과와 진전이었다고 평가된다. 끝까지 인내를 갖고 합의를 이끌어낸 법률안심사 소위원회 위원들과 막판 심사에서 농협 보유자본금의 경제사업부문에 배분규모와 농협 경제사업 이관시기에 대한 절묘한 해법을 제시한 김효석 의원, 농협법 개정안에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가시킨 최인기 의원 등의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신·경 분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이 하나의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농협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값에 팔아 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서 조합원인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첫째, 농협중앙회는 개정된 농협법을 철저히 이

행해야 된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법 시행 3년 내에 대부분이 분사형태인 수익사업부문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남은 2년 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협은 개정된 농협법에 명시된 일정대로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해야 한다. 국회는 농협이 개정된 농협법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협이 중앙회 및 지주회사가 조합원의 이익 제고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이윤 추구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농민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농협이 농민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매달릴 것을 우려해 지주회사 형식의 신·경 분리방식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연합회가 아닌 지주회사 형태를 띠더라도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농협 측의 약속을 믿고 국회 의원들은 농협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중앙회는 물론 경제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농민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앞세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농협법 개정이 중앙회만의 전유물이 되어선 곤란하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조차도 일선농민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회원조합도 비슷한 실정이다. 조합원인 농민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이해해야 참다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라도 농협은 개정된 농협법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농민들과 같이 뛰어야 한다. 마지막 넷째, 농협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부족자본금 지원문제를 논의하면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은 정부 지원에 따른 농협의 자율성 훼손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래서 출자보다는 출연 형식으로 부족자본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이번의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 중의 하나는 농협으로 하여

금 경제지주회사를 만들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경제사업을 펼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농협법에도 명시된 대로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되고 농협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이 완결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협법 개정에서 다루지 못한 대리인이 아닌 주인의 입장이 제대로 관철되는 지주회사 운영체제 등을 포함한 중앙회 및 자회사 등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농협·도지부·시·군지부 개혁, 상호금융 문제 등은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과제들이다.

## 6. 협동조합 가치와 역할 재창출의 전기

김진국(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 6.1. 들어가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농협의 출범식을 가졌다. 50년 종합농협체제가 하나의 중앙회와 두 개의 지주회사체제로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2008년 말 사업구조개편 작업을 맡게 되면서 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하였다. 3년여의 구조개편 작업기간 동안 농림수산물부에서는 장관이 세 차례 바뀌었으며, 농협에서도 세 분의 전무이사가 거쳐갔다. 물론 국회도 상임위원장이 바뀌고, 상임위원들의 교체가 있었다. 상시변화와 상시개혁의 시대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난 50여년 한국 농업을 지켜 오면서 농업인과 함께 해온 농협의 개편에 이 정도의 시간과 토론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지난 3년간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논의과정에서 특히 농협 내부의 초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회고를 정리한 것이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소회를 기록하기에는 한정된 지면이고 필

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며 시각에 따라서도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과 기록이 있으면 전적으로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 6.2.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배경

농협 사업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당시 글로벌 경영환경은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맞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협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업환경은 농업의 기반인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농협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의 핵심사업인 경제사업은 시장개방의 진전으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소비 트렌드도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신용사업도 경쟁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세계 25대 금융그룹 중 16개가 금융지주회사 형태일 정도로 금융지주회사체제가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산업도 정부의 규제완화 및 육성정책으로 지주회사가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수익을 통해 교육지원 사업비용을 조달하고 경제사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때문에 신용사업의 수익 없이는 존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2008년 당기순이익이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수익센터로서의 역할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본 확충의 한계였다. 자기자본은 경영체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자, 경제사업 투융자와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다. 자기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BIS 비율 유지를 위한 자산 감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사업기반 위축이 순이익 감소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회는 신규자본 조달을 주로 회원 조합의 출자 및 이익잉여금 내부 적립에 의존하고 있

어 자본확충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으로서 인정받고 있던 BIS 산출 특례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익악화에 따른 내부잉여금 부족으로 저원가성 기본 자본은 감소하는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매년 크게 증가해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당시 새로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논의 역시 협동조합에 불리한 형국이었다.

조직 및 사업구조 측면에서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있는 구조로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생산성 향상유인 제공과 전문인력의 육성도 미흡하였다. 또한 농업 농촌의 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가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직발전을 위한 올바른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일련의 비리사건으로 정부,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농협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비등한 시점이기도 하였다.

당시 농협은 2007년 3월에 정부가 확정된 사업분리방안에 따라 자본금을 적립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동 방안의 요지는 2017년까지 10년간 매년 8,250억 원씩 자본금을 적립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익구조의 악화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적립 및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2007년 정부계획 이행도 어려워졌다. 따라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사업의 개편 및 손익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비즈니스 3.0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와 사업방식,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창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의 시대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시도해 온 사업방식의 변화, 조직문화의 전환과 함께 사업구조의 개편이라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외의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환골탈태를 통

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체질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인 조합원과 회원 농·축협에 보다 큰 실익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자는 것이 사업구조 개편의 기본 목적이라 하겠다.

## 6.3. 농협 사업구조 개편 논의 경과

농협 사업구조 개편, 소위 신·경 분리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90년대 들어 농협이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1993년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중앙회의 사업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독립사업부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1997년에는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개혁논의가 재개되었으며, 1999년에는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과 함께 부칙 제16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신·경 분리 타당성 검토를 명기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농림부는 2000년에 신·경 분리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한국금융연구원에 신·경 분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연구결과가 2002년 6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3년에는 자율개혁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 내에 농협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에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농협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농협 스스로 신·경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농협법 부칙 12조에 규정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방안은 2007년 3월 29일 확정되었다. 농협법 틀 내에서 중앙회, 경제, 신용사업의 독립법인 분리를 검토하되 분리시한은 경제사업의 자립기반 구축, 교육지원사업 자본금 확충, 신용사업 BIS 비율 12% 유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10년 후인 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농협 자력으로 매년 8,250억 원씩을 적립하여 필요자본을 조달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

매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조직 및 사업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해가 지날 무렵인 2008년 12월 4일 대통령께서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련의 농협비리들과 관련하여 농협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농협이 돈 장사만 하고 정치를 하면서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1단계에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2단계에서는 신·경 분리를 논의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농식품부 내 농협개혁상황실과 신경분리추진단을 가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약 한 달 동안의 논의 끝에 회장 단임제와 대의원 간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2009년 1월 13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경 분리안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 6.4.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농협은 2008년 최원병 회장의 출범을 계기로 농협 운영 쇄신을 위한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해 6월 30일에는 중앙회 자체적으로 10대 농협운영 쇄신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그 내용 중 하나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종합농협의 특성을 반영한 지주회사체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3월부터 농민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조합장 등 18인으로 자체적인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2008년 7월에 14개 농협개혁과제를 확정·건의하였으며, 동 과제에도 금융지주회사체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즉, 세계적인 선진협동조합그룹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분리방안과 연계한 금융지주회



사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2008년 10월에는 2011년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50년에 대비한 발전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농협경제연구소에 농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농협경제연구소는 맥킨지 컨설팅, 김앤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다. 2009년 3월에 제출된 동 연구보고서는 농협중앙회를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3개의 독립법인으로 연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출범한 구조개혁추진단은 연구용역 결과가 접수됨에 따라 3월과 4월 두 달여 동안 임원, 이사, 집행간부, 관련 부실장, 노조 중앙집행위원, 운영위원, 본부 사업부서의 각 직원, 그리고 동인회 임원들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 연구용역의 결과는 금융지주 설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같은 컨설팅 결과가 농협중앙회의 공식적인 안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노조와 정부 농협개혁위원회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이 때만 해도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가 형성되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야만 하였다. 특히 2009년 6월 5일에는 바람직한 사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지원, 농경, 축산, 금융 등 사업부문별 자체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업부문에서 중간단계로서 현행 독립사업부문을 보다 강화한 소위 회사 내 회사(CIC: Company in Company)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종합농협체제를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중간간부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장 주관 의견수렴회, 임시이사회 등 이사진 대상 설명회, 조합장기발전추진위원회 대상

설명회, 본부 부실장 토론회 등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중앙본부 임직원 대상 의견수렴에 이어 지역별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 권역별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권역별 토론회는 중앙회장이 직접 조합장, 지역본부장, 시군지부장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권역별 토론회는 2007년에 결정된 정부의 사업분리방안 고수를 주장하는 노조와 농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경북, 전북, 충북과 전남 지역은 농민단체와 노조가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거나 강당을 점거하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연기 또는 무산되기도 하였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조합장들은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정부의 일방적 주도보다는 농협중앙회 자체의지로 개편을 주도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 6.5. 사업구조개편중앙위원회의 구성 운영

한편 정부는 2008년 12월 19일 구성되어 2009년 3월 31일 발표된 농식품부 주관 농협개혁위원회의 사업분리방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의 농업관련 공무원을 통해 지역 농협과 농민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수립한 개편방안은 중앙회가 상정하고 있던 방안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보다 광범위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농협의 자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 1일 「사업구조개편중앙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사업구조개편중앙위원회」는 노조를 포함한 임직원 대표 7명, 조합장 7명, 농민단체 대표 6명, 학계 4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원장은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겸 중앙회이사와 이덕수 농업경제대표이사가 맡게 되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 주체, 사업구조 개편안의 수립, 조정 심의, 주요 쟁점사항 중 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정부와의 일정 조율을 포함한 모

든 사항이 망라되어 논의되었다. 한편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도별 협의회」도 운영하였다. 도별 협의회는 조합장 10명, 내부 직원 3명, 외부 인사 3명 등이었다. 중앙위원회는 총 7차례 개최되었으나 그 중 세 차례의 회의가 중단되거나 무산되었다. 대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노조간부들이 회의장을 점거하였으며, 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마지막 7차 회의 역시 노조의 점거로 무산되어 위원회의 최종안을 서면의결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는 정부주도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반대와 2007년에 확정된 2017년 농협 사업구조 개편안의 고수를 주장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중앙위원회의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적과 원칙에 있어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은 농업경쟁력의 강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조직구조는 사업기능을 시장중심조직으로 개편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시장지향적 협동조합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경제사업은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분리하여 자립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한다. 셋째, 신용사업은 종합금융그룹화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넷째, 교육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신뢰를 회복한다. 다섯째, 상호금융은 장기적으로 농협신용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과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실익제고 및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도모, 이해관계자의 합의,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 협동조합의 자율성 확보, 경제투자 재원 및 교육지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상생하는 지속발전가능 구조, 제도·비용·시너지의 유리성 확보 등 8대 추진원칙을 설정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토대 위에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 쟁점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구조 개편의 형태는 사업별 연합회가 아닌 단일 연합회 체제를 유지한다. 단 노조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위원은 사업구조 개편 자체를 반대하며 현행체제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게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둘째, 경제사업 형태는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중앙회 내 대표이사제(독립사업부제)를 유지하되 전제조건 충족 후 경제지주로 개편하며, 만약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기개편을 추진한다. 셋째, 신용사업의 형태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다. 넷째, 상호금융의 형태는 중앙회 내 대표이사체제로 하며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합회 설립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섯째, 개편 시기는 수익악화 등 긴박한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2012년이 타당하다. 그러나 노조는 2017년 안을 강력히 주장하여 소수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부족자본금 조달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자본금 규모는 적정자본으로 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 정체성 유지원칙에 입각하여 조달한다. 자본규모가 클 경우 외부조달이 커져 협동조합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적정자본금만 산정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방법, 성격, 조건 등 세부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경영간섭이나 자율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경제사업부문의 신규투자 내역은 현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원조합 운영시설에 대한 공동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호금융부문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내부 적립금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지원사업 및 경제사업 투자재원 조달방법은 배당과 브랜드 사용료로 하고 브랜드 사용료의 조달 근거, 방법, 과세특례조항을 농협법 및 법인세법에 반영한다. 브랜드 사용료의 조달규모는 현행 사업부문별 교육지원사업비 분담규모와 배당금규모를 기초로 설정한다.

그리고 총 필요자본금의 규모는 23.4조 원으로 하고 부족자본금 9.6조 원은 자체조달 3.6조 원과 정부지원 6조 원으로 충당한다고 결의되었다. 그 외 중앙회 운영,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농협법 및 조세특례사항, IT 부문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조항의 신설, 공제사업의 특례유지,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이 검토 제출되었다.

일단 중앙위원회안이 마련되자 사업구조 개편은 가속을 붙이게 되었다. 중앙위원회안에 대한 이사회 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9년 10월 6일 개최된 이사회 담회에서는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개편 후 사업량 및 순이익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다. 부족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구조개편을 할 수 없다. 정부지원을 받으면 지배구조 의사결정 등에 많은 간섭을 받을 것이다. 농·축경의 조직운영에 대해 대다수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축산부문의 정서와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조직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축산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다른 대표이사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직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등이다. 특히 정부의 자본금 지원의지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보장한다는 문서를 받아 이사회에 보고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연이어서 2009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조합장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사업구조 개편 시 경제사업 부문에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농축경조직의 통합은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본금 무상지원에 믿기 어려우며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외부자본 유입 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간 자금 이동이 지난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지주로 분리 시 금고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금융지주를 매각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조합도 신·경 분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업구조 개편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체 조합장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중앙회 직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안은 2009년 10월 27일 최고이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만 대의원회 시 노조의 극렬한 저항으로 상당한 경찰력이 동원되어 회의장을 둘러쌌으며 일부 노조원은 경찰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한 당일 오후에 정부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정부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믿었던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다. 물론 농협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협의 입장을 반영시킬 것이라는 중앙회 경영진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때 형성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불신감은 이후 농협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대의원회를 통과한 사업구조개편안은 대정부건의의 형식으로 대표조합장들이 정부를 방문하여 장관에게 전달되었다.

## 6.6. 구조개편본부의 출범과 국회 심의과정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농협의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되고 난 후 이를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이해증진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2009년 11월부터 관련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안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회에서도 농협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앙회 및 전국 농협 노동조합에서는 피켓시위 등 사업구조 개편 반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전국 농민회 총연맹,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피켓시위도 이어졌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법국민연대도 발족되었다.

한편, 농협은 그동안 구조개혁추진단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조직을 2010년 1월 구조개편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구조개편본부장 체제하에 구조개편기획부, 경영구조개편부, 경제구조개편부, 금융구조개편부 등 4개 부서가 편제되었고, 직원도 100여 명을 훌쩍 넘게 되었다. 그러나 실무작업의 추진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특히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2010년 4월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그리고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 국회의사일정이 그리 원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조개편본부는 한편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농협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농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법률 통과 후 개편 조직이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출범실무작업을 병행하여야만 했다. 여기에는 관련법령 및 하위법 규정 등 법령정비, 지사무소를 포함한 조직편제, 경제, 금융, 교육지원, 상호금융 등 사업부문별 세부사업의 추진 전략, 사업부문별 분리되는 법인의 필요자본금, 투자타당성 검토 및 전략, 사업부문별 인력체계 및 임금체계, 자산실사 등 간단치 않은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사업구조개편안에 대한 권역별 집합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이해를 증진하고 조직의 동요와 혼란을 방지해야 하였으며,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증진활동도 큰 과제였다. 농협은 언론기고,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학계, 농민단체,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방문 설명 그리고 외부 토론회 등에의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협중앙회의 대정부 건의안과 정부안이 다른 부문에 대해 중앙회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농협과 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그 접합점을 찾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의원실을 언제라도 자료를 들고 달려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초기에는 우리 농협안의 반영을 위해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농협법 개정이 지연되

면서 농협법의 조속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상시변화와 상시개혁의 시대에 농협개혁법안이 계속 계류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개혁피로감은 물론 경영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방향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 및 공청회 참여 등이 75회,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부처에 대한 설명작업이 150여 회, 농협 내부 임직원 및 노조에 대한 설명이 26회, 언론, 농민단체, 동인회에 대한 설명이 20여 회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법률안 제출 이후 통과되기까지 약 500여 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농협은 보다 원활한 농정활동을 위해 회원조합장 40명으로 구성된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도 발족하였다. 지금도 이들 조합장과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에는 고개가 숙여질 따름이다. 특히 2012년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농협의 자본금 지원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말 이른 새벽에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올라와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하여 농협의 저력과 애정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 6.7. 더 나은 농촌과 농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 재창출

50년 전 농협의 탄생과정에서도 당시 정부, 입법부, 협동조합 전문가들이의 솔한 검토와 논의를 겪는 진통 끝에 1961년 7월 농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670호로 공포되었다. 이후 계통조직 정비와 조합육성 등 농협의 초석이 되는 법·제도적 보완이 있어왔다. 이처럼 지난 50년간 농협은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름의 시대적 소명과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50년이 지난 2012년 3월 2일 마침내 새 농협 체제가 출범하였다. 금번의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에도 2011년 4월 초유의 전산사태와 새로운 노조의



출범, 자본금 지원의 형태와 규모 등에 대한 논란 등이 있었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부문으로의 IT 전환 추진, 상호금융 발전계획의 수립,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의 평가 등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 농협 체제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으로 새 농협의 시너지 추진과 사업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어떻든 지난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50년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행되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완수한 것이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농협 경제지주는 13개의 경제자회사를 두고 총 자본 5.95조 원이 투입되는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주도하게 된다. 자산규모 240조 원의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7개의 금융자회사를 뚝으로써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경제부문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2020년 기준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의 62%, 도매유통의 34%, 소매유통의 17%를 점유하고 총 사업량 44조 원에 당기순이익 2,3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금융부문은 2020년까지 총 자산 420조 원 규모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성장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판매농협을 위한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최원병 회장은 사업구조 개편 출범 기념식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업인과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환골탈태의 각오로 정진하겠다는 강조하고, 농업인에게는 풍요로운 미래를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다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

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처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더 나은 농촌과 농협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을 재창출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역사적인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완료하였다.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국회, 정부, 농민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7. 농협을 농민조합원에게

손재범((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7.1.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 설립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09년 3월 말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검토된 사업구조 개편안이 처음 발표된 후, 2년여의 지루한 논쟁과 밀고 당기기를 통해 도출된 절충안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농업인단체들이나 학계 차원에서는 연합회 방식이나 연합회-경제·금융지주회사 방식이나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졌다. 농협중앙회나 일선 조합 차원에서도 2009년 10월 27일 대의원총회 결의사항과 같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출연에 준하는 정부출자금 6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든지, ‘금융지주회사 우선 분리 불가피론’ 등이 제기되면서 농업계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나 학계 및 전문가 인사들이 농업계 단일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제안 및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쉽게 결론을 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 때문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내에서도 제 18대 전반기와 후반기 원 구성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 등의 원론적 수준에서만 합의할 수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었다. 이 속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안, 강기갑 의원 발의안(연합회 방식), 김춘진 의원 발의안(연합회-지주회사 방식), 조진래 의원 대표 발의안, 류근찬 의원 발의안(2015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일 지정) 등이 제출되면서, 2010년 말 당시의 논의 구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규모와 방식 및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농업인단체와 학계 전문가는 물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는 과제였다.

마침내 2011년 2월 및 3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절충된 합의안을 하나씩 도출해 나갔으며,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들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농협법 개정작업은 급진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1년 3월 11일 개정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달 30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농협법은 정부나 국회, 농협(중앙회, 일선조합)이나 농업인단체 그 누구의 일방적인 의견만이 반영되어 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08년 말 이후의 세계 경제·금융·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농협 신용사업(금융)부문의 취약한 문제점부터 개선하여 자생력·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용사업(금융) 위주의 논리가 많은 힘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의 민주적·투명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밑으로부터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이후로 농업계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었고 갈등 요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대승적으로 넘어서서 정부와 국회, 농협과 농업계 모두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농업계 내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7.2. 2011년 농협개혁의 의의

1961년 종합농협체제로 출범한 한국 농협은, 창립 이후 50여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 농협의 종합농협체제는, 벼농사 및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중심의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문순 계절풍 온대 지역의 영세 소농체제 중심인 농업구조 및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형태였기 때문이었다.

1961년의 종합농협 출범 이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구 농업은행)을 활용한 도시 지역 여유자금을 조달하여 농업부문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조합 상호금융사업을 통한 농업부문 고리채 해소 등의 중요한 성과도 있었다. 비료·농약 등의 농자재를 농협 계통을 통해 값싸고 원활히 공급함은 물론, 정부의 추곡수매제와 이중곡가제를 통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수급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도 농협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본격화된 상업농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가공·판매 역량강화는 물론 농업금융부문의 실질적인 지도금융체제로의 전환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이며 시장지향적인 운영구조를 갖추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산지의 농축산물을 상품화·브랜드화하여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에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진정한 판매농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농협 차원의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치도 이뤄졌다. 1994년 농안법 파동 이후 서울 양재동 및

창동에 물류센터(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김대중 정부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산지 농협 간의 직거래(전속계약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기도 안성시 관내 농협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연합사업단(현 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범된 후, 이를 발전시킨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법 내에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의 체제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부문의 무이자·저리 자금지원에 의존하여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해 온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적자로 대표되는 비효율성, 산지·소비자 시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사업으로 지적받아 왔다. 전속 회원제 공동출하조직(공선출하회)이 1,327개가 만들어져 운영 중에 있으며, 산지유통 전문조직은 235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평균 매출액은 104억 원, 영업이익률은 0.2%에 불과하며, 공동계산율은 19.4%, 계약(약정) 출하비중은 35.5%에 그치고 있다.

산지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거래교섭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규모는 영세할뿐더러 전문성 및 사업 추진 의지마저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로 공영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배타적인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업화·규모화된 농업인들은 일선조합이나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도하는 경제사업 규모화·조직화의 기대 효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종합농협체제의 특성상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겸업농·영세농·노령농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경제사업의 패러다임과 발전 방안까지 요구받고 있어, 우리나라 농협의 경제사업은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진정한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기본 패러다임이었다. 비록 시기를 놓쳐 늦었지만, 시장의 여건과 변화는 물

론 농민조합원들의 복잡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조직 및 운영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이어졌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다.

### 7.3. 농협개혁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주요한 역할

2011년 3월 11일의 농협법 개정은 물론, 이후의 사업구조개편추진위원회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등의 검토·논의과정에 이르기까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에 요구되었던 역할은 실로 막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선농업인의 희망사항이나 농협의 진정한 민주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진정으로 부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각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3월 11일 통과된 개정 농협법의 핵심 내용 자체가 애초 2009년 3월 말 성안했던 농협개혁위원회의 원안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이후 제출된 정부 입법안이나 농협중앙회 자체 개편안, 농업계 내에서 제출된 연합회 방식 및 연합회-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개편안, 축산경제 부문 특례조항 유지 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합리적이면서도 원칙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2008년 가을 당시부터, 세계 경제·금융·재정 위기에 대응한 신용사업부문의 독자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구조 개편 논의가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바 '백킨지 보고서'로 불렸던 최초의 사업구조개편안은 물론, 2009년 10월 27일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자체 구조 개편안까지, 금융지주회사를 최우선적으로 분리하여 신용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측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정부에 총 6조 원 규모의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농협중앙회에 실시해 줄 것

을 요청하고, 농협중앙회가 이를 사업부문별로 적절히 배분하겠다고 나섰던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법 개정 실무는 물론, 부족자본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협보험(생명, 화재) 신규 설립과 관련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했던 정부 또한 신용사업 중심의 관점에서 사업구조 개편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고 생각된다. 신용사업부문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나 기본자본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기존 생명·손해보험 분야 주식회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치적 타협안 마련에 정부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통해 이러한 경향이 방증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농협중앙회의 민주적·투명 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당초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추진 관점은 농업계(농업인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내의 한정된 수준의 논의 구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나 정무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차원의 논의에서조차 농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은 물론, 핵심 쟁점사항들에 대한 여야 간 대립과 함께 농업계 내에서의 단일안 마련이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 농협법 개정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 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를 통하여, 농협경제연합회 산하에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경제사업부문에 자본금을 최우선·최대 배정하며, 조합 상호금융의 서비스 전문화와 일체화를 위한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안을 2009년 3월 말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농업계는 2009년 2월~3월 및 7월~8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민조합원 및 일선조합 임직원 등에게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편안을 보완하는 데 힘썼다.

특히 2009년 7월 구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통합 이후 지역축협·전문축협이 주축이 된 축산경제 부문의 특례조항의 유지 문제에 있어서도, 농협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농업계는 이를 적극 수용·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축산업 분야를 포용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일부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연합회 방식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농협개혁위원회의 원안을 변경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협개혁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26일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다음 날인 27일에는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자체 구조 개편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에 엄중 항의하면서 해산을 선언했고, 같은 해 11월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올바른농협개혁을위한범국민연대(농협개혁연대)'를 창설하여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농업인단체들 사이의 사업구조 개편 방식에 대한 이견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계 차원에서는 학계 및 전문가 인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례적인 토론회 및 세미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농업계 차원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매진했다. 이를 통해 연합회 방식(강기갑 의원 발의안)이나 연합회-지주회사 방식(김춘진 의원 발의안)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2009년 3월 말 도출한 농협개혁위원회 개편안의 근본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제19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 이후 2011년 초에 이르러서야 농협법 개정 논의는 다시금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10년 4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합의안은 원론적 차원의 것이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 방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가



운데 농협중앙회나 일선조합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농연 등 농업계는 여야 정당 지도자들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등 소속 위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경제사업부문의 자본금 최우선·최대 배정 원칙 실현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던 야당을 설득하고,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의 법·제도 및 재원 지원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2011년 3월 11일, 지루했던 논의 끝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초 농협개혁위원회의 초안에는 훨씬 못 미치는 개혁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농협 경제사업이 독자적인 자본과 조직, 사업계획을 가지고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는 물론, 조합 상호금융의 독자적인 개편·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농협법은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 7.4. 농협개혁과 향후 전망

개정 농협법이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존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3원화 체제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가 개편되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완전히 경제지주회사 및 산하 자회사로 이관되는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천해야 할 경제사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나아가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농협은행 등 자회사들이 제1금융권 일반은행 등과 유사한 상업은행 업무로 특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농촌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역할을 해 온 조합 상호금융 부문의 자생력·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개정 농협법 부칙에는 조합 상호금융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물론 정부와 농

협중앙회 차원의 준비 작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농협중앙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협동조합연구소를 포함한 국책연구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경제·축산경제 분야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경제지주회사-자회사-조합공동사업법인(시도, 시군, 품목별)'으로 이어지는 계통 체계로서,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이어지는 규모화·조직화·전문화된 생산·가공·유통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일선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 등이 농협중앙회(산하 경제지주회사-자회사)의 하위 사업 파트너로서만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체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중앙 단위 쌀 판매회사 등과 같은 사업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하는 반면 토종종자 등 유전자원 및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자산업 등의 농협 입장에서 취약하거나 신개척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최초 6조 2천억 원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조정과정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이 반려됨에 따라 5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농연 등의 농업계는 물론 일선조합장들까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사업구조 개편 이후 기존 공제사업이 생명·손해보험으로 나뉘는 등 일선조합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라든지, 농협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의 3단계 체제로 이어지면서 인사(노무관리)·총무 등의 업무가 중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문제까지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구조 개편 작업을 전개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더욱 큰 문제는 조합 상호금융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하느냐에 있다. 개정 농협법

의 부칙에 의거한 작업들을 원활히 추진해야 함은 물론, 농산업·농업금융 및 국내의 경제 여건 변화에 발맞춰 조합 상호금융이 농산업·농식품 부문 및 지역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동조합형 투자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 7.5. 나가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협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여,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갈수록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종합농협체제를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는 농협 내외부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농협중앙회 중심, 농협중앙회 주도의 사업 및 조직 운영, 혁신 시스템의 전반에 있어서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선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밑으로부터의 혁신과 변화가 이뤄져야만 진정한 판매농협으로서, 농산업·농식품 분야 및 지역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협동조합형 투자은행으로서 농협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농협 혁신을 위한 구상과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지금껏 문제시 돼 왔던 일선조합의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응 활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즉, 240만 농협 조합원들이 왜 협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은 물론 농업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있어 협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농업인 조합원들의 진정한 협동을 가로막는(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까지를 폭넓게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렵고도 복잡한 과제를 조합원들의 하나된 힘과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모아서 교훈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농협중앙회와 산하 지주회

사, 자회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이야말로 2011년 3월 2일, 우여곡절 끝에 농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만들어 낸 농협법 개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협을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가져오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고비인 것이다.

### 8. 17년 논쟁의 첫 매듭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8.1. 들어가며

2011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확정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1994년 농업발전위원회의 신·경 분리 논의에서부터 시작하면 농협의 개혁을 요구하는 민간진영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 17년 만에 도달한 중간지점이다.

민간진영에서 농협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던 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 민간진영의 역할은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까지 관철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농민단체들 간에 농협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주장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한 협동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11년 농협법의 개정은 실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활동들의 중간 결과물이다. 그 중간에 농협개혁위원회의 활동과 2009년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농협법 개정, 이후 사업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2년 정도 진행되면서 2011년 농협중앙회를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의 4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4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회고하면서 당시의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앞으로 사업구조 개편 후 농협의 발전을 위한 민간진영 특히 농민단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각각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루기보다 활동의 과정과 차이점의 조정 방식을 중심으로 다루겠다.

## 8.2. 농협개혁위원회 논의 전후

농민단체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지난 정권들은 정권 출범 시부터 농협개혁을 강력히 천명한 것과 달리 MB정부에서 농협개혁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이번 정권하에서는 정부차원의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농협중앙회는 자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3소위원회의 보충의제로 조합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이사회, 감사 기능을 축소한다는 등의 논의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소극적이고 농협조직 중심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12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농협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후, 단 하루 만에 농협중앙회에서 신·경 분리까지를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자체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9일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면서 농협개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농협개혁위원회에는 한농연과 전농의 대표, 농민단체의 연합체였던 농민연합 회장을 6년간 역임했던 정재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여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듬해 3월 말까지 활동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의제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2월 중순 각 도별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의 중간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토론회를 주관할 단체로서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선정되어 순회토론회를 진행했다.

11회의 순회토론회가 개최되었고 1,300여 명의 농민단체 회원과 조합원, 조합장, 직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이들 참석자 중 절반 정도인 670명이 농협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순회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설문조사에 포함된 의견은 취합, 분석되어 3월 5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순회토론회는 농협개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광범위

하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향후 평가에서 보면 농협에서 충분히 일선조합에 토론회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나타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농협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논의했지만,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합의가 있었던 반면, 사업구조 개편, 속칭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이 난항을 겪었다.

농민단체는 합의도출과 함께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한농연, 농민연합 등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정리해서 농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는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한 후, 2단계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농민단체도 이에 동의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4개월여의 활동을 통해 3월 말 신·경 분리 건의안을 발표했다. 전국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를 구성하고, 경제사업은 경제지주, 은행사업은 금융지주, 상호금융은 중앙금고에 두는 체계로 정비한 건의안은 기존의 연합회안과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주회사체계 논의를 결합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런 건의안에 대해 농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한농연과 전농 등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방식과 의미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8.3. 지배구조 관련 농협법 개정과 후속 조치

국회는 2009년 4월 29일 농협법 개정을 의결했으며, 6월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농민단체는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모범정관(예) 등의 후속작업에 대해 활동을 전개했다. 이 중 1) 농협업무구역의 시군 단위 확대 및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부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교육위

원회의 설립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 3) 유통손실보전금 지원제도 활성화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위법규를 정비하는 데 대해 농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나타난 농협의 실상을 보면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법 사항이었던 비상임조합장 요건 확대, 상임이사의 요건 확대 등의 기타 사항에서도 농협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보다 전무의 실질적인 임기연장 의혹 등 원래의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합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자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은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등 여러 가지 교재를 만들었고, 대의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협의 자발적 교육 활성화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소수의 농협에서만 활용하거나 대의원 교육에 사용되었다.

반면 농민단체, 특히 한농연을 중심으로 농협관련 교육이 확대되면서 농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농협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도 농협교육이 시도되었고, 농업인신문도 20여회에 걸친 농협을 이해할 수 있는 시리즈 기획기사를 실었다. 전농도 자체적인 농협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 8.4. 사업구조 개편을 둘러싼 농민단체 논의의 분화

제도를 변경하는 일들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음에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제도변경의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도록 기존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미세 조정해 나가야 한다.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안 발표와 1차 농협법 개정은 15년 넘게 지루하게 끌려온 첫 단계를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단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민단체 혹은 민간진영의 관계자들은 '지난 정부와 달리 어

떤 형태든 이번에는 사업구조 개편이 법적으로 마무리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구체성 수준도 높아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상호 간의 신뢰와 유연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정부나 농협중앙회처럼 단일한 계통을 가지지 않고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고, 농협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농민단체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몰고 왔다.

1단계의 필요성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이뤘던 농민단체는 2단계의 구체적 디자인으로 논의가 넘어가자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정부와 농협이 초기에 합의한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부족했다. 특히 농협은 기존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분할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있었다. 두 번째, 이런 변화에 대해 농민단체와 민간진영은 기존의 연합회안을 고수할 것인지와 변화된 여건에서 구체적인 디자인의 필요성과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역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데 강조점을 두는 의견으로 나뉘어 졌다. 세 번째, 필요성을 논의하는 1단계에서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둘러싼 판단들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필자가 보기에는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농협과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연합회안을 고수하는 측과 지주회사 논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합회를 강화하자는 의견은, 중앙회 자



본금의 분리문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의 관계, 조합 공동사업법인 등에 대한 문제,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배치문제 등에서 다양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이견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민간진영에서 계속되었다.

한편, 사업구조 개편 내용에 대해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한농연과 개혁위원회는 다시 7월과 8월에 전국 순회설명회를 가지며 대중적인 확산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사업구조 개편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농협중앙회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경 분리 계획을 발표하자 농협개혁위원회였던 김완배 교수는 농협개혁위원회 논의의 핵심 내용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반발하여 2009년 10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고 개혁위원회 '해체 선언'을 했다.

농민단체, 특히 한농연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신·경 분리 계획은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신·경 분리작업이 농민을 위한 올바른 개혁이 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2009년 11월 13일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런 와중에 농민단체의 연대조직이 분리되었다. 2009년 12월 한농연과 한여농이 농민연합을 탈퇴하였고, 이후 기술자협회 등 몇 군데 농민단체가 추가로 농민연합을 탈퇴했다. 농협개혁 논의가 연대조직 분리를 촉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농협개혁을 위한 농민단체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농민단체의 분리와 의견의 차이 속에서 전농은 농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묶어 18개 단체로 구성된 '반농업 반협동조합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2010년 3월 18일 출범시켰다. 농협중앙회노조가 이들 공동대책위원회에 포함된 것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농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의견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적극

적인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농과 한농연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은 농민단체들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단일의견으로 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갔다.

단일안을 만들어 가는 핵심은 얼마나 양쪽의 진정성있는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특히 기존 농민단체의 핵심적 주장인 연합회안의 문제의식과 변화된 여건 속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연대회의의 문제의식은 모두 중요하고 의미있는 의견이었다.

1년간의 의견조율 작업을 통해 시행단계의 내용에서는 광역연합회와 농협연합회로 자본을 분리하되, 당장 상호금융연합회를 구성하지 않고 금융지주사를 용인하는 구조로 가고, 완성단계에서는 금융지주는 기업공개하고 상호금융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 비출자회사인 중앙회로 분리한다는 2단계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를 2010년 9월에 도출했다.

이후 이 안은 농민연합과 개혁연대에서 농민단체의 대표안으로 의결되었다. 하지만 의결 후 이 내용을 힘을 합해 관철해 나가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이미 전농은 공대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고, 한농연은 연대회의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농연과 협의를 통해 제출된 김춘진 의원안과 전농과 협의를 통해 제출된 강기갑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위원장 대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농민단체의 단일한 농협개혁의 목소리는 약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여 2011년 3월 사업구조 개편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 8.5. 2011년 농협법 개정과 이후 1년

개정된 농협법은 농민단체의 그동안의 요구와 비교할 때 구조적 측면의 반영은 미흡하지만, 운영상의 과제는 일부 반영되었다고 개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1년 법 개정은 17년 동안 진행된 중앙회 신·경 분리 논의의 첫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농협 신·경 분리 논의는 농협이 진

정한 농민조합원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서 과잉쟁점화된 경향이 있었다. 이런 구조에서 개정 농협법은 신·경 분리 논의에 일단락을 지으며, 다양한 농협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농협의 협동조합적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농민조합원 및 농민단체, 농협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없이는 세부적인 실행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법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 경제사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회가 일선조합과 농민조합원의 경제사업과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선언하고 독려하는 조항을 삽입한 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 경제지주회사간의 협력 등 조합과 중앙회 경제사업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조항들도 삽입되어 판매농협의 성격을 더 많이 띠도록 법률 개정된 것도 개선된 점이다. 특히 경제사업 자본금이 현행 2,700억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확대된 것도 개정 농협법의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시행된 지난 1년간 농협중앙회 내부 논의 및 일선조합에 대한 내용의 홍보,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들을 볼 때 농협중앙회의 자기혁신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자본금 지원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너무 과도하게 전면에 내세워졌고,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간섭에 대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표면화되면서 실제 농민조합원과 일선조합과의 적극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농협 내부의 혁신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그 내용도 농민단체 설명회 등 여러 번에 걸쳐 홍보되었다. 반면 금융지주의 사업방향, 상호금융의 발전방향, 농협중앙회의 조직인사의 방향과 교육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은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활성화는 단순히 제도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조합원을 협동조합의 사업에 몰입시킬 것인가가 핵심인 상황에서 2009년 농협법 지배구조 개정의 원래의 법 취지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미흡했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농민단체도 법 개정에 따른 실제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제약과 대부분 농민단체의 구체적인 농협 개혁에 대한 원칙의 부재, 우선순위가 뒤쳐지는 문제 등으로 인해 농협이 법 취지를 지키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 미흡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중요한 농민단체 활동의 이슈가 되지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이에 대한 실행과 평가의 과정은 농협의 당사자에게 맡겨버려 이해관계자가 축소되는 현상이 이번에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이전의 몇몇 농협 운영과 관련된 법 개정이 아니라 수조 원의 자본금을 가진 경제부문의 장기적 투자라는 점에서 일단 결정되고 나면 돌이키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농민단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후의 구체적인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가가 이번 2009년 2011년 두 번에 걸친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실제 실행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8.6. 남은 과제와 농민단체의 활동방향

농협개혁을 평가하고, 농협과 농민조합원이 함께 발전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해결할 내용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만들어야 할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이 장기적인 농협의 구조개편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만들도록 계속 이슈화시키는 일이다.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NH은행, 상호금융의 관계는 여전히 농협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규정력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농협은 경제사업에서 압초를 만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농업계 내부의 이해가 충분해질 수 있도록 연합회적 경제사업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농민단체가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일선조합 내부의 지배구조, 농협중앙회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를 2009년 법 개정으로 일부 합리화했다면, 이제는 일선조합과 농협중앙회, 지주, 자회사로 연결된 농협 전체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지주에 대한 농협 전체의 통제권을 안정화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전환과 연결되어 있다. 크레디아 그레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다양한 사업의 확장만이 아니다.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출자 및 지배구조의 다원화, 대출 등 의사결정을 통합하여 협동조합의 운동영역과 사업영역을 함께 발전시킨 경험을 더욱 중시하여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시작과 끝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에 있다. 노령화된 조합원 문제의 심화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제도여건의 변화, 새로운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은 지속적으로 농민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농협은 그동안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은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뒤처지거나 형식적인 조합원 교육, 실무 중심의 직원교육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도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 농민단체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사업구조 개편의 틀은 짜졌다. 이 말은 농민단체의 농협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농민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가에 따라 농협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져 왔다. 새로운 농협개혁의 방향을 빠르게 협의하고 제도 변화의 세 번째 단계인 실행의 영역에서도 농민단체의 활

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농협 경제사업의 체제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부문의 무이자·저리 자금지원에 의존하여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해 온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적자로 대표되는 비효율성, 산지·소비지 시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사업으로 지적받아 왔다. 전속 회원제 공동출하조직(공선출하회)이 1,327개가 만들어져 운영 중이다.



## 제2장


농협개혁 관련 발표문

# 제2장

## 농협개혁 관련 발표문

### 1. 청와대

#### 1.1.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1년 3월 28(월)	작 성	국정과제비서관실
		비서관	김 용 환
		행정관	신 진 창
		연락처	02-770-7327
2011년 3월 29일(화) 09: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서명 - 농협법 개정 계기,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 -			

- 청와대는 3.29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11일(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 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 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은 신·경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기상이변,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또한,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지고
  -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하여
  -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 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 아울러, 농산물을 제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농협법이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 대통령이 서명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31(목)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정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참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경과>

- ▶ '08.12.9 「농업개혁위원회」구성
  - \* 이명박 대통령, 농협개혁 의지 천명('08.12.4, 가락시장 방문)
- ▶ '09.12.16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 ▶ '10.2~'11.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 ▶ '11.3.11 국회 본회의 통과

(붙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주요 내용

### 1.2. 브리핑

#### 1.2.1.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 및 환담 브리핑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에 참석한 분들과의 환담은 거의 한 40여 분 이상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환담에서 대통령께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동안 농협의 개혁법안 처리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바로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이 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남은 2단계 개혁도 잘 마무리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개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이른바 농촌이 농업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때가 됐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돼야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농림

수산식품부에, 식품이라고 하는 산업기능을 포함키로 공약했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미 진행 중에 있지만 1년에 몇 번 안 쓰는 농기계를 각 농촌마다 사서 쓰는 것은 비효율적인 낭비이다. 그래서 농협이 장비들을 모아서 임대를 하거나 대리경작을 하는 등의 사업을 해야 농촌이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른바 농촌으로의 유턴도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던 농협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건의들도 있었습니다.

참석자 분들의 주된 건의 내용은 “개혁이 앞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협에 좀 맡겨 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농협이 어느 때보다 강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농협법 개정도 농협과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향이다”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님은, “사업분리 등 2단계 개혁작업도 농협과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회의 여야 그리고 정부에 설득하고 설명하겠다. 쉽



게 얘기하면 자율적 개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적인 정치문화, 바른 방향의 개혁, 그리고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나 주장을 넘어서 힘을 합쳐 법안을 처리하고 이익단체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생산적 정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 금융산업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항상 외쳐 오신 분입니다. 진정성 있는 개혁과 변화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표가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대화에 있는 것입니다.

2009년 6월 8일  
청와대 대변인실

### 1.2.2.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대변인 논평

농협법 개정은 17년간의 산고 끝에 이뤄진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이 농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협이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이 신용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토종은행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위조합장 등 농업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조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성숙된 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부처의 노력과 언론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협법 개정과정은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경험이 다른 사회 갈등 해결에도 널리 적용되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3월 11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 1.2.3. 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서명

청와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에 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 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경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기상이변,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을 제값 받고 잘 팔아 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농협법이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이 서명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31일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 29일  
청와대 뉴스

### 1.2.4. 농협법 서명 관련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뼈대로 하는 개정 농협법 공포안에 서명하고 관계자들과 환담했습니다.

다음은 환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농민을 위한 법이 오늘 제 모습을 갖추었다.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농업중앙회장과 조합원, 농민단체, 농림식품부 관계자 등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농협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농민이 잘살려면 결국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온다.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이 합심해서 하면 농업이 낙후 산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서 많은 농산물을 사다 먹지만,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아마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 농산물을 많이 사 먹는 시대가 꼭 올 것이다.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도 별로 득을 못 보고 소비자도 득을 못 보면서 중간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이다. 농협이 적극 노력해서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농민이 만든 우리 차로 건배 한번 하자”면서 차잔을 높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선창하며 역사적인 농협개혁을 축하했습니다.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은 “농민들은 자기들은 생산만 하고 농협이 유통 판매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 주는 체제를 바라고 있는데, 이번 농협개혁은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최 위원장과 정해걸, 강석호 의원(이상 한나라) 김우남 의원(민주), 유정복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최덕규 농협사업구조개편위원장(경남 합천조합장), 안명수 광주축협조합장, 김준봉 한국농민경영자연협회장, 이준동 농민연대 대표,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무 경제 홍보수석,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 1.3. 정책자료

#### 1.3.1.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가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의 압력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는 우리 농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협이 바뀌어야 합니다.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10%도 농협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습니다. 낙후된 농협의 지배구조도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일부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만한 경영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농업인의 수는 줄었으나, 농협의 직원과 조직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농업 선진국처럼 지배구조를 갖추고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는 데 전념하는 농협'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농협이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 농민단체, 학계와 함께 마련한 농협 개혁방안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담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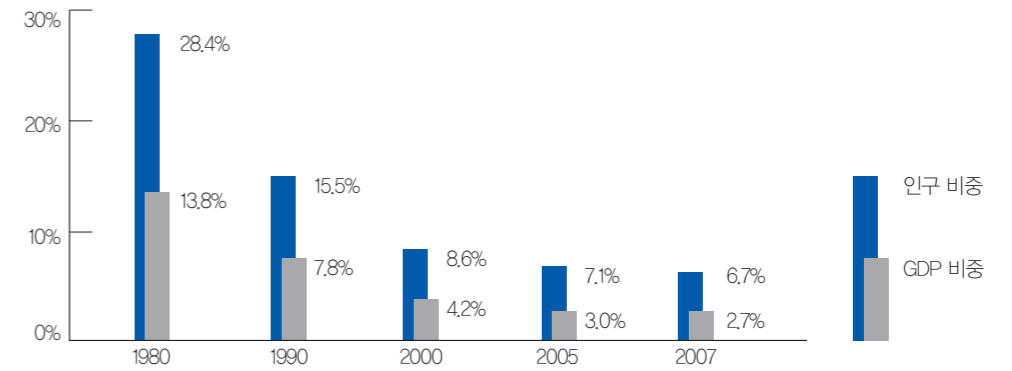
2009년 3월 31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

#### 1. 농협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오랜 기간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농업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이 갈수록 위축
  - 농가인구 및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전

#### 전체 대비 농가인구 및 농업 GDP 비중



- FTA 체결 확대로 향후 농업시장 개방의 확대 불가피, 농업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아 주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선도해야 할 농협은 독단·방만경영으로 대내외 신뢰도 추락
  - 권한 집중, 견제장치 미흡으로 중앙회장의 인사 전횡, 금품 수뢰, 업무상 횡령 등 비리
    - ⇒ 전임 3명 회장 모두 형사 처벌
  - 직선제에 의한 회장 선출에 따른 선거 혼탁, 재선을 위한 선심 경영 폐해
  - 지난 5년간 농업인 수 32만 명 감소했으나 농협 직원 5천 명 증가, 자회사 수 증가
    - ※ 21개 자회사 대표 중 전직 중앙회 임직원 출신 15명
  - 농업인 소득 3,000만 원 불과, 농협 간부는 8,0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

#### 농가소득과 농협 임직원 연봉(백만 원, 2007년)

농가소득	중앙회장	중앙회상무	중앙회직원(1급)	조합장	조합전·상무
32	211	188	91	83	81

- 일선조합의 방만한 경영도 큰 문제, 일본 대비 농가 수는 2.4배 적으나 조합 수는 더 많음

#### 한국과 일본의 지역 농협 수(개)

	1990년	2008년	1990년 대비
일본	3,561	757	Δ2,804(약 80% 감소)
한국	1,635	1,105	Δ530(약 30% 감소)



-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신용사업에 몰두
  - 소비자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 7%에 불과, 농협이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대형 농산물 판매센터 건립보다는 증권회사 인수
    - ※ 2007년 중앙회 경제사업 1,787억 원 적자, 신용사업 1조 4,363억 원 흑자
    - ⇒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농협개혁을 반드시 성공하여 농협을 농업인에게 되돌려 줄 필요 있음
    - ※ 농협중앙회도 개혁의 필요성 절감, 지배구조 개선·조직과 인력 군살 제거·경제사업 활성화 내용의 자체 개혁방안 발표(2009년 1월)

## 2. 농협개혁 이렇게 하겠습니다.(농협법 개정안 2월 4일 국회 제출)

- 견제와 균형의 선진 지배구조 확립
  - 중앙회장 선출·임기 개선
    - 중앙회장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
- 직선제에 따른 선거 과열, 득표를 위한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문제 심각
- 선진국의 경우 중앙회장을 간선·호선으로 선출

### 각국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직선 (조합장*)	호선 (이사회)	간선 (대의원회)	호선 (감독위원회)	호선 (이사회)

\* 한국 농협 조합장 수 1,187명, 대의원 수 278명

- 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 없음
- 연임을 위한 일선조합에 대한 선심성 자금지원 문제

- 중앙회 임원 선출방식 선진화
  - 사업부문(경제·신용 등) 대표이사·사외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선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중앙회장이 대표이사·사외이사 추천권 행사
-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비상임 회장이 인사권 행사로 이사회·집행부 사실상 지배

- 중앙회 감사 독립성 강화
  - 상임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감사는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의원회 선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어 6인의 이사가 감사위원 겸임
  - ※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선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선출
- 회장의 인사영향권 내에 있는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으로 회장 감독 곤란, 감사위원이 이사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한 안전에 대한 사후 감독 곤란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 이사회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 이사 수를 현행 35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 효율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 ※ 이사 전문성 제고, 자문위원 활용 등을 위해 사무국 기능 강화
    - ※ 부문별 대표이사 소관별 소위원회 폐지로 이사회 기능 강화
- 일선조합 지배구조 개선
  -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조합장 비상임화 추진

### 총자산 규모별 일선조합 수(개)

500억 미만	500억~1,000억	1,000억~1,500억	1,500억~2,000억	2,000억~2,500억	2,500억~3,000억	3,000억 이상	계
151 (12.7%)	428 (36.1%)	234 (19.7%)	99 (8.3%)	67 (5.6%)	40 (3.4%)	168 (14.2%)	1,187 (100%)

※ 총자산 1,500억 원 이상 조합 374개(전체 31.5%)

### <현황 및 문제점>

- 일선조합은 신용과 경제사업을 경영, 사업규모 확장 추세
- 선출직인 조합장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인에 의한 경영 필요
  - ※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 대표로 활동

- 조합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를 거쳐 총회 선출
- 조합장 명의의 애·경사 기부행위 제한

● 경제사업 활성화 및 조합의 경쟁력 제고

– 경제사업 활성화

- 중앙회 교육지원자금을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
  - ※ 교육지원자금 편성권을 전무이사에서 경제대표이사로 이관
- 조합의 유통사업 전념을 위한 세제 지원
  - ※ 가격등락·재해 등 대비하여 적립하는 유통손실보전금에 세제혜택 부여
-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확대
  - ※ 도시조합 신용 수익금을 농산물 판매능력 확충에 활용
  - ※ 품목조합의 도시조합 출자 근거 마련, 도시조합 농산물 판매 확대
-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를 감안한 중앙회 대의원 수 배정
  - ※ 현재 경제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시·군 조합 수에 따라 대의원 배정

– 일선조합 광역화 유도

- 농업인의 조합선택권을 도 단위로 확대, 조합 간 경쟁 촉진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소재 조합 중 선택·가입
  - ※ 536개(전체 45%, 2007년) 조합이 읍·면에서 유일한 농협조합
- 읍·면 단위 소규모 조직으로는 ‘판매 농협’ 구현 곤란
  - ※ 판매사업 100억 원 미만 조합(2007년) 713개(전체 59%)

- 조합 간 인수·합병 시 인센티브 제공 등 통폐합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부실 또는 영세한 일선조합으로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한계
  -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281개 조합(2007년)이 적자로 전환
- 인수·합병을 통한 일선조합 구조조정 및 규모화 시급

–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 농협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 ※ 약정조합원에 대해서는 배당 및 시설이용 우대

〈현황 및 문제점〉

- 조합원의 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참여율 저조
  - ※ 공동계산 참여 조합원: 4만 3,000명(전체 1.8%), 물량기준 13.4%

● 경제·신용사업 분리

- 현재 농업개혁위원회에서 농협의 경제·신용사업 분리방안을 논의 중

〈경제·신용사업 분리 필요성〉

- 현재 농협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함께 영위
- 신용사업에 상대적으로 치중된 경영, 경제사업 확대·발전 애로
- 사업분리로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사업 건전한 발전 필요

- 향후 농업개혁위원회 건의를 받는 대로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사업 분리방안 조속히 마련 예정

● 농협 자체 구조조정(2009년 1월 7일 발표)

- 고강도 인적·조직 쇄신을 통한 비용 절감
  - 본부조직 20% 이상 슬림화
  - 집행간부 정수 30% 등 직원 1,000명 이상 감축
  - 조합장·집행간부 연봉 10% 이상 삭감 추진
  - 임금피크제 도입
- 강력한 자회사 구조조정
  - 기능 중복 자회사의 통합·매각을 통해 자회사 수 30% 이상 감축
  - 자회사 상근 임원 수 30% 이상 감축
  - 자회사 직원 급여 삭감

3. 농협 개혁, 이러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지배구조 개선으로 대내외 신뢰도 제고
  - 회장 및 조합장 선출 관련 선거 혼탁 및 선심성 경영 차단
  - 투명·공정한 인사로 인사전횡 방지 및 유능한 경영진 확보
  -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으로 농협의 경영 효율성 제고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아 주는 농협으로 변모
  - 일선조합 지원금의 경제사업 지원 전환으로 농산물 판매망 대폭 확충
  - 일선조합 대형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및 가공사업 확대·발전



※ 순천농협(12개 농협 합병) 경제 사업규모: (1996년 합병 전) 673억 원 → (2008년) 1,466억 원(117.8%↑)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중앙회의 농산물 판매사업 강화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서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 비용절감으로 농업인 혜택 증가
  - 일선조합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인건비만 연간 약 1,200억 원 절감
  - 일선조합 유지비용 절감액으로 농업인 대출금리 인하 가능
    - ※ 순천농협의 경우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먼 단위 조합에 비해 0.5% 낮음

**당부의 말씀**

- ◆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 농업 선진국처럼 지배구조를 갖추고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는 데 전념하는 농협'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 ◆ 농협 개혁은 역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해묵은 난제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농협 스스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농업인과 농민단체들도 농협 개혁방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 정부는 농업인, 농민단체, 학계와 함께 마련한 농협 개혁방안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담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 개정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1.3.2. 농협법 개정 '농협 선진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 4월 4일에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 법률 공포안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한 것은 개정 농협법의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50년 된 농협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은,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 주고 경쟁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간 농협은 금융업무에 치중해 유통을 비롯한 경제사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는 등 농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

여,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고 이제 그것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17년 전인 199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농협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도 협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쓴 국회 최인기 농림수산물식품위 위원장, 정해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함께한 지역 조합장, 농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국정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정된 농협법의 핵심은 금융 분야와 농업 분야를 분리하여, 유통을 비롯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농협이 유통과 판매를 책임져 중간 단계를 줄이게 되면 농민은 제값을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경제 전체로는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켜 물가 불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농민과 정부가 서로 합심하면 우리 농업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  
촌은 쓸쓸하다 / 그러면 촌은 운다 /  
'촌아 울지마' /

10년 전 농촌의 한 어린이는 우리 농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농촌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안홍석 씨는 1995년부터 배농사를 시작하여 첫 수확에서는 배나무를 모두 뽑아내 버릴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유기농법을 익히고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당도를 최고로 높이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지금은 한 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배즙까지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성공하겠다는 포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것과는 달리 농업은 사양산업이 결코 아닙니다. 농업생명공학의 발달로 바이오 농업시대가 다가오면서 농업은 유망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첫 해 농림수산부를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확대 개편한 이유도 식품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서 우리 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르는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소득층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고급 농산물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부가가치 유기농 농수산물품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농업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관광과 체험, 레저, 예술까지 결합된 복합문화산업이자 지식 기반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과 함께 협력하여 도시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에 농산업인들의 자립의지와 도전정신, 그리고 새로 거듭난 농협의 역할이 함께 더해진다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농협의 사업구조와 조직을 선진화하는 후속 조치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진 일류 농협의 탄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협과 농민단체, 정치권 등 여러 주체가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7년 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역사적 성과인 만큼 대승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2011년 4월 4일  
대통령 이명박

### 1. 왜 지금 농협 개혁인가?

- 농협중앙회는 지난 1961년 설립된 후 2000년 농·축협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 임직원이 약 2만 3,000명(비정규직 포함)에 이르는 조직으로 성장
  -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한국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중앙회 신용·경제 분리는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과제로 제시된 농업계의 오랜 숙원
  - ※ 1994년 농협법 개정 시 중앙회 신용·경제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도입
  - 그동안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고,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최근 신용사업도 경쟁회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이 급격히 감소
  - ※ 농협은행 손익 추이(억 원): (’07)13,297→(’08)3,304→(’09)4,147→(’10)5,662
- 정부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협개혁 추진
  - 농협·농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11인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08.12.9)

### 2. 농협개혁!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농협법 개정 주요경과]

1994년 농협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17년 만에 농협법 개정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농협법 개정의 주요 경과들을 모아봤습니다.

- [1988년] 중앙회장, 조합장 선출방식을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전환
  -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정부 사전 승인제 폐지, 일선조합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 폐지 등
- [1994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회 신용·경제부문별로 독립사업부제도 도입
  - 중앙회장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 전문조합 육성을 위해 전문조합의 업무구역 폐지,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허용
- [1999년] 농협중앙회신용·경제사업분리추진 부칙 신설(9월)
- [2000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의 논의를 거쳐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여 농협중앙회를 설립(통합농협중앙회 출범, 2000.7.1)
  - 중앙회는 농업·축산경제, 신용사업 부문별 대표이사제도 도입
  - 일선조합은 조합장 선출방식에 직선제, 간선제 외에 이사회 호선제 추가
- [2003년] 농협개혁위원회(농협) 설치
- [2004년] 회장 비상임화, 중앙회지배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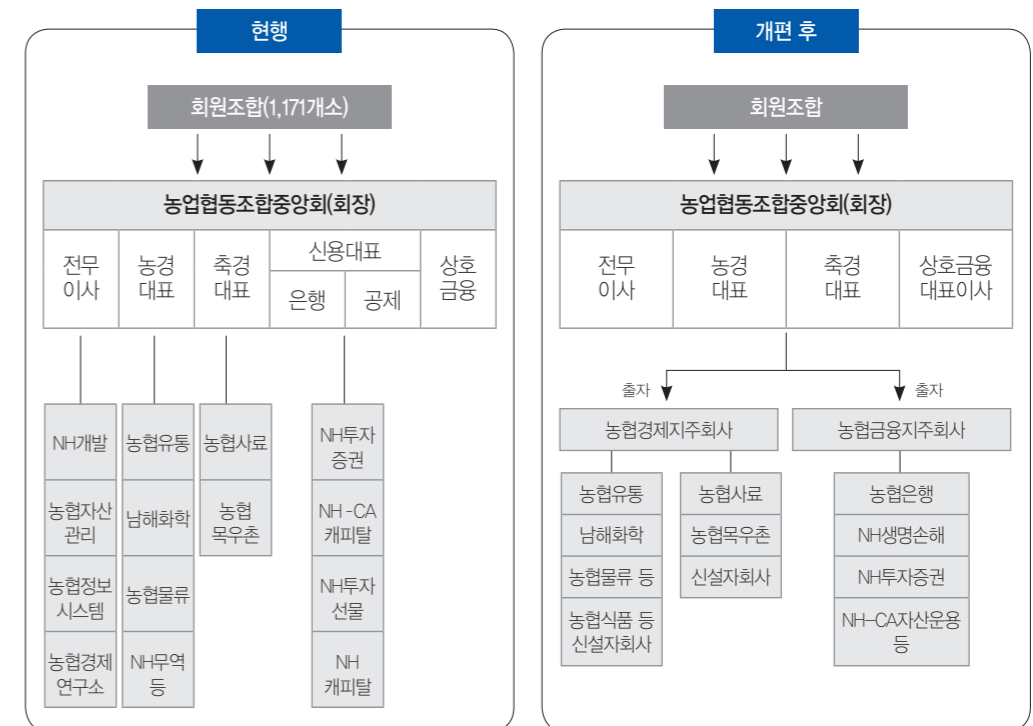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경영은 전문경영인이 책임 경영하는 형태로 지배구조 개선
- 이사회 이사 확대,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 도입
- [2007년] 「농협경제사업활성화와 신·경 분리방안」을 마련(3월)
  - 중앙회 신·경 분리는 경제사업 자립,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를 위해 10년의 유예기간 부여
- [2008년] 「농협개혁위원회」 출범(3월)
  - 농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 농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
- [2009년] 중앙회장 간선·단임제 도입 등 1단계 운영구조 개선 완료
  - 중앙회장 간선제·단임제 도입, 조합장 비상임화(자산 2,500억 원 이상)
  - 조합 업무구역 확대: 읍·면 → 시·군·구(2010.12.10 시행)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자 범위 확대,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 부여
- [2009년]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1년] 국회 본회의, 농협법 개정안 통과(3.11)

### 3. 농협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농협법 주요 내용]

#### 1) 사업분리 방식

-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 (2012.3.2 시행)





- 중앙회와 기존 자회사가 수행 중인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134의2)
-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공제사업은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134의3)
-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토록 하고, 경제 및 금융사업은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체제로 전환
- 중앙회가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

2) 경제사업 활성화

- (중앙회 및 조합의 역할·기능 재정립)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활성화를 농협의 주요책무로 명문화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인 사업 목표로 규정(§6②)
  - 조합은 판매활성화를 위해 계약 생산, 공동출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회에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57의2)
  -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는 조합으로부터 수집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전문 판매조직 및 시설을 확보토록 함(§135의2①)
  - 중앙회 및 경제지주회사의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 명문화(§135의2②)
- (경제사업구조 개편) 경제사업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절차와 시한을 명시하고, 경제지주의 목표가 자체영리 추구가 아닌 농업인과 조합이익 증대에 있음을 규정
  -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여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부칙§5)
  - 경제지주는 사업 수행을 통해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규정(§134의2)
- (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중앙회에 농협 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추진의무를 부과(부칙§5)
- (경제자본 배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부칙§4)

3)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

-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중앙회의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분리하여 금융사업의 총괄조직으로서 농협 금융지주회사를 설립(§134의3)

- (농협은행 신설)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하여 현행대로 농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함(§134의4)
  - 일반 은행업무 외 농업인 및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 업무를 수행
  - 농업인의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자금 우선 지원
- (농협보험) 농협공제를 보험으로 전환하되, 경과조치 및 특례를 규정
  -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134의5)
  - 조합과 농협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의제

4) 명칭사용료제도 도입

- 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농협은행 등)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159의2)

5) 조합장선거 전국 동시 실시

-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 실시(부칙§11)
  -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2015.3.11)에 전국 동시선거 실시
- 공정선거 풍토정착 및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선거제도 개선
  -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조합의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토록 함(§50의3)
  - (모든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조합장을 대의원회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와 품목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함(§51④)

4. 농협법 개정! 이런 효과를 냅니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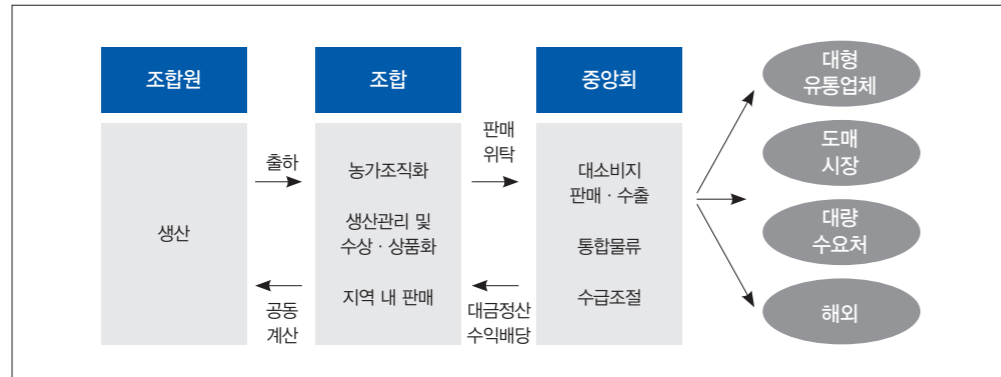
-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경제사업·신용사업의 전문성·책임성이 강화되어 '회원 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경제사업, 지도·지원)에 충실한 조직'으로 재탄생
- 농축산물 유통·판매사업은 대형유통업체, 식품회사 등 대량수요처와 거래하고 수입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적 틀 마련
- 농협의 신용사업은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중 금융기관과 경쟁가능한 조직형태로 전환

1) 경제사업: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중앙회가 산지유통에 직접 참여, 공동출하, 공동판매, 공동이익에 충실한 전국적 농산물 판매 조직화 실현
- 분산된 농협의 농축산물 출하 채널을 중앙회로 일원화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가수취 가격 제고
- 중앙회 주도의 농축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조합 부담 경감
  -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 공판장 통합 거래시스템 구축, 식품산업 진출, 조합 공동사업법인 출자 등 중앙회의 소비지 및 산지 투자 증가
  - 중앙회의 투자 확대 및 조합과의 공동사업 참여로 조합의 경제사업 부담 경감

〈전국 단위 공동 브랜드 K-벨론사레〉

- 전국 1,287명 농업인과 23개 농협, 12개 시군연합사업단이 참여
- ERP시스템 도입, 생산기법 통일, 파종·출하시기 조정,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 브랜드
  - ☞ 중앙회로 출하장구를 단일화, 일반상품 대비 28% 높은 도매가격 형성,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맛 좋은 상품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



※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축산물 유통·판매는 농협이 담당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민들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

농수산물 유통·판매 관점에서 본 농협법 개정의 효과

종전	개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법인 내에서 경제·신용·지도사업을 수행 - 신용사업에 치중, 경제사업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경제지주회사 출범(전문성, 책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중앙회의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미흡 - 이에 따라, 농·축협(농업인)이 직접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담당 - 시장교섭력 부족, 복잡한 유통구조 등의 문제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를 법률로 명시 - 농·축협·조합원의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의무 신설 - 회원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계약재배 등의 수급조절 사업 추진 신설 ※ 부대의견으로 보유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지주회사에 우선 배분키로 함</li> <li>○ 지역농협의 조합원 생산 농산물에 대한 계약생산 및 판매 규정 마련, 공동출하 등 사업시행 의무(신설) - 지역농협의 중앙회에 대한 판매위탁 요구권 신설(중앙회는 거부권 없음)</li> </ul>

2) 신용사업: 시중 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 조합과 농업인에 환원

-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는 중앙회(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미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

국내 은행 총자산/당기순이익 비교

(2010.9 기준)

구분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총자산(조 원)	193	275	238	247	159	171
당기순이익(억 원)	2,066	2,303	14,547	9,196	7,169	10,482

5. 더 나은 농협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 2012년 3월 2일 신설 법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치밀한 후속 조치 추진
- 후속 조치 준비과정에서도 농업인,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청취

1) 정부

-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에 「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운영(2011.3 완료)
-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협의회」 구성(2011.3 완료)
- 경제사업활성화계획·농협 자체자본 조달계획 등을 토대로 정부자본 지원 계획서 작성 및 국회 보고(2011년 3/4분기)
-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보험업법시행령 개정(2011년 중)



2)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2011.4부터)
-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 설립 준비(2012년 3월까지)
  - 자산실사 결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경제사업활성화계획, 농협 자체 자본조달계획 수립(2011년 3/4분기)

1.3.3.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번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농민이 잘살려면 결국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온다.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이 합심하면 농업이 낙후 산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서 많은 농산물을 사다 먹지만,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아마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 농산물을 많이 사 먹는 시대가 꼭 올 것이다.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도 별로 득을 못 보고 소비자도 득을 못 보면서 중간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이다.

농협이 적극 노력해서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3월 29일, 개정 농협법 공포 서명식

‘농업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현 농협중앙회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

(2012년 3월 2일)하여 경제·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금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농협, 나아가 한국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농협’,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으로 자리 매김하고 글로벌 농협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농협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경제부문 자본금 확충을 통해 경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청과 등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협동조합형 축산팍커(생산·유통·판매 일괄체계) 등을 육성하여 중앙회의 유통기능이 대폭 강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이 판매를 전담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시장 교섭력이 강화되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딘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협개혁이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계기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9일

대통령실 농수산식품비서관 남 양 호

1. 사업구조 개편 경과

1) 농협이 걸어온 길

- 농업은행과 (구)농협 통합하여 종합농협 출범: 1961년
- 농협·축산조합분리(축협중앙회 발족): 1981년
- 중앙회 회장직선제 도입 등 민주농협 출범: 1988년
- 농·축·인삼협 통합으로 통합 농협 출범: 2000년

2) 농협법 개정 본격 논의

- 2000년 9월: ‘신·경 분리 추진협의회’ 설치 및 본격 논의
  - 2006년 1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2007년 4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방안(2017년 분리) 마련
- 2009년 10월: 농협사업구조개편안 마련 및 정부 제출
- 2009년 12월: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0년 2월 22일: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정
  - 2010년 2월~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안 심사
  - 2011년 3월 11일: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1년 3월 31일: 개정 농협법 공포

3) 개정 농협법 시행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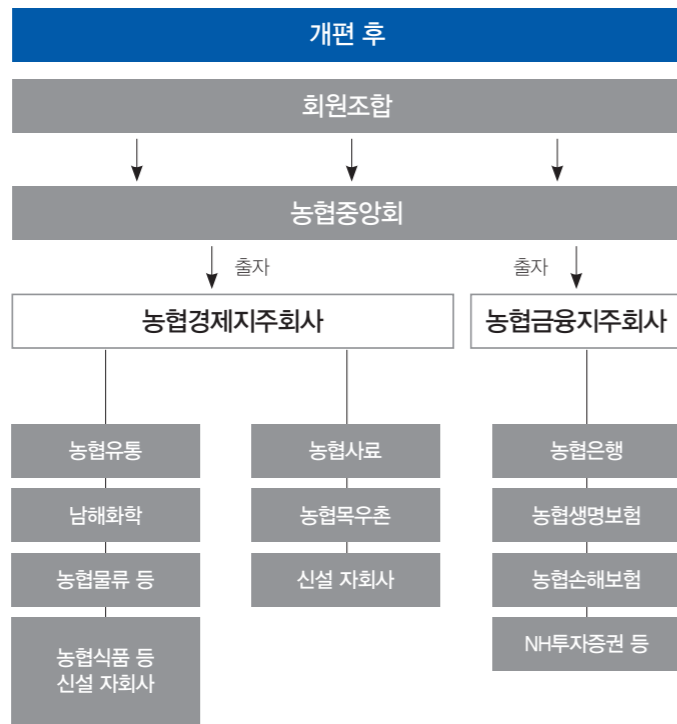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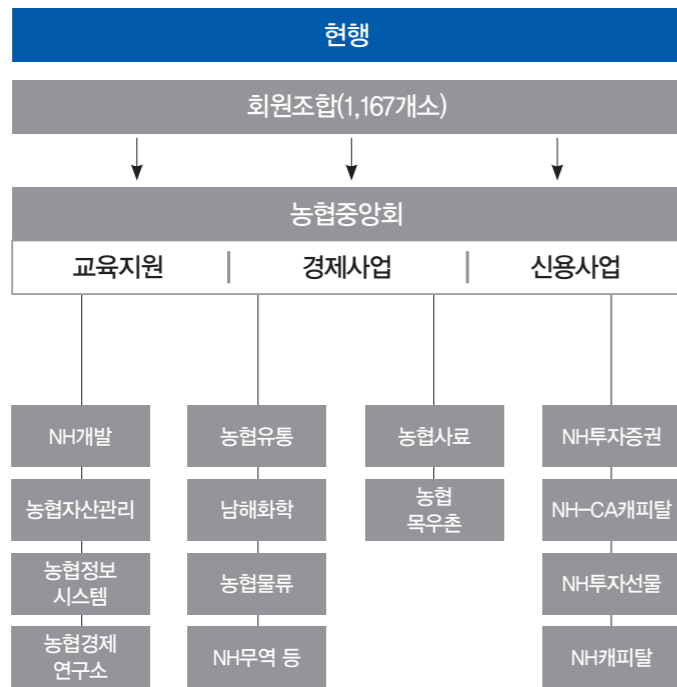
- 2011년 12월 31일: 정부 자본 지원 관련 2012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 ※ 최종 논의를 거쳐 농협의 채권발행 4조 원의 이자 지원 및 1조 원 현물출자(2012.2.21)
- 2012년 3월 2일: 개정 농협법 시행

2. 사업구조 개편 방안

□ 개편 방향

- 공통관리조직 간소화 및 농·축협 실익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지원기능 중심의 중앙회로 재편
- 농협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현행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조직 및 사업의 연착륙 유도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전후 비교



###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그룹 총괄 지원조직 설치</li> <li>▶ 농업인 실익 중심의 농축협 지도·지원체계 유지</li> <li>▶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편제·운영</li> </ul>
지역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 16개 본부 유지, 금융 및 보험부문 분리 운영</li> <li>▶ 시·군지부: 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은행 '시군지부'로 분리</li> </ul>
경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경제지주회사 신설</li> <li>▶ 농축협 경제사업지원 전담조직 설치</li> <li>▶ 판매·유통부서를 분사체제로 전환</li> <li>▶ 지역본부 및 시·군 단위 연합사업단 역할 강화</li> </ul>
신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금융지주회사 신설</li> <li>▶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 분할 설립</li> </ul>
상호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제 도입으로 농축협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강화</li> <li>▶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전담조직 설치</li> </ul>

### 3. 사업부문별 개편 방안

#### 1) 중앙회

- 농업인,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협동조합 구심체 역할
  -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지배함으로써, 중앙회와 자회사 간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농협그룹의 구심체 역할 수행
  - 농업인, 농축협 실익 중심의 지도·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 상호금융부문 대표이사제 도입으로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부문에 신용보증기금 편제
  - 지주회사·자회사 명칭사용료 수입을 통해 현행 수준 이상의 교육지원사업 실시
    -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자원 재배분
- 교육지원사업 효율화 추진
  - 예산과 자금의 통합지원·관리체계 구축
    - 예산 및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현황 공개로 투명성 제고
  -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실익 중심의 사업 추진
    - 교육지원사업의 성과지표(KPI) 개발 및 성과평가 강화
  -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 3~5년 단위로 중장기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 방안



2) 경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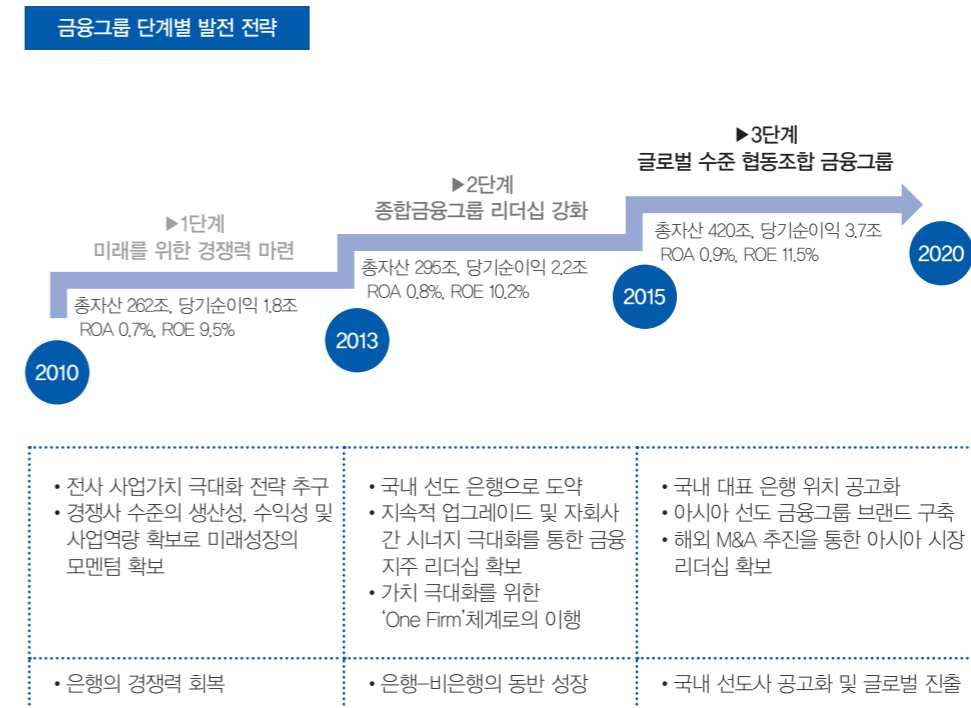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동조합 종합유통그룹 도약
  - 경제지주 산하에 기존 경제부문 자회사를 편입하고, 중앙회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
    - 시·군지부 경제사업은 2017년까지 도지역본부로 단계별 통합
  - 지속 가능한 자립경영시스템 확립
    - 중앙회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부문에 우선 배정
  - 경제사업 활성화와 추진을 통해 농협 주도의 농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판매 농협 토대 구축
  - 농축산물 유통계열화로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 판매
    - 조합 농축산물 중앙회 판매 비중: 2010년 10% → 2020년 54%
  - 농축협-중앙회 공동투자를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전문화
    - 공선출하회, 들녘별경영체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조합 간 연합을 통해 시·군·도 단위 연합마케팅 사업 확대
  - 농업인 생산역량 지원 강화로 경영부담 경감
    - 자재유통 시스템 혁신으로 농자재 가격인하 추진
    - 계통 사료공장 통합 등으로 사료가격 안정 도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산지유통 활성화, 도매물류센터, 안심축산, 식품회사 설립 등

3) 금융부문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그룹 확립
  - 금융지주 산하에 신설 은행, 보험사 및 기존 신용자회사를 편입하여 종합금융그룹 체계 구축
    - 단계별 경쟁력 강화 및 은행·비은행의 균형성장을 통해 2020년 글로벌 수준의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성장
- 농협 금융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핵심사업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은행, 보험 중심의 리테일 강자로 차별적 포지셔닝
    - 농업금융 영역 확대를 통해 농협 고유의 사업 특화
  -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규모화 및 글로벌 진출

4.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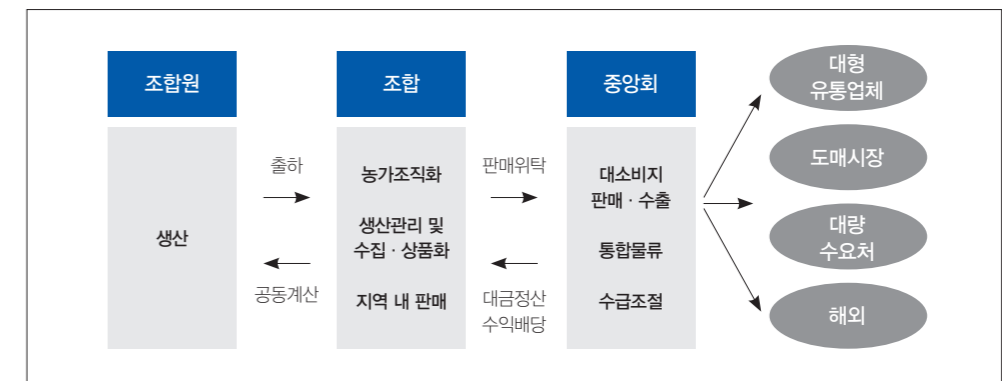
1) 글로벌 협동조합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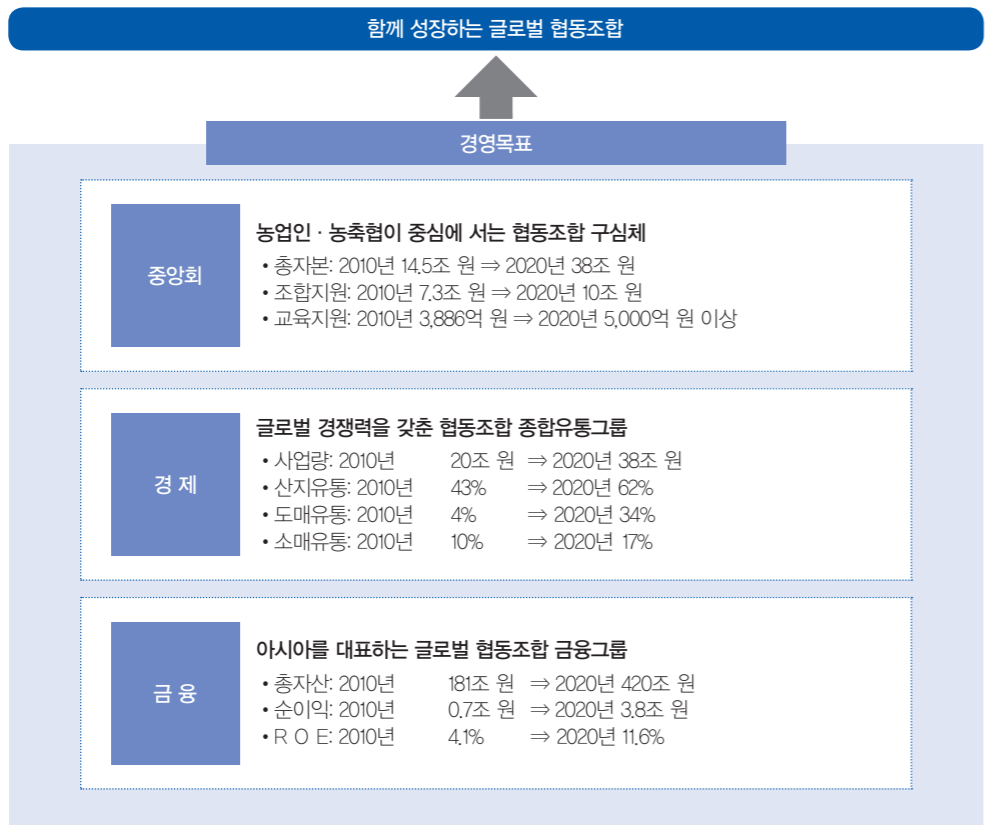
□ 50년 된 농협의 틀을 완전히 개혁하여 농협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동조합으로 재탄생 기대

2) 국민과 조합원에 대한 기대효과

경제사업-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소비자 가격 하락



□ 분산된 농협의 농축산물 출하 채널을 중앙회로 일원화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가 수취 가격 제고



- 농축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소비자 후생 증대
  - 중간유통상인이 편취했던 유통마진을 없애 소비자가 인하

신용사업-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 조합과 농업인에 환원

- 금융지주 수익 증가에 따라 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수입 증가
-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는 중앙회(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미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

**국내 은행 총자산/당기순이익 비교**

(2010.9 기준)

구분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총자산(조 원)	193	275	238	247	159	171
당기순이익(억 원)	2,066	2,303	14,547	9,196	7,169	10,482

〈참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내용 Q&A

Q1.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요?

- 협동조합인 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체제는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문제를 지님
  - ① 정치적 의사결정과 1조합 1표의 협동조합 특유의 평등주의 강조 등으로 인해 시장 원리에 따른 유통·판매사업 추진이 곤란
  - ②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투자 리스크가 있는 판매사업보다는 손쉬운 지도·지원 기능 수행을 선호
  - ③ 지도·지원 기능과 수익사업이 혼재, 성과평가 및 책임성 부여에 한계
- 협동조합의 단점을 보완하고,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경제지주를 도입
  - ① 1인 1표의 협동조합적 경영의 한계를 극복,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사업의 전문성·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② 중앙회의 지원 기능과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유통·판매사업이 지원·지도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
  - ③ 자회사 간 시너지 제고, 대규모·겸영의 장점을 활용, 농협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마케팅 능력 제고
- 해외선진국도 협동조합사업체의 단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분리하여 지주회사나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① 지주회사: 네덜란드 그리너리, 프랑스 소디알, 독일 바이바 등
  - ② 자회사 운영: 일본 전농(180여 개의 자회사), 뉴질랜드 제스프리, 덴마크 데니쉬 크라운 등

Q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체 영리 추구 및 반농업인적 경영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농협이 소유·지배하는 협동조합의 자회사임
  - 지주회사는 대형 유통업체와 같이 자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 조합과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
  - \* 지주회사 지배 수단: 대주주로서 이사회·주주총회 주도, 경영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 경영평가 및 감사 등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지주회사가 농업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하였음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회원의 농산물 등을 판매·가공·유통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토록 규정(제6조제2항 신설)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의무 부여(제134조의2제2항)
  -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자회사가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제142조의2)



Q3.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요?

- 사업구조 개편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로 전문성·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 사업구조 개편 취지(경제사업에 전념),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협의 중장기 발전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체제 도입
- 지주회사를 통해 협동조합이 갖는 사업 경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
  - 성장기반을 마련(신성장동력 확보)하고 영업이익률을 제고(고수익사업 발굴)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최선
  - 농협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음

**금융지주 설립현황**  
 농협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이 금융지주회사체제로 기 전환, 금융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2000.11 제도 도입)  
 \* 우리(2001.1), 신한(2001.9), 하나(2005.12), 국민(2008.9), SC제일(2009.6), 산은(2009.10), 기업, 시티 및 지방은행(대구, 부산) 등은 도입 추진 중

Q4. 신용사업이 별도법인으로 분리 시, 경제사업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나요?

-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경제사업 자금조달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① 중앙회 보유자본 배분에 있어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토록 하였음(부칙 제4조)
    - \* 중앙회는 보유자본의 30% 이상을 경제부문에 배분할 계획임을 밝힘
  - ② 농협은행 등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제159조의2), 교육지원사업비를 안정적(현행 수준)으로 확보토록 함
  - ③ 농협은행이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자금에 대해 우선 지원 및 우대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제134조의4제2~제4항)

**농협법 개정안 관련 조문**

제134조의4(농협은행)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2. 조합, 중앙회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9조의2(수입 등)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 (경제부문 자본배분 및 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추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최초의 보유자본 배분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업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Q5.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경제사업 경합문제는 없나요?

- 중앙회 주도의 사업이 회원조합과 경합, 회원조합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
  - \*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축산물 구매 단위가 커지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조합 단위의 판매사업 추진이 한계에 봉착
    - \* 농산물 소비시장에서의 대형마트 점유율: 1098년 6.5% → 2008년 15.4%
  - 읍·면조합으로는 소비지에서 원하는 규모의 물량공급이나 안전성 기준 충족 등 품질 관리 어려움
    - \* 1개 읍·면 단위 지역농협 54%(2008년, 987개소 중 534개소), 판매사 100억 원 미만 조합이 전체의 58%(713개소) 차지
- 소비자 시장변화에 따라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체계에도 변화가 필요
  - 대형 유통업체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연중 출하가 가능한 규모의 전국·광역 단위 공급망 구축이 시급
  - 개별 회원조합이 각각 독자적으로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회와 조합이 협력(조합: 수집, 중앙회: 판매)하여 계열화된 전국 단위 판매조직으로 전환이 요구됨
-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 전국 단위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농업인에게도 이득
  - 해외 협동조합 사례에서 보듯이 출하창구를 단일화하면 시장교섭력이 높아지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것이 가능해짐

## 2. 농림수산물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2008. 9. 18.  
 제공자 농림수산물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 성 재  
 사무관 송 태 복  
 전 화 500-1748  
 쪽 수 4P  
 별첨자료 있음

이 자료는 2008년 9월 1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일선조합, 중앙회 기능 확립 -

농림수산물부는 ①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② 조합원의 조합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③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일선조합-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판매 중심의 농협을 지향토록 하는 한편, 지난해 농업계와 정부가 합의하여 마련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농협 설립 구역을 확대하고 조합원에 조합선택권을 부여하였다.

- 현행 지역농협 설립 구역은 읍·면 단위(동일 구역 2이상 지역농협 설립 불가)로 되어 있어, 조합은 영세한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업 추진이 어렵고, 조합원은 주소·거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설립 구역을 시·군 단위(현행 읍·면 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범위 내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약정조합원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 조합원이 조합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합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에서 일반조합원보다 우대하도록 하였다.
- 조합원이 농산물을 조합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조합은 안정적으로 농산물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는 더 많은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일선조합 및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자회사 설립 등에 출자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선조합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현: 20% → 조정: 30%)하였으며,

-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사업 출자한도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현: 15% → 조정: 30%)하였다.

넷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일선조합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05년 도입한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에서 중앙회,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의결방식을 현행 '1조합 1표 방식'에서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참여 폭을 넓히고 책임경영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 중앙회의 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회원조합 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원의 출자회사'로 확대하여 중앙회와 일선조합 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앙회장 선거 등에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대리권을 보장하였다.

- 현재는 중앙회장 선거 시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조합에 동일하게 1표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중앙회 대의원수 배분기준 역시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시·군별 조합 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 이는 읍·면 단위 조합이 합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는 중앙회장 선거를 포함, 중앙회 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수에 기준하여 조합당 1~3표 행사
  - 중앙회 대의원 수 배정: 시·군당 조합 수 → 시·도당 조합원 수

여섯째,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다.

-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조화(견제와 균형)를 위해 조합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결과의 평가는 이사회(의장: 조합장)가 담당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은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이 전담하여 집행하는 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다.

일곱째, 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주요 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도록 하였다.

- 중앙회장이 비록 비상임이지만 장기간 재임할 경우(현재는 임기제한이 없음) 사실상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전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11월까지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2009. 1. 14.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 성 재
사무관	송 태 복
전 화	500-1748
쪽 수	5P
별첨자료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이 자료는 2009년 1월 14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운영구조와 선거제도 개선, 이사회 기능 강화 등 농업인 지원체계를 정비함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조합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해 왔으나, 농협개혁에 대한 농업계 및 국민 각계의 요구가 매우 커,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체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중앙회 및 조합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가 농협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앙회 관련 사항 »
  - 첫째,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하고 임기를 단임으로 하였다.
    -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을 위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임기는 단임으로 하였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럽과 일본 등 농업선진국들은 대부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서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직선제로 선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둘째, 이사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 주요 임원 등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회장의 단독 인사 추천권을 제한하였다.
    -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으나, 대표이사 등의 추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할 소지가 없지 않다.
    - 이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토록 하여 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 소지를 없앴으며,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목표 설정 및 업무성과 평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 평가, 임원 후보자 선임 등을 통해 집행임원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이사의 선출과정에서 회장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현재의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감사위원 중 일부가 회장의 단독 추천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집행부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이에 감사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통해 감사를 선임토록하여 전문성도 강화하였다.

다섯째, 우선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회원 외의 자'에서 '회원'도 포함하였다.

- 우선출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높고, 다른 출자에 비해 배당을 우선하나, 회원이 아닌 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자본금 확충에 애로가 있었다.
- 이에 중앙회 회원으로서 내부출자만 가능한 조합에 대해 우선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 확충에 기여토록 하였다.

#### « 일선조합 관련 사항 »

여섯째, 조합의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 일선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兼)하는 구조이며,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어 조합경영자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나, 선출직인 조합장은 조합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에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증진 등 대외활동을 담당하고,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비경제적 의사결정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규모가 큰 조합(자산 1,500억 원) 부터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일시에 모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대체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일곱째, 조합원에게 '도 단위'에서 지역농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지역농협 설립 구역은 읍·면 단위로 되어 있어 조합은 영세한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조합원은 주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져 경제적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행정구역과 경제권역이 다른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택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조합 간 지나친 경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여덟째, 조합장은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애·경사의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하였다.

- 조합장은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경사 참여 등을 통해 차기 선거에 다른 후보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애·경사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현직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과 애·경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 차단을 위해 조합장 임기 중에 조합비용을 이용한 조합장 개인명의로 애·경사 기부행위를 제한하였다.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2009. 4. 29.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과  
 과 장 홍 성 재  
 사무관 송 태 복  
 전 화 500-1748  
 쪽 수 4P  
 별첨자료 있음(3P)

이 자료는 2009년 4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농업인을 위한 농협' 만들기 위해 운영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역량강화 기반 마련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이 조합원 입장에서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6차례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 1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운영’과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협동 조합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일본 등도 앞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 별첨: 개정 농협법 주요 내용
- 한편,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그간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인사추천위원회제도 도입, 조합장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 외, 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약정조합원제 도입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합원(또는 조합)이 실질적인 협동조합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함
    -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사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함
  - 둘째, 임직원과 대의원이 조합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임직원은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조합에서 일정 규모의 사업이용실적이 있어야 가능함

- 셋째, 조합은 경제사업 조직으로서 사업체적 기업경영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 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를 현재의 읍·면 단위에서 시·군·구로 확대하고 배타적 업무구역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이 스스로 시·군·구 내에서 업무구역을 정할 수 있게 됨
  - 조합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약정조합원)을 사업이용이나 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품목조합이 도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도시조합의 자본·인력을 활용, 품목조합의 농산물을 판매 하고 도시조합은 판매농협이라는 정체성 유지 가능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중앙회와 농업법인으로 확대하고 출자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사업체 경영시스템을 도입함
- 넷째, 협동조합 원칙에 맞게 이사회가 중앙회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적이고 효율 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임원 후보자를 선임하고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이사의 기능을 강화함
  -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감사위원을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함
  -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비상임 취지에 맞게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의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농협법 개정안 논의 초기에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부문별로는 합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기된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모범사례로, 국회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칫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어려운 법안을 제대로 조정하였다”며 그 공을 국회로 돌렸다.
  -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 제출 개정안(2월 4일 국회 제출)에 대해 공청회, 지역 토론회 등을 거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강기갑 의원안(2.11), 조배숙 의원안(3.23), 이성현 의원안(3.27)을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1월 초 예정)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시행규칙과 정관은 일선조합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보도자료

제공일 2009. 6. 5.  
 제공자 농림수산물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 태 현  
 사무관 송 태 복  
 전 화 500-1749  
 쪽 수 3P  
 별첨자료 개정 농협법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 공포안 서명

-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개정법률안 대통령 서명 후 공포 예정 -

-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6월 8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농림수산물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조합장 대표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농협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참석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특히, “최원병 회장에게는 조합장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끝까지 애써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 더불어, 대통령께서는 “금번 농협법 개정은 농업계와 정부, 여야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한 모범적 사례로 무엇보다 합의를 통해 쟁점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 “현재 추진 중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작업도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농협개혁을 완성하여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농업계가 더욱 분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금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비리, 직원들의 이권 개입문제 등으로 농협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4일 가락동 농수산물새벽시장 방문 시 농협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농민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농협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법 개정에 탄력을 받았다.
- 정부는, 농협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농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로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08.12.9)하여 보다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착수하였고,
  - 「농업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09.1.12)하여, 입법예고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다.
  -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 3월 23일 개최 예정이던 농식품위 법안소위도 일부 야당의 신·경 분리 연계 주장으로 심의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 그러나, 국회 농식품위에 「농업개혁위원회」의 신·경 분리 추진방안 보고(4.1)를 계기로 법안심의 재개 여건이 조성되면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4.29)되었다.

- 오늘 대통령이 서명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보게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6.10 예상)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정관은 일선조합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 보도자료

제공일 2009. 10. 27.  
 제공자 농림수산물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 태 현  
 사무관 송 태 복  
 전 화 500-1749  
 쪽 수 4P  
 별첨자료 있음(17P)

이 자료는 2009년 10월 27일 18: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현 농협중앙회를 1연합회(농협연합회)-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자회사 체제로 개편 -

- 농림수산물부는 지난 6월 9일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 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8일(수)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 첫째,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함
  - 둘째,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여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함
  - 셋째,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하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농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은 ① 조합과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 ② 농협경제와 축산경제 간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③ 상호금융을 단계적으로 독립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①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및 조합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하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농협연합회가 상호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호사용료는 조합·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사업, 농기계은행, 산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비수익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 ② 농협연합회에 축산부문 상임이사를 두어 축산 관련 지원업무와 정부대행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고, NH경제에 부대표별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 간 업무협조와 사업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NH경제 축산부대표 선출 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축산조합장을 4명으로 하여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어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

토록 하였다.

- 향후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연구용역(법 시행 후 1년 이내)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 그 밖에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연합회 내 사업부문별(교육·지원, 농업경제, 축산경제) 대표이사체제를 상임이사체제로 전환하였다. 농협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주요 업무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둘째,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따른 세제 감면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는 등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되고,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협연합회는 협동조합의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조합이 농협연합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며, NH금융·경제 등의 상호사용료 및 배당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 지원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NH경제는 개별 자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총괄·조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식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등으로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 NH금융은 자본 확충, 전문성 제고와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일반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창출로 농협연합회의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조합과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10.28~11.17)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 설명자료 1부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 보도자료

제공일 2009. 12. 15.  
 제공자 농림수산물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 태 현  
 사무관 이 시 혜  
 전 화 500-1742  
 쪽 수 3P  
 별첨자료 1건

이 자료는 **12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2.15(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 ① 상호사용료를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법안 제159조의2제2항)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매출액,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
  - 부과율 상향에 따라 연합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② 중앙회 내 사업구조 개편 준비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부칙 제2조제2항·제3항)
  - 연합회로의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인 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 개편 준비위원회를 설치
  - 자본금 배분, 조직·인력 개편, 경제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 사업구조 개편 준비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협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③ 조합 신용사업 업무영역 확대(법안 제57조제1항)
  -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의 판매대행 업무를 조합사업으로 명시
  - 조합 제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일선조합의 농업인 이용 편의가 제고되고, 조합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④ 보험사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로서의 특례 축소·조정(법안 제134조의5, 부칙 제10조)
  -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간 유예(1사 상품 25% 판매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입법예고일(09.10.28) 현재 판매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판매를 허가하고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 제한

- 입법예고일 현재 공제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 2년간 보험 모집 자격 인정 등

-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관련, 차관회의(12.3) 전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제사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차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차관회의 이후 농협이 보험사 설립을 강하게 희망하고 이사회 논의(12.11)를 거쳐 관계부처 간 협의된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 조건(농협은행과 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의제 및 방카슈랑스 5년 유예 등)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무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음

- 농림수산물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금년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별첨〉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설명자료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2011. 3. 11.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 태 현  
 담당자 이시혜, 최봉순, 박종신, 변혜중  
 전 화 500-1749~53  
 쪽 수 4매  
 별첨자료 1건

이 자료는 2011년 3월 11일 국회 통과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년 만에 숙원 해결’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농협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어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3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농협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신·경 분리)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또한 “금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09년 12월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국회는 1년여의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사업 분리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경제·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 조합장 동시 선거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분리방식(§134의2 및 §134의3 신설)

-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2012.3.2 신설 법인 발족)함
- 중앙회와 기존 경제부문 자회사를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분리되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과 기존 신용부문 자회사로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
- 중앙회가 신설되는 지주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출자자로서 협동조합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함

#### ② 경제사업 활성화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 사업목표로 규정하고, 전문 판매조직과 시설 등을 확보토록 함(§6②, §135의2①)
-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135의2②)
- 중앙회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함(부칙 §5)
- 중앙회에 조합 및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계획, 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편입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추진 의무를 부과함(부칙 §5)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 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함(부칙§4)
- 농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앙회의 판매활성화사업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135의3)

#### ③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

-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 농협은행은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전문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함(§134의4)
-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고, 입법예고일(’09.10.28) 현재 공제종목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허가 의제,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정 5년간 적용 유예 등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135의5, 부칙 §14)

#### ④ 명칭사용료제도 도입(제159조의2 신설)

- 회원 및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⑤ 정부 지원(부칙 §3)

- 중앙회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법 공포 후 관계부처협의체를 구성,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고, ’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 ⑥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부칙 §11)

-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로 조정하고, 최초 동시 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15.3.11)에 실시토록 하여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관리 및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토록 함

- 금번 개정된 농협법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사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조세, 자본금, 보험 등 구조개편 관련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 농협법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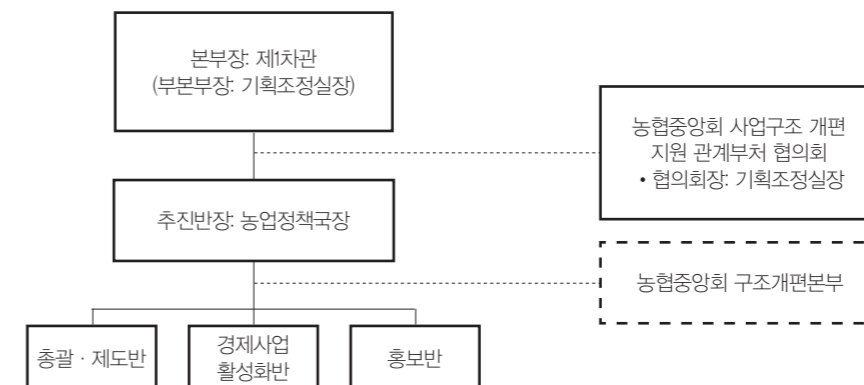
제공일	2011. 3. 30.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남태현
사무관	최봉순
전화	500-1749
쪽수	2P
별첨자료	있음(1P)

이 자료는 2011년 3월 31일 석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본부 가동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월 31일(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현판식(10:30)을 가졌다.
  - 동 지원본부는 지난 3월 1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3.31 공포)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은 현 중앙회의 사업구조를 1중앙회-2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12년 3월 2일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부족자본 지원, 조세 지원 등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본부는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등 농림수산식품부 내 관련 부서, 관계부처 공무원, 농협중앙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관계부처 협의회, 작업반 3개, 20여 명)하여 '12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 지원본부 내 작업반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하위 법령 정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홍보, 사업구조 개편 관련 각종 연구용역(자산실사, 경제사업 활성화 등) 추진사항 점검 등을 담당하고,
  -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부족자본 지원, 조세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본부 구성〉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2011. 7. 22.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 태 현  
 사무관 정 아 름  
 전 화 500-1748 / 1750  
 쪽 수 3P  
 별첨자료 있음(1P)

이 자료는 2011년 7월 2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2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주요 내용〉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항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신설 및 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확대 및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신설 등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사항
  - 조합·경제지주 등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내용,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사항,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동 기간 중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11.3.31 공포, 2012.3.2. 시행)의 후속 조치로서,
  - 현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 및 농협보험 포함))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개정 농협법에서 새로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제12조).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제15조의4 및 별표4),
  -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제46조).

-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제9조의2),
  -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
    - \* 선거운동의 종류(농협법 제50조4항):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 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을 정하였다(제18조).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확정될 계획이며,
  - '12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그 밖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2011. 9. 21.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 범 수  
 사무관 최 봉 순  
 전 화 500-1749  
 쪽 수 2P  
 별첨자료 있음

이 자료는 2011년 9월 21일 국회 상임위(잡정 14시) 시작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 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 정부지원규모 4조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향후 안정적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수준 확보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농협법 개정에 따른 성공적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협법 개정으로 인해 현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어, 법인별로 자본금이 필요하고,
-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농협이 판매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 지원은 필수적임
- \* 개정된 농협법에서도 정부에서 부족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

- 농협에서 지난 7월 29일 자산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농협은행·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 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조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 농협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하였음
- 또한,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주고 잘 팔아주는 판매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내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별첨: 9.21(수) 국회 상임위 보고자료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 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 보도자료

제공일 2012. 4. 27.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 범 수  
 사무관 안 종 현  
 전 화 500-1749  
 쪽 수 3P  
 별첨자료 있음(6P)

이 자료는 2012년 4월 3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본격 시동

- 농식품부장관 직속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구성 및 활동 시작 -

#### 〈 주요 내용 〉

-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장관 직속으로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구성 및 활동 시작
  -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농식품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농업인단체,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농축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종사 경력자, 농협중앙회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전문가들이 참여
  - 앞으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
- ◇ 4월 27일 농식품부에서 제1차 회의 개최
  - 향후 운영방안 및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1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한 4.96조 원의 신규투자 등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검토
  - 6월 초에 열릴 제2차 회의에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다시 논의 예정

□ 농협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가 농식품부장관 직속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농식품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농축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종사 경력자, 농협중앙회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협의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자문을 하게 된다.
- 농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농협중앙회 이사회,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에게 경영지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각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4월 27일 경기도 과천 농식품부 청사에서는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및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농협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활성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문성과 식견뿐 아니라 농민과 농업에 대한 애정도 함께 갖고 활동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아울러 농협중앙회에는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다.
- 농협중앙회는 이날 협의회에 제출한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약 54%를 책임 판매하여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를 정착시키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청과, 양곡, 축산 등 분야별로 총 4조 9,592억 원의 신규 투자를 하여 유통, 판매시설 등을 확충하고, 경제사업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지도와 지원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원들은 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뿐 아니라 기존 정책사업과의 중복 여부, 일선조합사업과의 경합 여부 등도 세부추진계획 마련 시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 분야별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은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농협중앙회에서 5월 중에 마련한 후 6월 초에 개최될 제2차 협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 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보도자료**

제공일	2012. 5. 30.
제공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 범 수
사무관	홍 인 기
전 화	500-1742
쪽 수	3P
별첨자료	없음

이 자료는 2012년 5월 3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 체결

- 정부는 지원기간·규모 약속,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 이행계획 수립·추진 -

### 〈 주요 내용 〉

- ◇ 5월 29일 농식품부-농협중앙회 간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
- 농협중앙회는 다섯 가지 약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사업구조 개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
  - \* ①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② 경영 효율화, ③ 자체자본 확충, ④ 조합지원사업 개선, ⑤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추진
- 농식품부는 지원기간 및 규모를 약속(5년간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약 8천억 원)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여부 점검
- ◇ 노조 설득 등 농협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향후에도 정부는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29일(화)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이행약정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업 실시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 농협의 경우는 통상의 절차대로 사업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감독하게 되면 보조금이 투입된 농협의 개별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관리하게 되어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이행약정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 이행약정서 방식은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한편, 농협은 정부지원 기간 및 규모를 약속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행약정서에는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행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주로 담았다.
  - 농협중앙회는 ① 경제·교육지원 등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② 경영 효율화, ③ 자체자본 확충, ④ 조합 지원사업 개선, ⑤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다섯 가지 약정사항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약속하고,

○ 반면,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천억 원)하되, 농협이 스스로 마련한 사업구조 개편 세부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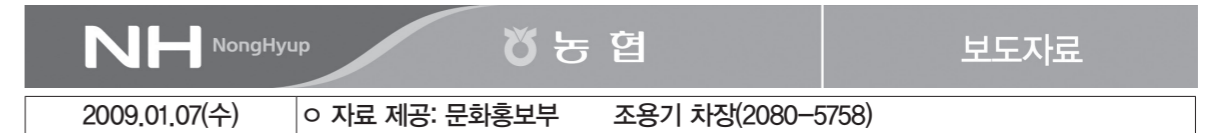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초부터 이행약정서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자율성 침해 우려를 제기한 인사, 조직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다고 하면서,  
○ 농협중앙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거쳐 노조를 최대한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농협의 공식의견으로 약정서 체결 의사를 밝혀줌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 라고 밝혔다.

□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조조직인 농협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농업인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이익을 주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협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농협법(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3. 농협중앙회

#### 3.1.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회장 단임제, 사업대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중앙회 감사기구 독립 강화 등 개혁의지 천명

농협은(회장 최원병) 7일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드리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원병 회장은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240만 농업인 조합원과 농협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드리게 되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 농협시스템의 일대 혁신

먼저, 중앙회장의 권한을 비롯한 중앙회 지배구조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회장 임기 단임제’와 ‘인사추천위원회’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중앙회 감사기구는 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토록하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중앙회장의 선출방법도 선거과정의 과열, 상호비방, 민원 등 조직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직선제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조합 지배구조도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경제권료·생활권 중심의 계획합병을 적극 추진하여 규모화하는 방안 등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분리는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조직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 □ 고강도 구조조정 성과 농업인에게

농협은 중앙회와 조합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를 모두 농업인에게 돌려주어 농업인이 주인되는 농협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 지원되고 있는 무이자 자금 6조 9천억 원도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농업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무인헬기 500대 지원(총 500억 원 투입)을 통한 공동방제 실시로 부족한 농가일손을 털어주고, 2011년까지 총 1,500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 자녀 기숙사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농업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료·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농기계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정부 쌀 수매량 감축에 따른 벼 매입자금(08년 1조 3천억 원)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 농산물 유통만큼은 농협이

우선, 금년 상반기 중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2천억 원을 즉각 투입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한다.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산자 조직인 '출하협약에 의한 공동계산 실천조직(2012년까지 600개)'과 '축종별 핵심농가(2012년까지 10,000 농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대도시 대형매장(2012년까지 38개소), 중소형 하나로마트(2012년까지 350개소) 등 직거래유통망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농업인의 실익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 수출확대에도 적극 나서, 공동선별장을 갖춘 대단위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절반을 농협이 담당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날 발표한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2~3월 중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2. 농협중앙회, '비상경영개혁위원회' 설치·운영

 		
2009.01.15(목)	○ 내용 문의: 구조개혁추진단 장병일 차장(2080-5474) ○ 자료 제공: 문화홍보부 조용기 차장(2080-5758)	

7일 발표한 자체개혁방안 추진 및 점검 비상경영체제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 농협은 지난 7일, 최원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농협 자체개혁방안'의 후속 업무 추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위기에 전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영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비상경영개혁위원회는 1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개혁추진 및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의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교육지원 등 4개 사업부문 기획담당 상무와 주요 부서장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검토 및 추진을 담당할 실무팀장으로 구성된 '비상경영개혁실무협의회'가 가동된다.

□ 농협은 이번에 설치하는 '비상경영개혁위원회'가 농업인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농협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 따른 경영위기상황을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3.3.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박차'

2009.8.26 (수)

쪽 수 : 6P (본문 1, 붙임 5)

자료 제공 : 문화홍보부 맹석인 차장

Tel. (02)2080-5759

내용 문의 : 구조개혁추진단 장병일 차장

Tel. (02)2080-5473

보도자료

NH NongHyup

농협

- 농협은 대내외 환경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농협은 본격적인 농협안 마련을 위해 농협 임직원, 조합장, 농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단위 '도별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사업구조 개편 위원회가 구성되면 ▲'09년 9월 중 초안을 마련,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농민단체 등 외부 토론회를 실시한 후 ▲11월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총회에서 농협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이는 지난 '07년 정부가 농협, 농민단체 등 범농업계와 합의해 마련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관한 일정과 계획을 단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농협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이다.
- 농협관계자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농업·농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대한 사안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도모 및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4. 농협,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사업구조 개편 논의 본격 가동

2009.9.2 (수)

쪽 수 : 2P (본문 1, 붙임 1)

자료 제공 : 문화홍보부 맹석인 차장

Tel. (02)2080-5759

내용 문의 : 구조개혁추진단 장병일 차장

Tel. (02)2080-5473

보도자료

NH NongHyup

농협

-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를 9월 1일(화) 출범시켰다.
-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는 이덕수 농업경제대표이사과 최덕규 조합장(합천 가야농협)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농협 노조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대표(7명) ▲조합장(7명) ▲학계·농민단체 등 외부인사(1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 위원회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협안 수립, 조정, 심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 지역본부별 '도별협의회'가 동시에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농협은 지난 8월 26일 정기 이사회에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9월 중 '중앙위원회' 및 '도별협의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11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3.5.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

2009.10.21 (수)

쪽 수 : 55P (본문 1, 붙임 54)

자료 제공 : 문화홍보부 맹석인 차장

Tel. (02)2080-5759

내용 문의 : 구조개혁추진단 신종현 팀장

Tel. (02)2080-5476

김동석 차장

(02)2080-5477

보도자료

NH NongHyup

농협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붙임: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 1부  
 2. 사업구조 개편 관련 농협법 개정 및 조세 특례사항 1부  
 3. 사업구조 개편 문답자료 1부

### 3.6. 농협 공제사업 특례 유지 강력 요구

- 농협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

NH NongHyup		농협	보도자료
2009.11.23(월)	○ 내용 문의 : 구조개혁추진단 장병일 차장(2080-5473) ○ 자료 제공 : 문화홍보부 맹석인 차장(2080-5759)		

-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이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협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는 '09년 11월 23일(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입장 반영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경제지주의 순차적 분리, 상호금융 별도법인화 부칙 삭제, 자본금 지원근거 명시, 조세 및 보험특례 규정 등 주요 쟁점에 농협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점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있었다.
  - 대책위원 대표들은 회의 종료 후 농식품부장관을 면담하고 농협 대의원회에서 마련한 농협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표명과 당사자인 농협의 자율적인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특히 민간 보험회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공제사업 특례와 관련하여 농협은 그동안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수행해 온 공제사업의 특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재벌회사들의 이권만 강화되고 농협사업은 오히려 축소되어 농업인 조합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따라서 농협 조합장들은 회원조합에 현재의 사업방식과 사업실적이 현행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속보험대리점 인정이 절대 필요하며 금융지주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허용하고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간 유예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 ※ 농협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 위원들의 농식품부장관 면담은 금일(11.23)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제3장

## 농협개혁 일지

# 제3장

## 농협개혁 일지

### 1. 통합 추진 일지

일 자	정부, 농협	국회, 언론, 농민단체 등
'08.2.14.	- 농협, 조합장 중심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08.3.24	- 농협, 외부인사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발족	
'08.4.23		-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제1차 농협개혁포럼
'08.5.16		-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제2차 농협개혁포럼
'08.6.26		-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제3차 농협개혁포럼
'08.9.19	- 정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08.11.6	-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 공청회 개최	
'08.11.13		-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향 토론회
'08.11.20		-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주관 공청회
'08.12.4	- 이명박 대통령, 가락시장 방문, 돈 장사에 빠진 농협 질타 발언	
'09.1.6		- KREI, 농협지배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09.1.7	- 농협, 농협개혁 방안 발표	
'09.1.9	- 정부 농협개혁위원회, 농협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09.1.12		-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국민농업포럼, 농수협개혁 방안 세미나 개최
'09.2.5		-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제4차 농협개혁포럼 겸 2009년 농협개혁 국민 대토론회 개최
'09.3.4		-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35인) · 농민연합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공동 주최,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인 전국 순회토론회」 국회보고회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토론회
'09.3.27	- 농개위 위원장 초청,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 설명회 겸 간담회	
'09.3.31	- 정부 농협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방안' 발표	
'09.4.29	-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배구조 개편 관련)	
'09.5.14		-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공동 주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9.5.27	- 농식품부 · KREI, 농협중앙회 신용 · 경제사업 분리방안 토론회	
'09.6.8	- 청와대, 농협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공포를 위한 서명식	
'09.6.12	- 농협 · 농식품부, 간부 간담회	
'09.6.18	- 농협 구조개혁추진단, 농협중앙회 이사회 워크숍 신·경 분리 실무초안 설명	

일 자	정부, 농협	국회, 언론, 농민단체 등
'09.7.8	- 농협중앙회, 자체 신·경 분리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조합장 및 도시군 관계자에 대한 비공개 순회토론회 개최 시작	
'09.7.15 ~28	- 정부 농협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 설명회 개최	
'09.9.1	- 농협, 사업구조개편중앙위원회 구성	
'09.9.8	- 농협, 사업구조개편위원회 2차 회의	
'09.9.16 ~17	- 농협, 사업구조개편위원회 3, 4차 회의	
'09.9.20~		- 한국경제 등, 농개위안을 뒤집는 농협안 보도 - 중앙 · 조선 등, 농협중앙회 노조의 신·경 분리 반대 신문광고 게재
'09.9.25	- 농협, 사업구조개편위원회 5차 회의	- 농단협, '농협중앙회의 반농민적 농협개악음모 분쇄하자'는 성명서 발표
'09.9.28		- 한농연, '농협 자체사업구조 개편방안' 성명서 발표
'09.9.29	- 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 (농민단체 항의로 무산)	
'09.10.1		- 한농연, '350만 농민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신·경 분리 불가'를 강변하는 농협중앙회 노조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 발표
'09.10.5		- 국회, 국정감사 시작
'09.10.13		- KREI, 농협사업구조 개편 토론회 개최
'09.10.27	- 농협, 신·경 분리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총회 - 정부 농협개혁위원회, 농협개혁위원회 해산 결의 발표 (김원배 위원장)	- 농민단체, '반농민적 농협개악음모 분쇄 기자회견문' 항의 집회
'09.10.28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9.11.12	-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공청회	
'09.11.13		-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제5차 농협개혁포럼 겸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출범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이 한농연, 농단협과 같이 출범)
'09.12.15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경제 · 신용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성명서
'10.2.3		- 국회의원 모임 · 농민연합 ·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공동 주최, (토론회)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10.2.11		- 최양부 대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
'10.2.19		-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 김춘진 의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정책 토론회 및 제7차 농협개혁포럼
'10.11.15		-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출범 3주년 기념 만찬 간담회 및 성명서 발표
'11.3.11		-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3.29	- 청와대, 농협법 개정안 공포안 대통령 서명	
'11.3.31	- 농협법 개정안 공포 - 정부,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 개소	
'11.6.14		- 제8차 바른농협개혁포럼



## 2. 정부 농협개혁위원회 활동실적

구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1차	'08.12.9	- 민간위원장 선임, 개혁위 논의방향 및 범위 설정
제2차	'08.12.14 ~ 15	- 논의과제 선정(22과제), 일선조합 관련 과제 검토
제3차	'08.12.21	- 중앙회 지배구조 과제 검토
제4차	'08.12.27	- 경제사업 활성화 과제 검토
제5차	'09.1.3	- 전반적인 논의과제 재검토
제6차	'09.1.8	- 중앙회 및 조합 지배구조 및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개혁방안 확정
제7차	'09.1.11	- 중앙회 신·경 분리방안 검토
제8차	'09.1.15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제9차	'09.1.29	- 신·경 분리 추진방향 및 경제사업 관련 해외 협동조합 사례 검토
제10차	'09.2.6	- 신·경 분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검토
제11차	'09.2.11	-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모델에 대한 검토
제12차	'09.2.17	-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모델에 대한 재검토
제13차	'09.2.28	- 신·경 분리 모델의 장단점 분석
제14차	'09.3.16	-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 잠정안 마련
제15차	'09.3.28	-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에 대한 정부건의안 확정 * '농협개혁위원회'가 건의(3.31)한 신·경 분리방안을 국회 농식품위·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세부추진방안 협의(4.1)
제16차	'09.5.30	-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 구체화 검토
제17차	'09.8.27	-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검토

## 3. 농협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3.1.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성진근(한국농업경제포럼 이사장)

□ 위 원: 농민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조합장 등 18명

구분	농민단체	학 계	소비자단체	조합장	농협중앙회	계
인 원	5	5	2	5	1	18
위 원	박의규 한도숙 윤요근 김동환 김귀숙	성진근 김정주 이만우 양승룡 박성재	김재욱 박정희	조성열 최계조 이규삼 홍성권 문병완	서인석	

### 3.2. 농협개혁위원회 운영실적

□ 운영 원칙

○ 효율적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와 전체 개혁위원회로 구분하여 과제 선정 및 토의

○ 과제는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권고과제로 분류

○ 개혁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개혁방안 도출

〈과제분류 기준〉

- 단기과제: 1~2년 내에 완료할 과제
- 중장기과제: 3~5년 내에 완료할 과제
- 권고과제: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할 과제

□ 전체위원회 개최: 7회

구분	일 시	장 소	주요 내용
1차	'08.3.24	중회의실	-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 - 임원단 선출 및 헌판식 - 운영규정 상정 및 의결
2차	'08.4.11	중회의실	- 각계의 농협개혁과제(안) 발표 및 토론
3차	'08.4.28	중회의실	- 농협개혁과제(안) 의견수렴 및 토의 - 소위원회 구성(3개 소위원회)
4차	'08.6.17	중회의실	- 소위원회 추진경과 보고 - 소위원회별 토의내용 발표 및 토의
5차	'08.6.25	중회의실	- 소위원회 상정과제 토의 및 확정
6차	'08.7.1	화상회의실	- 소위원회 상정과제 토의 및 확정
7차	'08.7.10	화상회의실	- 소위원회 상정과제 토의 및 확정

□ 소위원회 개최: 10회

구분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양승룡 교수	김정주 교수
위원	김동환 한도숙 박정희 조성열 홍성권	성진근 김귀숙 김재욱 문병완 이규삼	박의규 윤요근 이만우 최계조
논의 분야	조직 구조조정	사업혁신과 재편	지배구조 개선
회의 개최	1차 '08.5.13	'08.5.9	'08.5.6
	2차 '08.5.19	'08.5.23	'08.5.30
	3차 '08.5.27	'08.5.30	'08.6.4
	4차 -	-	'08.6.9

#### 4. 농협법 개정안 국회 논의 경과

일 자	내 용
'09.12.16	농협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10.2.11	국회 농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10.2.22	농협법 개정안 농식품위 상정·대체 토론
'10.2.23 ~4.22	농식품위 법률안 심사소위 개최
'10.2.23	농협법 등 6개 법안 상정
'10.2.24	조합 선거제도 관련 개정사항 심사
'10.4.14	비쟁점 사안 12건 심사 및 합의 (조합선거제도, 부과금 면제, 농금채 발행, 전산특례 등)
'10.4.19	축산특례 및 사업분리 방식 심사
'10.4.22	사업분리 방식 심사 및 표결 처리 (1연합회-2지주회사 방식 확정)
'10.4.27	국회 정무위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10.6.18	제18대 후반기 국회 원 재구성 - 최인기(민주당) 위원장 등 7명 교체 * 신임 위원: 윤영·성윤환·진수희(한나라), 최인기·강봉균·김효석(민주), 송훈석(무소속)
'10.9	상임위 현안보고 시 농협법 개정 관련 질의 - 심의에 앞서 자본금 지원, 조세 특례, 보험 등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 농협 등과 합의 필요 지적
'10.12.6	농식품위 법률안 심사소위 개최 - 35개 항목에 전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 28개 항목 합의, 7개 항목은 계속 심의하기로 함
'11.3.3	법안소위, 여야 합의 의결
'11.3.4	농림수산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
'11.3.10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1.3.11	본회의 통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 제4장

## 언론 보도 목록



# 제4장

## 언론 보도 목록

### 1. 중앙일간지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08.12.4	사 설	국민일보	농협 비리 뿌리째 뽑아내야
'08.12.6		한국일보	농협개혁 시늬만 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농협 대수술 않고 개혁정부가 할 수 없다
		서울신문	비리 공룡농협 이침에 뜰어 고쳐라
'08.12.9	기 획	세계일보	[농협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상] 제왕적 회장이 문제다. 무소불위 권한 견제 장치 없어
'08.12.29	사 설	농민신문	[기고-양승룡] 정부 농협개혁위원회에 바란다
'08.12.30		문화일보	농협, 국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해야
'09.1.8	사 설	한국일보	농협 자율개혁 이번엔 제대로 되는 건가
'09.1.9	기 획	동아일보	[기자의 눈/조은아] 조합 통폐합 얼버무린 '농협개혁안'
'09.1.15		국민일보	[현장기자 - 이상규] 농식품부장관의 '농협 고민'
'09.2.17		동아일보	[기자의 눈/조은아] 농협개혁, 또 국회서 제동 걸리나
'09.2.19		동아일보	[단독] 농식품부, 농협 신용부문 추가 감사
'09.2.23	사 설	농민신문	[시론 - 양승룡] 농협 신·경 분리를 생각한다
'09.3.31	기 획	연합뉴스	[그래픽]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
'09.4.1	사 설	세계일보	밑그림 그린 농협개혁, 질질 끌어서 안 된다
'09.4.2		동아일보	농협유착 국회의원들 농협개혁 방해 말라
'09.6.8		매일경제	信經 분리 미뤄놓은 반쪽짜리 농협개혁
'09.6.9		매일경제	信經 분리 8년 늦추겠다는 농협 발상 말이 되나
'09.6.9		서울신문	농협개혁안이 더욱 빛나는 이유
'09.10.6		한국일보	농협개혁, 기득권 유착부터 끊어야
'09.10.7		동아일보	대통령의 '농협 질책' 이후 10개월
'09.10.8		국민일보	농협 信 - 經 분리 수혜자는 농민이어야
'10.1.21	사 설	한국경제	농협 비판만 말고 애정도...
'10.2.12		동아일보	[기고/윤창현] 농협 구조개혁, 정부와 해결할 문제 많다
'10.2.24		한국경제	[취재여록] 8년째 제자리걸음 농협개혁
'10.4.5	기 획	서울신문	[정책진단] 농협법 4월국회 통과할까 농협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개최 합의... 통과 급물살
'10.6.2	사 설	국민일보	[시론 - 노재선] 농협 信·經 분리 늦출 이유없다
'10.9.11	기 획	서울신문	[정기국회 현안진단 ②경제분야] SSM 규제 '상생법' 팽팽 농협법 개정안 격돌 예상
'10.11.4	사 설	서울경제	[기고/11월5일] 15년 숙원, 농협개혁
'10.11.16		경도신문	농협이 保險業 진출허용
'10.12.2		세계일보	[기고] 농협법 개정 표류... 농산물 유통개혁은 언제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10.12.5	사 설	매일경제	대통령이 촉구한 농협개혁법 왜 미적대나	
		국민일보	농협법 처리, 더는 미루면 안 된다	
'10.12.6		국민일보	농협법 처리, 더는 미루면 안 된다	
'10.12.10		파이낸셜뉴스	[현장클리] 농협법 개정안 무산유감/김주형기자	
'10.12.23		경기일보	농어업 관련법 개정안 거부 결정 빨리해라	
'11.1.20		매일경제	[기고] 농협개혁,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11.1.27	기 고	내일신문	농협 구조개편 서둘러야 한다	
'11.2.7	사 설	동아일보	[시론/노재선] 농협법 개정안 2월 국회서 처리를	
		대전일보	농협중앙회 구조개편, 국회 결단 필요	
'11.2.14		내일신문	[내일의 눈] 농협법은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11.2.23		헤럴드경제	농협법 개정 2월 국회서 꼭 처리하라	
'11.2.28		아시아경제	[기자수첩] 농협개혁 최선인 이유	
		중앙일보	[비즈칼럼] 농협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건가	
		매일경제	信經 분리 농협법 개정 3월 국회서 꼭 처리를	
'11.3.2		한국경제	농협법 개정안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서울경제	농협법 개정안 입법이 시급한 이유	
		조선일보	[편집자에게] 돈 장사 치중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안돼	
'11.3.5	사 설	한겨레	농협개혁, 농민 위해 거듭나는 계기돼야	
		한국일보	창립 반세기만의 농협 대개혁 입법	
'11.3.7		파이낸셜뉴스	농협 경제사업의 방향/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1.3.11		아시아경제	농협개혁 경제사업 자립이 관건	
		동아일보	[시론/양승룡] 농협개혁, 이제 시작일 뿐이다	
'11.3.14		기 획	뉴스스	농협법 국회통과... 현직 조합장은 이득, 차기는 손해
'11.3.20		한겨레신문	[기고] 농협중앙회 개혁, 이대로 좌초하는가/박진도	
'11.3.22		매일신문	[푸른농촌희망찾기] 농협법 개정으로 새로 태어나는 '新농협'	
'11.3.31		경인일보	농협개혁,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11.4.4		사 설	경인일보	농협법 개정 사각지대 재고돼야
'11.4.7	경북일보		농협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11.4.12	경북일보		농촌경제와 농협개혁	
'11.4.13	경북일보		농협의 환골탈태	
'11.4.27	경북일보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11.12.21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농협법 재개정해야 하는 이유	
'12.1.1	한국경제		[2012세법·예산] 농협개혁에 1조 더... 5조 투입	
'12.2.1	문화일보		[농협 신경분리 한달 앞으로] 부족자본금 조달 '안 풀리네'	
'12.2.28	기 획		문화일보	[농협 사업구조 개편 D-3]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 새 출발 [농협 사업구조 개편 D-3] 농식품부 'MB정부 최대 農政성과는 농협개혁'
'12.3.1			서울경제	[농협 지주회사 체제 출범] 보험업계도 지각변동 예고 [농협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은행·보험·증권 등 7개 자회사 보유... 업계 빅5로 부상
		한국경제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생보 '빅3' 위험... 손보는 중소기업 M&A說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농축산물 유통 3단계로 축소... '판매 농협' 거듭나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소통·권한 분산'으로 새 출범 농협 안착시킬 것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자산 240조·생산자 245만 명 '금융·유통 대기업' 등장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지역조합 임직원 위한 MBA 개설... 年 3만 명 금융전문가 길러낼 것"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족쇄' 풀린 농협은행... 수도권 점포 확대·해외진출 박차	
'12.3.1		사 설	경향신문	[마감후] 공룡 농협의 탄생
'12.3.2			매일경제	농협, 빅4 금융그룹과 경쟁 못 하면 길 없다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12.3.3	사 설	경향신문	신·경 분리 농협 '농민의 농협' 되려면 갈 길 멀다
'12.3.3		동아일보	농협, 5대 금융지주와 제대로 경쟁해 보라
'12.3.5		한국일보	새 출발 농협에도 여전한 금감원 낙하산
'12.3.5		중앙일보	새 농협은 농민만 바라보고 가라
'12.3.22		서울신문	[50년 만의 신용·경제 분리 - 新농협개혁과 과제] (상)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12.3.28	기 획	세계일보	[50년 만의 신용·경제 분리 - 新농협개혁과 과제] (중) 김수공 농업경제대표이사 인터뷰
'12.3.28			[NH금융 출범①] 금융권 태풍의 눈
'12.3.28			[NH금융 출범②] 농협은행...공룡 탄생
'12.3.30			[NH금융 출범③] 농협보험...막강채널
'12.4.3		[NH금융 출범④] NH농협증권...괄목상대	
'12.4.4		서울신문	[50년 만의 신용·경제 분리 - 新농협개혁과 과제] 농협, 풀어야 할 과제는
'12.4.4		서울신문	[50년 만의 신용·경제 분리 - 新농협개혁과 과제] (하) 신중식 농협금융회장의 비전
'12.4.6		세계일보	[NH금융 출범⑥] 농협카드...전국망 강점

## 2. 전문지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08.3.31	사 설	농수축산신문	농협 앞날 좌우할 농협개혁위원회
'08.7.28		농수축산신문	[금요칼럼] 농협은 왜 개혁을 부르짖는가
'08.9.22		농민신문	누구를 위한 농협개혁인가
'08.9.22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추진해야
'08.9.25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의 '본질'
'08.11.10		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에 조합원의 목소리가 없다
'08.11.17		한국농어민신문	조합원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을
'08.11.24		농수축산신문	[기고] 농협법 개정에 농민의견 최대한 반영해야
'08.12.11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위원회를 주목한다
'08.12.22		한국농어민신문	농협지배구조 개혁의 '해법'
'08.12.25		한국농어민신문	농민들이 바라는 농협개혁이 되길
'09.1.7		농수축산신문	[금요칼럼] 본말이 전도된 농협개혁
'09.1.9		농민신문	농협 결단 톨보인 '자체 개혁안'
'09.1.12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신·경 분리방안 마련 서둘러야
'09.2.12		한국농어민신문	농협의 위기, 농협개혁에서 길을 찾자
'09.2.23	사 설	농민신문	[시론-양승룡] 농협 신·경 분리를 생각한다
'09.2.25		농수축산신문	[시론] 농협개혁 신중해야
'09.2.27		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 信·經 분리,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09.3.9		농민신문	농협법 개정,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09.3.12		한국농어민신문	[시론-고영근] 농협법 제조를 고치자
'09.4.6	사 설	농수축산신문	농협조합장, 농협개혁 주제로 나서길
'09.4.20		한국농어민신문	[기자의 시각] 농협개혁에서 축산경제는
'09.4.24		한국농어민신문	진정한 농협개혁에 뜻 모아야
'09.5.18		농민신문	농협, 농업인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라
'09.5.21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신·경 분리, 더는 미뤄선 안 된다
'09.5.25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 본격임 시작됐다
'09.6.11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신·경 분리의 최종 목적지
'09.7.14		농수축산신문	[기자의 시각]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09.8.10	사 설	농민신문	[양승룡 칼럼] 농협개혁만으로 부족하다	
'09.8.19		농수축산신문	[특별기고] 농협사업구조 개편과제의 이상과 현실	
'09.10.15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 초심 흔들려선 안 된다	
'09.11.5		한국농어민신문	최원병 농협회장님께 드리는 편지	
'09.11.12		한국농어민신문	정부, 농협법 개정안 다시 내놔야	
'09.11.12		한국농어민신문	'들러리'로 전락한 농협개혁위	
'09.11.16		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 입법예고안 처리 주목해야	
'09.11.20		농민신문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혜 모으자'	
'09.11.25		농민신문	[양승룡 칼럼] 농협사업구조 개편 입법예고안	
'09.12.11		농민신문	농협법 개정 농협의견 존중하라	
'09.12.21		농민신문	농협과 정부가 따로 가는 농협법 개정안	
'09.12.21		기 획	한국농어민신문	실망스러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09.12.24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 마지막 기회다
'10.1.20		사 설	농수축산신문	[금요칼럼] 농협개혁이 남의 일인가
'10.1.26		기 획	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① 정부 '농협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앙회장 권한축소 골자 정부개정안 '일단공감'
	농협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② 농민, 축산단체 반응 '용두사미 안 되게 농업계 역량 모아야'			
	농협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③ 지주회사 vs 신용사업연합회 핵심은 신·경 분리...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 힘써야			
	농협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④ 전문가사선 박진도 충남대 교수 '농협중앙회, 연합회조직으로 재편을'			
'10.2.4	사 설	한국농어민신문	조합원 중심 농협개혁이 핵심	
'10.3.1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농협 신·경 분리,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10.3.17		농민신문	[최경식]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협동조합	
'10.5.6		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 개정안, 정치적 해결 안 된다	
'10.6.3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신·경 분리, 대타협 나서자	
'10.8.2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을 재론한다	
'10.12.3		사 설	농민신문	농협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연내에 이뤄져야
'10.12.9	기 획	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 개정안 연내 처리속도	
'10.12.13	사 설	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 개정, 농민 입장에서 다시 논의하자	
'10.12.20	사 설	농민신문	농정 현안법안 나몰라라하는 파행 국회	
'10.12.23	기 획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경제사업 성과와 과제	
'11.2.10	사 설	한국농어민신문	차라리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 나서자	
'11.2.11		농민신문	[양승룡 칼럼] 농협사업구조 개편 입법예고안	
'11.2.18		농민신문	[양승룡 칼럼] 농협법 개정 시급하다	
'11.2.21		농수축산신문	입시국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 귀추 주목	
'11.2.28		한국농어민신문	올바른 신·경 분리 담아야 할 농협법	
'11.3.3		한국농어민신문	[데스크칼럼] 지주회사가 농협개혁이 아닌 이유	
'11.3.7		농민신문	농협법 개정안 국회 농식품위 통과에 부쳐	
'11.3.9		농민신문	조합장 동시선거를 공명선거 정착 전환점으로	
'11.3.9		농민신문	[오영재] 농협법 개정과 정부의 약속	
'11.3.10		농수축산신문	[금요칼럼] 농협개혁, 범농업계의 중지 모아야	
'11.3.10	기 획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11.3.10		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후	
'11.3.10	사 설	한국농어민신문	[특별기고] 신·경 분리 올바른 추진 위해 범농업계 단결해야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11.3.16	사설	농민신문	'열과 성'을 다해 사업구조 개편 지원해야	
'11.3.18	사설	농민신문	[기고-최덕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새 역사에 부처	
'11.3.21	기획	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안 통과 (中) 경제사업 활성화가 키워드	
'11.3.23	기획	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안 통과 (下) 금융사업 경쟁력 높인다	
'11.3.28	사설	농수축산신문	[기고] 농협법 개정, 환골탈태 계기돼야	
	기획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의의·과제' 간담회	
'11.4.1	사설	농민신문	개정 농협법 공포... 이젠 '실천'에 힘쓸 때다	
'11.4.7		한국농어민신문	농협제자리찾기운동을 마치며	
'11.4.13	기획	농민신문	농협법 개정 그후... (3) · 끝 농협 사업구조 개편 추진 일정	
			농협법 개정 그후... (3) · 끝 구조개편 관련 위원회, 농협 안팎서 가동	
			농협법 개정 그후... (3) · 끝 남은 과제는	
'11.4.29	사설	농민신문	농협, 사업구조 개편 준비 본격화에 부처	
'11.6.16	기획	한국농어민신문	'농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농협개혁포럼	
'11.6.22	사설	농민신문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백년대계 초석이다	
'11.7.4		농민신문	[이정환 칼럼] 신·경 분리의 수레바퀴는 돌아	
'11.7.13		농수축산신문	농협사업구조 개편 본질 훼손하지 말아야	
'11.7.14		한국농어민신문	세계 협동조합의 해와 농협개혁	
'11.7.25		농수축산신문	농협 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금의 요건	
'11.7.29		농민신문	개정 농협법 후속 조치, 차질 없어야	
'11.8.22		한국농어민신문	[기자수첩] 농협개혁 건망증	
'11.9.26		농민신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이제 국회에 달렸다	
'11.10.6		기획	한국농어민신문	바른농협개혁포럼
'11.10.10		사설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농협개혁 목적 달성을 위한 제언
'11.11.16	농수축산신문		[기고]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의 성공을 위하여	
'11.12.5	한국농어민신문		강소농의 꿈과 멀어진 농협개혁	
'12.19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개혁인가 반개혁인가	
'12.1.12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사업구조 개편 제대로 해야	
'12.2.15	농민신문		정부의 금융지주 직접출자 안 된다	
'12.3.5	농민신문		새 농협 출범에 부처	
	농민신문		[정영일 칼럼] 사업구조 개편은 21세기 농협	
'12.3.8	한국농어민신문		새롭지 않은 새 농협 출범	
	한국농어민신문		미완의 '농협제자리찾기'	
'12.3.19	농수축산신문		새 농협 출범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12.3.21	농민신문		경제사업 활성화 구현하는 농협에 거는 기대	



# 제5장

## 성명서

# 제5장 성명서

## 1. 농협개혁위원회

농협개혁위원회 해체 관련 성명서, 2009.10.28

– 농개위안과 거리가 멀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염원하는 조합원 요구마저 외면 –

2009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라는 입법예고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안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뿐만 아니라 사전조율도 전혀 없었고, 경제사업 잘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마저도 외면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것임을 밝힌다.

지난해 12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가락동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은 돈 장사로 번 돈으로 정치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농민 조합원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협개혁을 촉구하였다. 바로 5일 후 본 위원회는 농민단체, 농협, 학계, 정부대표 등 11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설치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개선방안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라톤 회의를 거쳐 지난 1월 초 확정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법제화할 내용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뒤이어 농협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인 농협중앙회의 신용 경제사업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난산 끝에 지난 3월 31일 위원회안을 발표하였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팔아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

협중앙회를 전국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중앙회 신용사업을 분리시키되 향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와 지분 매각분은 경제사업 쪽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앙회 신용사업을 분리 독립시킬 경우 개별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사업의 부실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별 상호금융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체화시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토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자본금 배분은 우선 경제사업에 5.3조 원, 신용사업에 5.8조 원, 상호금융사업에 0.8조 원을 배정하고, 신용사업 BIS 비율 유지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은 가급적 농협 내부에서(일선조합의 우선출자 등) 조달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일선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선조합이 추가출자토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 국민이 농협을 아껴 준 결과 형성된 농협이라는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업부문에 돌아가게 해서 회생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위원회안을 마련한 후 자칫 위원회의 일방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까 싶어 농협중앙회에 대해 여러 차례 그들의 안 제출을 요구하였고 절충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8월 회의에서는 ‘중앙회’라는 명칭 사용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중앙회가 비사업적 기능인 교육지도사업만 담당한다면 중앙회를 존치시킬 수도 있다는 점과 축산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점을 보완토록 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를 없애려 한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신·경 분리다’, ‘신·경 분리는 농민조합원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혀 실익이 없다’ 등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농협중앙회의 임시 이사회를 통과하였다는 신·경 분리안(중앙회 자본금의 대부분을 신용사업에 투입하고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정부가 내라는 일종의 ‘배 짜라’는 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순간 중앙회의 무모하면서도 안하무인 같은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 안은 중앙회가 맥킨지 컨설팅회사에 연구용역을 주어 지난 2월 말 내용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들은 물론 농협조합장, 심지어는 중앙회 이사회에서도 부적합한 방안이라고 거세게 비판받았던 것보다도 더욱 퇴보한 안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8월 27일 소집되었던 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국장은 중앙회가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위원회안을 뼈대로 입법예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위원회 소집은 전혀 없었다. 바로 이틀 전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완배 교수와 정재돈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담당국장이 만나자는 자리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처음 접하였고, 두 사람 모두 한마디로 “황당했다”고 한다. 정부안은 중앙회가 배짱 좋게 내민 안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었다. 농협연합회(농협중앙회 명칭을 바꾼 것임) 조직의 비대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상옥 구조로 되어 있고,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분리 독립이 시급함에도 단계적 분리라는 이유를 내세워 연합회 내에 존치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안은 자본금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 그 이유를 문자법안 내용에는 담을 수 없는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본 위원회는 어제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되었다. 그동안 거의 1년에 걸쳐 고생해 온 위원회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암묵적인 답답에 농락당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협

개혁은 농협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언급과 자본금 배분을 공란으로 처리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합쳐 보면, 농협중앙회의 ‘대부분의 자본금을 신용사업으로 가져 가겠다’는 지극히 반농업적이며 반농민적인 발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앞서 가졌던 의아심도 이제야 풀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 1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나가듯 한번 해 보신 진정성 없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대통령 말씀의 진정성을 믿었기에 현재까지 묵묵히 일해 왔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 대통령의 뜻을 왜곡시키며 농민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못된 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각종 정치적 비리와 농협 관료주의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고달픈 농민조합원을 위해 경제사업다운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대형 은행 설립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끌어가려는 사악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더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허수아비나 노리개가 되고 싶지 않기에 스스로 해체하고, 전국 농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 농협의 주인인 전국 농민조합원, 농민단체는 물론 각종 언론, 청와대, 국회, 시민단체 모두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

## 2. 농협중앙회 회장 최원병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농협 개혁 방향, 2009.1.7

존경하는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농협을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농업인과 온 국민이 어느 시기보다 힘든 이때,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240만 농업인 조합원과 농협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영업현장과 유통현

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협은 금번 사태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농업·농촌·농업인의 굳건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격려와 칭찬으로, 신뢰 상실과 상처를 자긍심과 영광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드리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농협의 지배구조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회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회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비롯된 금번 사태를 거울삼아 회장 임기단임제와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와 내부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여, 투명한 지배구조와 강력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선조합의 지배구조와 규모화를 위한 합병도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 사업부문별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지원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분리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분리는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조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중앙회와 조합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그 성과를 농업인에게 돌려드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성역없는 조직·인적쇄신으로 농협 관료제를 타파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농협무역 등 계열사도 강력한 구조조정과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가 영입 등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한 경영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조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한 농협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결과는 모두 농업인에게 돌려주어 농업인이 주인되는 농협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 지원되고 있는 무이자자금 6조 9천억 원도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농업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기숙사 건립, 장학사업, 무인헬기 공동방제 등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직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매진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만큼은 농협이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조합원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무이자 긴급자금 1조 2천억 원을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해 생산은 농업인, 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중간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값싼 농산물을 우리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확대에도 적극 나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수출 전문단지와 선도농협의 육성으로 한국 농산물 수출의 절반을 농협이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비상경제정부 가동에 적극 동참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미래환경과 자원을 지키는 녹색성장산업도 적극 견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협은 지금 시장개방 확대와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미래 없이는 농협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농업·농촌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혁과 사업 혁신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농업인과 국민의 의견에 더욱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정말로 농협이 변했다!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 단체

#### 3.1. 한농연 농협개혁위원회 참가자 일동, 2008.2.25

##### 한농연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선언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농협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농민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근본적인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 선포를 선언한다.

지금 농촌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야기된 한미 FTA 추진과 농업계 조직 축소, 비료·사료값 폭등, 농가부채 등으로 350만 농민의 기초생존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농협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조직·인력·사업구조의 전면 개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농민이 주인되는 농협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더는 정부에 기대 농협개혁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이 중앙회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혁과제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현장의 농민조합원들이 개혁과정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일선조합의 역할을 개선하는 데 소홀했다.

이에 우리는 농협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 속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한농연의 농축협이 감사·대의원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농협의 주인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개혁을 위한 상설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중앙·도·시군 단위까지 상설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일관된 지침에 의해 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한 협동조합 개혁의 올바른 관점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집약하여 농민조합원이 원하는 협동조합 개혁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

#### 3.2.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 2009.1.6

졸속개혁 중단하고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 개혁 실시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5일) 지난 3일 농협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혁안을 발표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1명의 위원들 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농협개혁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농림부는 졸속개혁 추진을 중단하고 농민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 농림부 농협개혁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종증권 인수와 휴켄스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농협중앙회의 비리문제로 농협개혁이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농림부가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농협개혁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구조조정하는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뿌리까지 파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쫓겨 2월까지 마무리하는 개혁과 농협법 개정은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다시 한번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림부



는 240만 조합원과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만이 농협개혁의 해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농협개혁, 신용·경제사업 분리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에서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인 농협개혁의 시작은 충실한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기본은 신용사업에 치우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협의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치는 신·경 분리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실시로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없이 농협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 개혁을 회피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농협개혁위원회의 충분한 활동을 보장하라!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을 위해 농협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독립성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농림부는 자기의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농림부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신용부문의 지주회사 전환과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월 국회에 시간을 맞추기 위한 졸속적인 개혁이 아니라 충분히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과 활동을 보장하라. 또한 농협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조합장 위원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상임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이들을 위원회에서 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농협개혁위원회를 농협관련 인사를 제외한 농민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근본개혁 실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20여 년간 미뤄 온 이 숙원사업을 또 다시 차기 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농협개혁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를 위한 농협, 농림부를 위한 농협, 농협중앙회를 위한 농협을 만드는 개혁안이 아닌 350만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 개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

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적인 개혁안을 발표한다면 240만 조합원과 350만 농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힌다.

### 3.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1.7

**최원병 회장의 개혁의지가 근본적 농협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최원병 회장의 의지를 시작으로 농협구성원 모두 적극적인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1. 전 국민의 농협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자체 개혁방안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독립화 등 지배구조의 개혁과 부실조합 합병 유도를 위한 무이자자금 활용, 고강도 구조조정 등이다.

2. 물론 이번 개혁의지에 대한 발언이 농협중앙회의 지난 역대회장의 비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에 대한 비난에 의한 수동적인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등 주요 개혁안의 추진이 조합장과 노조, 농협중앙회의 의지부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중앙회장의 발언으로 농협법 개정과 현 정부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사실 급속도의 개방화와 생산비 상승 속에서 잇따른 임직원의 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신임을 잃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토록 농협중앙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농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4. 그런 의미에서 최원병 회장의 이번 농협개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발표된 개혁과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농협개혁과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그리기에 부족함을 인식해 줄 것을 당부한다. 현재 정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이 한창 논의 중이고, 그간 농업인과의 의사소통과 농민단체의 개혁안 수용이 부족했던 만큼 농협중앙회는 이를 적극 귀 기울여 개혁과제를 보완·구체화하고, 근본적인 농협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임 중앙회장의 비리를 촉발하게 된 농민조합원 자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한 투명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5. 현재 우리 농업은 대책 없는 FTA 추진, 농산물 생산비 폭등 등 벼랑 끝에 몰려 있어 농업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고통분담이 절실하다. 이번 중앙회장의 개혁의지를 시발로 일선조합장, 노조 등의 적극적인 개혁 자세가 이어져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농협 주체 하나하나부터의 개혁의지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농협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3.4. 전농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2009.1.15

**20년 숙원사업 농협개혁, 근본적 개혁투쟁으로 올해 안에 완수하자!**

지난해 11월 세종증권 인수와 휴켄스 매각 비리가 드러나면서 뿌리까지 썩어있는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 쌀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농민들에게 농협비리문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떠밀리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국민들의 농협에 대한 지탄과 농협개혁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해 왔던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여론에 밀려 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240만 농민조합원, 350만 농민들이 합심하여 20년을 애타게 기다려 온 근본적 농협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다.

현장에서부터 농민의 요구를 모아 근본적 농협개혁 완수하자!

지난 20여 년 농민들의 줄기찬 투쟁을 통해 농협개혁은 조금씩 전진해 왔으며 그 힘으로 이번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경제사업 분리시행,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시·군지부 폐지 및 연합회 구성 등 핵심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본적 농협개혁은 또 다시 세월만 보내게 된다. 현장에서부터 240만 조합원,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모아 졸속적인 2월 농협법 개정을 막아내고 반드시 올해 안에 근본적 농협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자!

근본적 농협개혁 핵심과제 신·경 분리, 반드시 농민의 요구대로 관철하자!

농협개혁은 올바른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없이는 끝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신·경 분리 방식을 주장하며 농협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주회사 방식에서의 전환은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방식은 농협을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 아니라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러한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며 농협을 온전히 농민의 것으로 만드는 올바른 신·경 분리를 쟁취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농 중앙위원들은 240만 농민조합원과 350만 농민의 요구를 모아 근본적 농협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핵심 농협개혁 과제가 빠진 졸속적 농협법 개정을 막아내자!

하나, 농협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올바른 신·경 분리 쟁취하자!

하나, 20여 년 숙원사업, 근본적 농협개혁 반드시 올해 안에 완수하자!

### 3.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1.19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농협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농협법 개정안 취지 실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

1.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 속에 지난 12월부터 농협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과 함께 농협개혁안을 논의해 온 농림수산식품부가 한 달여 넘는 논의 끝에 완성된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은 예고되어 왔던 대로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일선조합의 광역화,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한농연은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농협법 개정안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왔고, 주요 농민단체들이 개혁안 논의과정상에 예고된 개정 방향에 동의하였기에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 물론 이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사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9월에 정부가 입법예고하였다가 지역 농협의 조합장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들이 국회에 심의를 받기도 전에 폐기된 바 있지 않은가.

4. 하지만, 지난 12월 농협에 대한 전 국민적 규탄과 최근 우리 농업을 둘러싼 위기들은 농협개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농업인의 요구 전체를 담지는 못해 향후에도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의 끊임없는 보완과 모니터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농업 관련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또한 농협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한 바 있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효과에 전 국민과 농민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

5. 그런 만큼 지난번처럼 농협 구성원들의 반대와 지역의 표심을 고려한 국회의원의 의지 부족으로 또 다시 법 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떠한 변명과 논리

로도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이 예고된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농협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개정안 관철과 농협개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3.6. 한국낙농육우협회, 2009.1.20

진정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축산업의 전문성,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

농협중앙회의 자체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 대로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되었다. 이는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잇따른 임직원 비리로 질타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농협중앙회를 뒤늦게나마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영한 개혁방안이 되어야 함을 먼저 분명히 밝혀준다.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타 부분 대표와 달리 조합장들이 선출토록 한 것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것이었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통합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구조개혁이라는 획일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다. 줄줄이 이어지는 낙농 강국과의 FTA, 사료값 폭등, 송아짓값 폭락 등으로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농민들이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지경인데, 그동안 농민위에서 군림해 온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번 농협법 개정이 분명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미흡하다. 농협개혁은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농협

중앙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농축산인과 농축산업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는 축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7. 전국한우협회, 2009.1.21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농협중앙회는 물론 각 단위의 농·축협이 개혁에 앞장서길... -

지난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개혁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7일 농협은(회장 최원병)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농협과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개혁이 말로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농협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공약사항의 하나로 시작만 거창할 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협과 농협개혁에 대하여 아직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불신만이 팽배해 있다.

이번 농협개혁은 정부의 의지나 외압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진정 농민을 위한 개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는 물론 각 단위의 농축협이 스스로가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 중 축산업은 농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축산업은 FTA 문제와 사료값 폭등으로 인하여 생산 기반조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개혁의 방향은 산업별·품목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향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3.8.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장정옥, 2009.1.29

이젠 농협개혁의 실천이 필요할 때

- 2월 임시국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2월 임시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16일 우여곡절 끝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정부는 세종증권 매입 비리와 자회사였던 휴켄스 헐값 매각, 중앙회장 인사 전횡 등 온갖 탈법의 온상으로 비쳐졌던 농협중앙회에 대해 1988년 법 개정 이후 21년 만에 강력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간 언론에 오르내렸던 갖가지 적폐를 시정하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일선조합의 광역화,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등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주요 농민단체가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농협법 개정안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왔고, 개혁안 논의과정 중 제시된 청사진에 동의하기에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농협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전에도 수차례 농협개혁에 나섰다가 흐지부지된 전례에 비추어 이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170만 여성농업인은 단연코 농협개혁을 원한다. 여러 가지 지적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분명하다. 세부적인 각론과 보완사항은 추후 농협개혁 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테지만 분명한 것은 농협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직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얼룩졌던 농협이 과오를 씻고,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여농회원들은 끊임없는 농협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 3.9.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2009.2.5

농협개혁,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농협개혁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논의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어 약법(藥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폐지를 담고 있어, 원안대로 고수 시 우리 축산농민들에게는 악법(惡法)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1999년 농축협 통합 당시, 중앙회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토록 하는 현행 농협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바로 농협법 제132조 4항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다. 또한 금번 개정안 취지에서 보더라도 축산경제대표이사의 현행 선출방식은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인 중앙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정신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특례조항이 폐지된다면, 그 다음은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폐합이 정해진 수순 아닌가! 축산 소외는 더는 안 된다.

이러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온 농식품부 축산국 폐지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폐합 문제는 이를 방증한다. 축산농민들의 요구를 자못 지엽적인 문제나 농협개혁에 대한 단순 반대 입장으로 폄하하는 것은 곤란하다. 농협개혁이 축산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농협개혁 법안이 올곧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바로 축산농민들이 바라보는 농협개혁의 진정성이다. 농협개혁만큼 농축협 통합정신도 중요한 것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금번 농협개혁 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말할 것도 없이 농축산업은 현재 최대 위기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특히 축산경제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 축산농민에게도 금번 농협개혁 법안이 진정한 약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10.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2.9

기만적인 금융지주회사 중심 신·경 분리안

지난 2월 6일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맥킨지에 발주한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처한 농민과 조합을 살리려는 대책은 전혀 없이, 오로지 농협중앙회 임직원과 신용사업의 기득권만을 수호하려는 기만적 대책으로 일관돼 있다.

보고서는, 2010년 금융지주회사를 분리 설립함으로써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대부분인 14조 5천억 원을 금융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반면, 농민 실익을 위한 경제사업에는 2조 7천억 원의 자본금만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신·경 분리 방안은, 농민과 조합의 경영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이

익 배분에 있어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반농민적·반농협적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신·경 분리를 위한 자본금 확충방안마저 BIS 비율 하락 등 당장의 신용사업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사업 투자를 축소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본질을 내팽개치는 반개혁적 내용이어서 한농연 12만 회원과 350만 농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조합 상호금융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중앙회에 존치시킬 경우 경제위기하에서 조합 경영부실을 방지하여 농촌경제·농업금융의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경제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전망이 결여된 일선조합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위협천만한 발상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최종보고서를 이미 접수하고도 농협개혁위원회에 서면 보고기로 한 당초 약속을 어겼으며, 연구용역업체를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영진은 작년도 경영부실의 내역을 감추고 자본금 확충을 포함한 비상대책을 소홀히 하는 등, 농민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나아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중앙회 간부들로만 구성된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정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식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에는 농협의 입장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겹히지 않을·실천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는 12만 한농연 회원과 350만 농민, 나아가 전 국민적인 공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하나,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단체장들과의 공식 면담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방안에 대한 맥킨지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농협중앙회장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

하나, 작년도 농협중앙회 경영성과를 즉각 공개하고, 비상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경영부실과 반농민적 연구용역을 발주한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반농민적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농민조합원을 진정한 농협의 주인으로 세우는 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정부 주최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라!

### 3.1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3.2

국회는 농협법 조기 처리에 매진하라!!!

오늘(3월 2일) 여야는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 간 일촉즉발의 극한 충돌까지 우려되던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당면 정책 및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농연은, 농민단체·농협 관계자·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돼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회 농식품위 통과 및 법사위 상정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 순회토론회를 거쳐 350만 농민의 염원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듬어진 것이다. 특히 심각한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여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을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직으로 세워내고자 지배구조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민주적이며 투명·건전 경영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각종 조항이 반영돼 있다.

350만 농민들은 농업계 전체의 하나 된 의지와 역량으로 만들어 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요구사항을 보고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농협법 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정의 발전을 위한 큰 획을 그을 수 있게 되기를,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한다.



### 3.12. (사)전국이통장연합회, 2009.3.2

#### 농협개혁 지지성명서 발표

- (사)전국이통장연합회가 3월 2일(월) 전국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개혁에 대한 지지성명서 발표를 결정
- \* (사)전국이통장연합회장(이중규)이 장관님과과의 면담시(2.13) 이통장연합회 차원의 농협개혁 지지 성명서 발표 의견을 개진
- 성명서 주요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개혁안을 적극 지지’
  - 농협이 참다운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
  - 농식품부에 협동조합 개혁안을 확고한 의지로 차질 없이 추진을 요구
  - 국회에 협동조합 개혁안의 지체 없는 통과를 요구

### 3.13.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2009.3.13

#### 농협 개혁을 위한 역사의 주인으로 떨쳐 일어나자!!!

-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
- 오늘 우리는 농업·농촌의 회생 및 국산 농축산물의 제값 판매를 책임지는 농협으로 반드시 개혁해 내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섰다.
- 농협개혁은 농업·농촌·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간 한농연은 350만 농민과 전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족자본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지켜내고자, 농협법 개정 및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올바른 개혁방안 도출에 매진해 왔다.
- 그러나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이 모처럼 합의를 통해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농협개혁 음해세력의 조직적인 로비에 여야 정치권의 눈과 귀가 가로막혀 있어, 자칫 농협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전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해외파생상품 손실과 각종 금융사고로 240만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자본 배분을 통해 은행 및 금융 관련 자회사만 살려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맥킨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는 등 임직원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농민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나아가 1,180여 개의 일선조합의 지속 가능한 생존은 철저히 내팽개치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대는 농협개혁 완수를 위한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12만 한농연회원 모두의 선도적·헌신적 투쟁을 통해, 농업·농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로서 농협을 지켜내야 할 역사적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12만 농업경영인이여!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350만 농민의 선봉에 서서,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된 투명·건전한 전문 경영체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조직으로 농협을 반드시 개혁하자!

**농협 개혁을 위한 12만 농업경영인의 5대 요구사항**  
하나, 반농민적 맥킨지 보고서의 관련 최종 책임자를 즉각 파면 조치하라!

하나, 경제·판매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조기 시행하라!

하나, 농협 부실화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농기자재 취급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농민조합원에게 환원하라!

하나,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협법을 즉각 개정하라!

### 3.14.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3.24

####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한다!

1. 농협법 개정안 또다시 국회 표류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이 모처럼 합의를 통해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협개혁의 포문이 막혀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 국회는 농협개혁의 주체인 농민조합원의 하나된 목소리를 경청하라!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발의 이전에 이미 농업계에서 두루 논의된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로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민조합원의 열망과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일부 내용에 다소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한농연을 비롯한 각 농민단체가 마지막까지 현장 여론수렴을 통해 이견조율을 끝낸, 그야말로 농민조합원의 뜻이 담긴 입법안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치적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농민조합원의 뜻에 따라 조속히 입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

3. 심도 깊은 신·경 분리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조속히 가결되어야 한다.

신·경 분리 문제는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제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경 분리 문제를 포함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넣는다면 농협개혁의 눈점이 분산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4. 국회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 건설을 위해 개혁의 포문을 열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지난 2월 임시국회와 같이 지역의 표심을 고려하여 또다시 법 개정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 반개혁세력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는 농민과 국민이 부여한 기회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향후 농민과

국민의 개혁의 칼끝이 국회로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3.15.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장정옥, 2009.3.24

#### 4월 임시국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1988년 법 개정 이후 21년 만에 강력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번 농협개혁도 역대 정부와 같이 수차례 개혁에 나섰다다 흐지부지된 전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그간 언론에 오르내렸던 갖가지 적폐를 시정하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을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시도별 지역 순회토론회를 거쳐 350만 농민의 염원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다듬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농협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농협개혁은 멀어질 뿐이다. 말만 무성한 농협개혁 논의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현장과 농업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개혁은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협개혁을 농업문제 해결의 전부로 보는 시각도 단편적일 수 있지만, 시행착오가 두려워 실천의 첫발을 내딛는 시도조차 미루는 것은 지금 산적한 농업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첫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 밥을 떠서 입에 넣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시작될 수 있다. 국회는 농협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는 일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더는 국회에서 표류하지 않고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여농회원들은 끊임없는 농협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 3.1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4.29

농협개혁의 신호탄이 될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마찰과 이념차이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농협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중심의 권력구조와 일선조합을 역지배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경제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진정한 협동조합체로 만들기 위해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2. 농협개혁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최후의 보루!

물론 이번 개정안이 농업인의 요구 전체를 담지 못해 향후에도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의 끊임없는 보완과 모니터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 FTA와 각국과의 FTA가 농민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경기 침체로 인해 생산비가 폭등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영농 여건은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개혁은 우리 농업과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최후의 보루이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으로 농협개혁의 첫 단추를 꿰 것이다.

3. 이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경 분리에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농협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협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 온 신·경 분리안에 대해 하반기에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농협법 개정과 하반

기 논의될 신·경 분리안 도출 등 이번 농협개혁 작업은 경제사업 본위의 농협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었다. 때문에 신·경 분리안의 도출은 무엇보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일선현장·조합원이 중심된 상호금융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점되어야 한다.

4. 농협 바로 세우기에 농민조합원과 농촌경제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또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농민조합원과 조합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협 구성원 전체가 우리나라 농업을 지켜낸다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모아 경제사업과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신·경 분리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3.17.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 2009.7.3

개혁을 회피하고 끝까지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농협중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2012년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자체 신·경 분리안의 실무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월 8일부터 21일까지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 확인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 물타기 음모를 중단하라!

농협중앙회는 3월 말까지 농협개혁위원회에 자체 신·경 분리안 제출을 거부했다. 몇 차례나 시한을 연장하고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고 중앙회의 안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리고 5월까지 농협개혁위원회 신·경 분리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 그런데 중앙회는 최근에 갑자기 언론에 자체 실무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에 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민단체들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지역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경 분리 추진에 속력을 내려고 7월 13일부터

전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겹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농협개혁의 대세에 밀려 위기에 몰려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개혁의 흐름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이다. 게다가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출하라고 할 때는 끝까지 기피하더니 농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체 신·경 분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주인인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 분리 실무초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 분리안은 2010년부터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분리하고 2012년부터 완전히 분리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부분을 정부에 요구하고, 그 외의 자본을 거의 신용사업에 배분하는 철저한 신용사업 위주의 방안이다. 결국,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농협중앙회를 위한' 신·경 분리방안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논의에 대해 정부는 '농협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의 주장에 수긍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어떻게 농협의 의견인가? 농협의 의견은 그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이어야만 한다. 정부는 애초에 밝혔던 것처럼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농민을 위한 신·경 분리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올해 농협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농민조합원의 의견에 기초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과 240만 조합원들의 의지를 담아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합원을 배제한 일방적인 비공개 순회토론회를 즉

각 중단하고, 농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하라!

농협중앙회의 기득권이 아닌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신·경 분리안을 제출하라!

만약 농협중앙회가 이와 같은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신·경 분리안 마련과 순회토론회를 강행한다면 주인의 호된 동등이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3.18. 한농연중앙연합회, 2009.7.7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 극단적 농협개혁 투쟁을 원하는가?

농협-정부-당정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조기 착수 요구가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당정, 농식품위가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를 통한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행보에 실망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결별한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경 분리 논의에서 중앙회 신용사업은 궁극적으로 매각처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데 이견 없이 그 시기만 조율 중이다.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제 살 궁리에 무리수를 두는 농협중앙회의 모습에 농민조합원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신·경 분리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보

농협이 외환은행 인수에 경영권 방어 차원의 최소 지분(50%+1)만 보유한다 하더라도 최소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 현재 신·경 분리 시나리오상 농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8%)을 맞추기 위해 6조 1천억 원을 금융지주에 배분하더라도 6조 원의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추가



적으로 인수비용까지 마련해야 한다면 경제사업으로 자본 유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의 외환은행 인수는 농협개혁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될 것**

농협의 존재 이유는 우리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본분을 망각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살리기만 계속할 경우, 농협개혁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극단적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 농협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경 분리의 목적을 직시하고, 신·경 분리의 방향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3.19.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9.28

**농협중앙회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자체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맥킨지 보고서의 재탕·삼탕 개악안으로 일관

농협중앙회는 28일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구조 개편의 형태와 시기,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여부, 상호금융 독립법인 여부 및 필요자본금 조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협 자체 사업구조 개편방안의 핵심 골자는 ▶농협중앙회 명칭의 유지 ▶상호금융중앙금고 독립 대신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금융지주회사 우선 분리, 경제지주회사는 자립기반 확보 후 설립 등이 골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농협 내부에서조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가지고 9월 초 시도별로 조합장·학계·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시도지역본부별로 개최하여, 농업계 내외부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자체 신·경 분리안에 대한 허울 좋은 명분 쌓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 그 실체와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농협중앙회의 이번 사업구조 개편방안은, 세계 경제·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시장·정책 여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올해 초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타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기득권 수호만을 목표로 한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개악안으로 한농연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농민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한 신·경 분리 방안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크다.

더욱이 일선조합원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은 원천 봉쇄하고, 9월 28일까지 총 5회의 회의와 요식적인 지역별 설명회로만 일관해 온 '사업구조 개편 중앙위원회'의 실체와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3. 농협중앙회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자체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자체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신·경 분리방안을 전면 수용하라!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원만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경 분리와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농협중앙회가 이를 무시한 채 반개혁적·퇴행적인 행태로 일관할 경우, 한농연은 240만 농민조합원 및 350만 농민과 함께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3.20.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10.1

**350만 농민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신·경 분리 불가'를 강변하는 농협중앙회 노조를 강력 규탄한다!!!**

1. '협동조합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경 분리'라고?

농협중앙회 노조는 어제(9월 30일)와 오늘(10월 1일) 주요 중앙 일간지들의 1면 하단에 '정부 주도 일방적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 절대 반대!!!'라는 광고

를 게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의 자율성·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경 분리를 반대하며, 농협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므로 '2007년 4월 국회에서 확정된 안이 지켜질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2. 농협중앙회 노조는 정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가?

농협중앙회 노조는 급격히 악화된 자체 경영 여건은 애써 외면하며, 조합원 실익증진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신·경 분리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다. '약자들 단체인 협동조합'이 '이익단체인 지주회사'로 변하면 '은행수익은 주주에게' 갈 수밖에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높은 지주회사 수수료'로 인해 '비싼 농산물 가격'과 '값싼 수입농산물'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조차 철저히 기만·호도하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 분리안이 농민단체·학계·전문가는 물론 농축협 내 중앙회·조합 관계자 등 민간 주도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 광고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자본금 확충문제 또한,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힘으로 우선 조달하고, 경제·금융지주회사가 농협경제연합회 산하의 지배구조에 놓이게 되므로, 지주회사의 이익은 일선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철저하게 왜곡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야 정부의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총체적 부실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농협중앙회 노조가, 빈약한 논리와 뻔뻔한 궤변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철밥통을 수호하기 위해 350만 농민과 4,700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신·경 분리 반대'를 외칠 자격이 정녕 있는가?

3. 350만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광고 게재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해결책!

이제라도 농협중앙회 노조는 신·경 분리의 본질을 흐리고 350만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광고 게재

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한농연 및 농민단체와 학계·전문가·농축협 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한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 분리안을 전면 수용하고, 농협개혁위원회 신·경 분리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만약 농협중앙회 노조가 지금처럼 반협동조합적·반농민적인 여론 호도 및 개악안의 관철에만 골몰할 경우, 한농연 12만 회원은 350만 농민과 함께 강력하고도 단호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3.21. 농민연합, 2009.10.15

**농협중앙회는 반농민적 신·경 분리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 농업의 위기, 농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해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농업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농협중앙회 또한 계속해서 드러나는 비리문제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고 농민단체와 정부의 개혁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자 자구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현재 본회 자본금은 신용사업으로 전체가 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나,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2012년 금융지주 우선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중앙회의 자체 사업구조 개편 방향은 협동조합의 본분과 농협 신·경 분리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로, 농민연합은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소위 맥킨지 보고서에 기초한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 분리방안의 핵심은 비대한 농협중앙회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본금을 거의 금융지주에 배정하여 신용사업을 우선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협동



조합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돈 장사에만 매진하여 농협의 위기를 초래한 지난 시기 농협중앙회의 잘못을 망각하고, 신용사업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책임 감독을 자처하는 정부의 명확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조합원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를 수행하지 않은 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있어 정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기본 원칙과 최종 목표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농민조합원의 염원이다. 이를 위해 농민연합은 범농업계의 의견을 모아 농협개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민이다. 농협중앙회는 농민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반농민적 자체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농협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농협중앙회의 행태를 농민연합과 350만 농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3.2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10.16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 심의·의결, 한농연은 350만 농업인과 함께 단호한 대응활동에 나설 것이다!**

1.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 심의·의결돼
- 농협중앙회는 어제(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핵심 내용은 ▶2012년 금융지주회사를 우선 분리하고 2015년에

경제지주회사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제사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9조 6천억 원 중 3조 6천억 원은 추가 출자와 내부 유보금을 통해 마련하되, 정부에서 6조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유지하고 ▶상호금융 부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표이사를 두기로 하고, 오는 27일의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하였다.

2. 농협중앙회 자체 구조개편 방안의 문제점들
-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농협중앙회가 ‘토종 금융기관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체 자본금의 거의 모두를 신용사업에 투입하는 반면,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자립기반 구축, 산지유통 활성화 등이 완료되는 201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되 충분한 자금지원 등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시기는 단축될 수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데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의도대로 ‘충분한 물량과 품질을 갖춘’ 경제사업 정부 지원금 6조 원이 확보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채무가 407조 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농협에 지원할 명분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사업에 우선 출자나 저리자금 지원 등으로 지원할 경우, 경제·교육지원사업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 등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확보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농협중앙회 내 존치로 어물쩍하게 결론지어버렸다.

3. 한농연은 350만 농업인과 함께 단호한 대응활동에 나설 것이다!

이번 농협중앙회의 자체 사업개편안에 대해 한농연은, 지난 봄 맥킨지 보고서 파문 당시보다 반농업·반협동조합적인 개악된 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농연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 협동경제체로의 신·경 분리에 동참할 것을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한농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에 대해 350만 농민과 함께 단호한 대응활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을 책임진 정부가,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확정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신·경 분리가 조기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농연 및 전 농업계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3.2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10.28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 제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현재의 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1. 농식품부마저 손을 들어준 반농민·반협동조합적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안
- 농협중앙회는 어제(10월 27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농협중앙회 원안에 대해, 276명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농식품부가 오늘(10월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다. 현행 농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고비용·저효율’의 중앙회 조직 개편은 도외시한 채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를 2011년 동시에 분리한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최우선·최대 배정원칙도 없을 뿐더러,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법인화 여부도 법 시행 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 ‘정부의 허수아비,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농협

개혁위원회까지 전격 해체돼

350만 농업인들은, 작년 12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개혁 촉구’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 방침에 희망을 걸어왔다.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정책 대안 마련은 물론, 올 봄과 여름에 걸친 시도별 순회토론회를 통해 일선조합원 및 농축협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국회 농식품위 종합 국감에서 “신·경분리는 농협 자율로 추진하되, 부족자본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장태평 장관의 답변을 접한 뒤, 농협개혁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어제(27일) 긴급 소집된 농협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협개혁위원회 원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농협중앙회 자체 개편안과 유사하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며, 결국 위원들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허수아비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농협개혁위원회의 해체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3. 신·경 분리의 근본 취지를 내팽개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태의 책임을 져야

신·경 분리의 근본 취지와 원칙마저 내팽개쳐진 채 전 농업계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확정된 농협개혁위원회안마저 실질적으로 완전폐기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음을 한농연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쟁취하기 위해, 12만 한농연회원은 농협개혁의 선봉에 서서 350만 농민과 하나가 되어,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강력하게 분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 3.24.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 2009.11.13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 발족문) 350만 농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반드시 쟁취하자!!!

오늘 우리는 농업·농촌·농민의 근본적 회생을 앞당기기 위하여, 올바른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기필코 완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단호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위기의 350만 농민들은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여, 농민 실익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는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협동경제체로 바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10월 27일, 자체 자본금의 거의 대부분을 신용사업에 투입하여 금융지주회사부터 우선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조합장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조합지원사업을 만성적인 차입·적자경영의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며, 지역밀착형 협동조합금융인 조합상호금융의 중장기적인 발전마저 금융지주회사가 정면으로 가로막는 반협동조합적이며 퇴행적인 농협개혁, 반농민적 기득권 유지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0월 2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협법 정부입법안마저, 당초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의 본질적 내용을 상당 부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정원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연합회의 분리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정부 스스로 농협중앙회의 최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방기하고, 실질적으로 반농민·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안을 용인한 결과이다.

이제 시대는 농협개혁 완수를 위한 우리 모두의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350만 농민과 양심적인 학자와 협동조합 운동가,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 된 현

신적인 실천과 투쟁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 농협을 반드시 지켜내어 국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이에 오늘 우리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적극 저지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작업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올바른 농협개혁의 완결을 위한 상시적 대응기구인 '올바른 농협개혁범국민연대'의 결성을 엄숙히 선언한다!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는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과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농민조합원의 피땀과 눈물의 소산인 협동경제체인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이 주축이 되는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 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신·경 분리를 기필코 쟁취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5대 요구사항**  
하나,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비출자법인인 중앙회와 제1금융권 은행을 별도로 법인화하도록,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의 완료 시점을 농협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라!

하나,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금은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액 이관하여, 이들 연합회의 공동출자 및 추가 자본금 확보를 통해 제1금융권 은행법인을 분리 설립하라!

하나, 농협경제연합회는 산지의 협동화를 통한 유통의 효율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조직 및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진정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금융인 조합 상호금융부문을 선진화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체 자본금을 보유한 독립법인체인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라!

하나, 축산경제부문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축산경제 특례를 제도화하라!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

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채소생산자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강춘성 (전)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권용대 충남대 농생대 학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 목찬균 백두대간 대표이사, 서정의 선진농림수산연합회 회장, 소순열 전북대 농생대 학장, 손형섭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 신철영 (전) iCOOP생협연합 회장, 이길재 통일농수산포럼 상임대표, 이상학 부산대 농생대 교수, 이우재 전 한국마사회 회장, 이현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정재돈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진경희 (전)iCOOP생협연대 회장,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황연수 동아대 사회과학대 교수 (농민단체, 전문가, 학계 순서로 가나다순)

### 3.2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9.12.15

농협의 보험진출, 특혜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 농민들의 접근성 제고, 보험선택권 확대 등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농협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고, '방카슈랑스 룰' 유예적용을 인정하고자 했던 정부의 계획이 보험업계의 반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농협의 보험진출을 특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 보험사와 공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것이냐? 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농협의 진출을 특혜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안

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익사업인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교육지원과 농정활동 중심의 연합회적 기능 강화'라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농협개혁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만약 금융보험대리점 지정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제한이 생기면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신설 보험자회사에서는 전국적인 관리조직을 재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모집총액 제한에 따른 수수료 감소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에 적용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출발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농민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민간 보험대리점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보험가입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농부중 비율 심화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고 가입이 까다롭다. 농협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농업인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보험이 기피하던 농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의 보험제도권 진입을 특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험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과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농협의 보험진출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3.26.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 2009.12.15

'경제사업 활성화'의 목표가 불분명한 개정안을 350만 농업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자본금 최우선·최대 배분원칙, 상호금융연합회



독립법인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

1월 15일 오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나눠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농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2.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개정안은 그간 농민단체, 학계,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지적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의 핵심이 빠져 있어 입법예고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중에는 농협중앙회의 어정쩡한 명칭 변경, 기존 체제와 비슷한 전무이사·농업경제·축산경제 상임이사제에 더해 지주회사 내에도 농업경제·축산경제 부대표를 두겠다는 전형적인 '옥상옥'으로, 사업구조 개편이라는 개정목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3. 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분원칙이 정부입법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그쳤을 뿐이다.

4. 이러한 이유로 지난 11월 3일 발족한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구성원들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던 작년 12월 대통령이 발언한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언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지 정부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으로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올바른 농협개혁을 주장하는 여러 농업계의 문제점 지적과 수정 요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가 큰 것이다.

5. 이에 정부는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등 농업계 전체의 일관된 개혁 요구에 귀를 기울여 농협법 개정안의 재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3.27.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2010.1.29

국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논의에 적극 나서라!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15년 논쟁,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에는 끝을 내자 -

1. 세종시 수정안 파문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해지는 형편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6.2.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치열한 대정치권 로비활동 속에서 농협법 개정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350만 농민의 참여와 요구사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 이에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협법 개정 핵심 4대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농협법 개정안에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한 의원 발의 및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 농협법 개정 핵심 4대 과제

가. 농협경제연합회·상호금융연합회(독립법인화) 및 경제지주·축산지주·금융지주의 동시 분리

나.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농협경제연합회에 전액 승계하고, 경제지주·축산지주 및 상호금융연합회에 최우선·최대 배분토록 하는 원칙을 확립

다. 비출자·비사업적 기능의 사단법인체인 '농협중앙회'를 설립,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토록 함

라.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축산지주회사 설립 등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3. 위의 4대 핵심과제는 작년 3월 말 농협개혁위원회가 확정·발표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안은 물론, 작년 말 농업계에서 집중 논의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단일(안)의 합의 정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4.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를 비롯한 350만 농민 모두의 일관된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4월 임시국회까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3.28.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0.3.2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의 근본 목적 달성은 농협경제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배분규모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1. 부족 자본금 문제에 얽매인 농식품위, 6조 원의 정부 '출연'을 고집하는 농협중앙회

2월 22일(월) 국회 농식품위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골자로 한 4개의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정식 상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위 위원들은 신·경 분리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확보방안에 대해 정부가 확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은 "부족자본금이 얼마가 되든 정부가 지원한다는 데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농협과 경제사업 규모에 대해 협의 중인데, 안이 작성되는대로 농협과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월 23일(화) 대의원회를 열고,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 6조 원을 정부가 '출연' 형식으로 지원하면 농협중앙회는 신용·경제·교육지원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2. 부족자본금 문제에만 집중하면, 신·경 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도 있어

신·경 분리의 근본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임을 정부와 농업인단체, 농협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위에서의 논점은 오로지 부족자본금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부족자본금 지원규모 및 농협

법 개정안이 조정·처리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240만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조율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위 위원들마저, BIS 자기자본 및 기본자본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의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농연 및 농업인단체들이 강조해 온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 최우선·최대 배정원칙이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신·경 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마저 매우 높은 상황이다.

3. 핵심쟁점은 농협경제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배분 규모에 달려 있어!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의 달성 여부는, 농협경제연합회 및 산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축산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금(특히 유통부문에 필요한 현금화된 운전자본)의 배분규모에 달려있다.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 소비자·기업금융에만 치중된 협동조합적인 사업 형태가 아닌,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 은행에 대한 부족자본금 확충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 및 공공단체의 재정·금융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농협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의 최대·최우선 배분원칙 확립이 신·경 분리의 핵심임을 국회 농식품위 위원들과 정부, 농협중앙회는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최대·최우선 배분방안을 마련하여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결정하는 절차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 3.29. 올바른농협개혁국민연대, 2010.4.8

농민조합원 의견 배제된 신·경 분리 논의 중단하라!

- '정부-농협-농업인단체' 3자 협의체에서 올바른 신·경 분리 방안을 마련해야 -

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농식품위에 상정된 3개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





이다. 이후 4월 23일에 개최될 전체 회의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심의한 농협법을 의결·처리하여 법사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 그런데 농협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의 참여와 의견 제시가 원천 봉쇄된 상황이어서 농업계 내외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3월 31일 당정협의 결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칫 농협중앙회의 정체성 확립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경 분리의 근본 취지가 실종된 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간 밀실 졸속협상으로 농협법이 개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 농업인단체와 학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내팽개친 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자신들만이 주체인 양 밀실에서 타협하여 농협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비민주적 처사라는 점을 농협개혁연대는 엄중히 경고한다.

4.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농협-농업인단체’ 3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올바른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여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는 한국 농협이 협동조합의 근본정신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농협중앙회의 궁극적인 주인은 240만 농민조합원이며, 농민조합원의 목소리를 양심적으로 대변하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대안 제시·관철을 통한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점을 농협개혁연대는 분명히 강조한다.

6. 이러한 관점에서 농협개혁연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아래의 4가지 사항이 적절하게 농협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실협상으로 일관하

여 농협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농업계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농민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올바른 농협개혁범국민연대의 4대 핵심 요구사항**

하나. 농정 농협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협 사업분리 추진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여,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가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추진을 지도·감독하고 자본금 실사와 배분,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법 부칙에 명시하라!

하나. 협중앙회와 정부는 내부차입 방식에 의한 신용종속적인 잘못된 경제사업 관행을 바로잡아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농협중앙회 보유 자본금 중 경제사업에 6조 원 이상을 최우선 배정할 것을 약속하라!

하나.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은 지역농협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직시하고, 개정 농협법 시행 1년 이내에 상호금융연합회(상호금융중앙금고)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완전 독립법인화를 추진할 것을 법 부칙에 명시하라!

하나. 순수한 교육·지원과 감사, 그리고 농협운동의 중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는 무자본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 설립을 법에 반영하라!

**3.30.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 2010.4.13**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1. 4월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전 농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 농민조합원을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결국은 농협 임직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

에 앞장서 온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왔으나, 이번 18대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2. 그동안 누차 지적했듯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당리당락을 떠나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할 15년 된 농업계 제1의 숙원과제이다. 여야는 ‘농협이 바로 서야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산다’는 현실을 감안, 돈 장사 잘하는 신용농협이 아닌 240만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농민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때 잘 팔아주는 농협다운 판매농협을 만드는 데 한마음으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3. 여기에 더해 정부와 정치권은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협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농협법 개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협과의 합의’만을 중시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우리는 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4.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는 이번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역사적인 농협법 개정이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철저하게 농민조합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단체와 여야 모두의 합의로 농협 지배구조 개편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되살려, 이번 사업구조 개편도 여야와 농업인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사업 잘하는 농협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31.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 2010.4.21**

250만 농민조합원의 15년 열망,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경 분리 완성 촉구 기자회견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농협개혁연대)는 2009년 11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

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협동조합개혁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학계와 전문가가 참가해 240만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해 매진해 왔다. 그동안 농협개혁연대는 한국적 농협의 현실과 협동조합의 이상을 조화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해 왔다.

농협개혁연대는 1994년 ‘문민정부의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처음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신·경 분리를 건의 한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논의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방안을 검토해 왔다. 농협개혁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검토하였고, 지난해 3월 농민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 합의 도출한 농협개혁위원회안과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농협개혁연대는 지난 2월 가장 농민적이고 협동조합적인 사업분리방안을 정리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정부안과 농민단체안들을 일괄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였고, 법안소위를 구성,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그러나 4월 21일 현재 국회가 농민조합원의 기대와 열망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개혁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상 2011년 2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재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개혁은 또다시 좌초될 것이며, 오히려 개악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모든 제도 개혁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 이미 15년이란 길고 긴 시간동안 농민조합원들의 한과 열망은 쌓이고 쌓여 왔다. 이제 신·경 분리를 통해 농협이 바로 서고 신속하게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점을 국회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농협 사업분리는 지난 15년간 농민단체와 정부와

농협이 밀고 당기며 줄기차게 논의를 해 왔지만 이제야 때가 되어 역사적인 법안제출이 이루어졌다. 농협 사업분리에 대해 오늘과 같은 폭넓은 공감대를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와 국회 간에 만들어 낸 적이 언제 있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옛말처럼 국회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 낸 농협 사업분리를 위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농협으로 하여금 돈 장사가 아니라 농민조합원을 위해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농협개혁연대는 농민단체, 정부, 국회, 농협중앙회 관련주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올바른 사업분리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우리 농민단체가 하나가 되는 대결단을 촉구한다.

제 농민단체의 우선적 연대를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 농협개혁연대는 농협 임직원의 역할이 개혁되기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협동조합의 일주체가 되는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는 노동조합과 농민단체가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본의 아니게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세의 전환을 요구한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분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기보다는 부족한 첫술이라도 차근 차근 하나씩 분명하게 챙겨나가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중사회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하룻밤에 모든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업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2단계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분리를 추진하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하는 대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농협중앙회의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농협개혁연대는 농협중앙회가 최근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업 동시분리와 실사 후 자본금 배분원칙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농협중앙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업분리가 은행 만들기가 아니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실사 후 최소한 보유 자본금의 절반 이상(6조 원 수준)을 최우선적으로 경제사업에 배정,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줄 것을 240만 농민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중앙회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신용사업은, 일반 금융업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발전을 위한 상호금융의 건전한 육성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대응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원조합도 살 수 있는 길임을 농협중앙회는 다시 한 번 성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는 믿음을 주는 성실한 중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용기 있는 대결단을 촉구한다.

농협개혁연대는 정부가 농협과 농민단체의 중간에서 성실한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협치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는 정부가 농협과 농민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서로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농협과 농민단체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법 공포 이후 농협 사업분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감시와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에게 주어진 농협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농협법 개정 이후 올바른 사업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농민단체와 농협,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협 사업분리 이후의 지속가능한 농협발전을 협의하는 정부차원의 특별기구를 법 공포와 함께 지체 없이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대결단을 간곡히 촉

구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농협과 정부와 농민단체의 입장을 조정 단일안을 마련하여 농협 사업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농협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와 이후의 정국 변화, 그리고 국회의 새로운 원구성 등 예측할 수 없는 정치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국회가 250만 농민 조합원들의 15년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농협의 주인은 240만 농민조합원이다. 농촌 현장에 있는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이해에 바탕을 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농협과 농민단체 등 농업계 모두가 현실 여건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은 농업계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 농협개혁연대는 농협 사업분리라는 15년 된 농업계 제1의 개혁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제인 만큼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농업계 모두가 하나 되어 농협 사업분리의 우선순위를 살피면서 시차와 완급을 조정해 대타협을 이루는 대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3.3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0.6.25

지배구조 개선의 법 취지를 왜곡한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재고하라!

- 농협이 규정과 정관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관련법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

1. 6월 25일 농협중앙회는, 오는 28일 이사회 및 29일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할 사외이사 및 신용대표이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전문가 등과의 사전 협의조차 전혀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제약적인 중앙회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민주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를 면면을 보면 과반수 이상인 5명이 농협 출신으로 이루어져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

3. 특히, 농협법에는 농업인단체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농업인단체와 협의 및 추천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했음에도 농협중앙회가 규정과 정관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개정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와 국회, 농민조합원을 무시한 처사이고 향후 신·경 분리 관련 농협법 개정과도 연동된다.

4. 법으로 보장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의 잘못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대해서도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12만 한농연회원들은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 3.3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0.12.3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하여, 국회는 농협법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월 6일(월)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경 분리안을 둘러싼 농업인단체, 정부와 여야 정치권 간의 갈등 해결은 물론, 농협의 정치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 험거운 과정이 이어져



은 현시점에서,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의 농협법 심의는 늦었지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농식품위에서 '농협법 개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농협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농업계 및 국회 차원의 장기간 논의를 거쳐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는 점 또한 농협법 조기 개정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농협법 개정안 부칙에 '부족자본금을 법 시행일 이전에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는 이를 전격 수용하였다. 보험특례와 세금감면 문제 또한 농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간의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농식품위도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농협의 조세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제 중요한 것은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달성해 내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들은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단일안에 합의하였다. ▷경제연합회-상호금융연합회-중앙회의 3개 조직으로 분리할 것 ▷경제연합회가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일괄 인수한 후 금융지주에 투자할 것 ▷경제 자회사는 경제연합회가 일괄 관리할 것 ▷농민조합원의 재산인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를 부칙에 삽입할 것 등이 농업계 단일안의 핵심내용이다.

4. 농협법 개정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됐지만, 위에 제시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농업계 단일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하여, 240만 농민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협법의 올바른고도 조속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 3.34.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0.12.7

**'금융지주만의, 금융지주에 의한, 금융지주만을 위한' 사상 최악의 농협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재논의하라!**

- 정부·여당·농협중앙회가 합작한 대농업인 사기극이자 폭거 -

1. 12월 6일(월)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결과는, 정부·여당 및 농협중앙회가 만든 대농업인 사기극이자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어렵사리 합의된 농업계의 신·경 분리 단일안은 '4월 22일 농식품위 합의안을 기초로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철저히 내팽개친 채, '금융지주만의, 금융지주에 의한, 금융지주만을 위한' 사상 최악의 농협법 개악안 국회 통과마저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2. 이번 논의 결과를 보면,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을 위한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투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아울러 ▷상호금융연합회의 실질적인 설립·운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향후(상호금융연합회의) 분리를 전제할 수 있으므로 '독립회계'라는 말을 빼자'는 발언까지 있었다는 후문까지 나오고 있다.

3. 결국 어제 회의를 통해 자본금 배분,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법인화, 세제 문제 등 어느 하나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개악되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무원칙·무소신·무책임한 행보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일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은 상처투성이 누더기로 전락한 것이다.

4. 농민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 경제사업 및 조합 상호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강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의 근본 정신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이번 농협법 개정 논의를, 한농연 및 농업계는 절대로 인정·수용할 수 없다.

5.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농협중앙회는 350만 농업인이 농협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12월 6일 논의된 농협법 개악안의 전면 폐기 및 대국민·대농업인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나아가 농업계 단일안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 재논의에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와 국회, 농협중앙회가 밀실·졸속협상으로 만든 사상 최악의 농협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한농연과 농업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3.3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1.2.23

**올바른 신·경 분리를 위해 농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 중 6조 원 이상을 경제사업 부문에 최우선 배정하는 것이 관건 -

1. 지지부진했던 농협법 개정작업이 2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식품위는 3월 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금 배분 및 조세특례 등 남아 있는 핵심쟁점에 대해 심의한 뒤 3월 4일 농식품위 전체 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정부와 국회 농식품위 공히 최근의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짓고자 매진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경제사업 활성화의 핵심 조건인 자본금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계 내 외부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농협 경제사업(판매사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 중 최소 6조 원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투입토록 농협법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경제사업부문의 자본금 중 상당 부분이 현금화된 형태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무한경쟁에서 농협이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240만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지킬 수 있음을 국회 농식품위는 분명히 인식하여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아울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 산하에 '신경분리점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항도 농협법 부칙에 삽입해야 한다. '신경분리점검위원회'는 현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을 실시하여 사업부문별로 배분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점검·보완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법 시행 3년 후 기업공개(상장)를 하여 원활한 자본금 확충이 가능토록 해야 하고 ▷신·경 분리 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조세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지주회사 은행업과의 무한경쟁으로 존립의 위기까지 몰릴 우려가 큰 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법 시행 3년 후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법인화하도록 농협법 부칙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부와 국회 농식품위가 농협법 개정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 3.3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1.3.4

**농협 신·경 분리법안 여야 합의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농협 신·경 분리 이후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본금을 경제사업에 배분해야 한다 -

1. 3월 3일(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법안에 명문화 ▷중앙회-경제지주 이원화 ▷조세특례 △자본금 실시 및 배분 국회 선(先)보고 등으로 한농연 및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2. 그러나 핵심쟁점인 경제사업 자본금 배분방안을



명시하는 데에는 합의를 보았지만,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30%(최대 약 4조 2천억 원 예상)에 그쳐, 최소 6조 원 이상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사항과는 괴리가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농협의 정체성과 설립 취지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조합원 실익증진에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3. 그간 농협은 경제사업을 등한시한 채 신용사업에 매진하여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이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였다. 특히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이후 경제사업은 도·소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무한 경쟁을 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본금이 확충되어야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을 국회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4. 이에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하여 농협 경제사업에 최소한 6조 원 이상의 자본금이 법안에 명시되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 신경분리 법안 통과 이후에 농협이 명실상부한 판매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농식품부 산하의 '신경분리점검위원회'로 확대·구성하는 방안을 농협법 부칙에 명문화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 3.37.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2011.3.4

반농업, 반협동조합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어이 농협을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매판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오늘(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농림수산식품부 상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오랜 진통을 겪어 온 농협법 개정안을 본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농협개혁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해마다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농사를 지을수록 점점 더 피폐해지는 이 땅의 농투성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데, 농협은

그런 처지의 농민들을 우롱하고 수탈하는 데 앞장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농민들과 올바른 농협개혁을 염원하던 노동자들은 농협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만사를 제치고 농업회생을 위한 진정한 농협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런데 오늘 이런 농민들의 애절한 바람을 몇몇 국회의원이 철두철미하게 깎아뭇개고 날치기로 농협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위원장인 민주당 전남 나주 최인기, 한나라당 경북 영양 강석호, 경기 양주 김성수, 경기 안성 김학용, 경북 상주 성윤환, 경남 산청 신성범, 경남 남해 여상규, 경남 거제 윤영, 경북 군위 정해걸, 경남 의령 조진래, 서울 성동구 진수희, 강원 홍천 황영철, 민주당 제주도 김우남, 전북 군산 강봉균, 전남 해남 김영록, 전남 담양 김효석, 충북 진천 정범구, 자유선진당 충남 보령 류근찬, 무소속 강원 속초 송훈석 의원 등을 이 땅의 농업을 등지고 농심에 못을 박은 반농업 국회의원으로 규정한다.

특히 민주당의 후안무치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민주당은 2일 농민단체와 만나 농업회생을 위한 농협개혁의 과제에 대해 숙의하면서 지금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은 농협개혁을 위한 진정한 대안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이 법을 2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다. 오늘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으며 이 실망감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저버리도록 하고 있다.

이 19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배워 먹은 게 도둑질이라지만 할 짓이 없어서 종자씨 한 톨로 생명을 보듬고 있는 농심에 못을 박는가.

정부발의 농협법은 경제사업 활성화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느니, 어찌니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봐야 결국 농협을 지주회사로 바꾸고 반세기 농민들의 농업자산을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농심에 못을 박은 행위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향후 국회 본회처리와 또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자산을 투기자본에게 팔

아치운 19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며, 강경한 노동자 농민 연대투쟁에 농협을 투기자본에 팔아먹으려는 장밋빛 부푼 꿈은 결국 좌초하고 말 것이다.

4.27.재보선과 총선을 통해 19명의 반농업 국회의원을 포함해 농협법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철저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3.38.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1.3.11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작, 신·경 분리의 올바른 추진에 범농업계가 단결하자!

–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1. 한농연 등 주요 농업계가 그토록 주장해 온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는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12만 농업경영인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2. 그간 우리 농업인은 농산물 혈값 판매 등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와 열악한 농산물 유통구조 속에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기 위한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 활성화를 염원해 왔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으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으로 신용사업에 종속적인 경제사업의 50년 역사를 단절하고, 자체자본금을 통해 독립된 의사결정과 사업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3. 물론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경제사업 활성화와 상호금융의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농협의 판매·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직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농업계 모두가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이익이 최우선되고, 상호금융의 발전과 판매농협으로의 전환이 신·경 분리과정에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농협중앙회는 이번 신·경 분리를 통해 350만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계의 기대가 무엇인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 새로 출범하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금 당부한다.

### 3.39.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 허 권, 전국금융사무연맹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위원장 나동훈, 2012.2.3

대책도 희망도 없는 농협 신·경 분리 연기하라!

– 여·야·정부 3자가 합의한 국회의결 무시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

– 정부의 농협 죽이기에 한숨만 쉬는 회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며 –

주지하다시피 당초 농협은 2017년까지 자주적인 신·경 분리 계획을 정부와 함께 마련했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변심으로 갑작스럽게 5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기게 되면서 모든 것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다.

지금 농협이 잘못되어서 공적자금을 요구한 것인가? 전혀 아니다. 정부가 농업인의 실익제고를 위한다는 목표로 6조 원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약속했고 또 다시 이를 뒤엎어 4조 원만 지원하겠다는 꾀수를 자처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국회를 뒤흔드는 농협 노동자의 투쟁과정에서 정부는 325조 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다급함에 당초 쓸모없는 1조 원 현물출자를 2조 원의 유동화 가능한 현물출자와 3조 원 이자보전 방식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의 출자라 함은 시장성 및 교환가능성에 의하여 객관적인 시가나 교환가치의 산정이 용이한 자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로공사 같은 비상장 주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더욱이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출

자재원의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일각에서는 농협 죽이기의 확인사살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출자방식에서도 정부는 출자를 농협중앙회가 아닌 금융지주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종합농협 해체에도 만족하지 않고 아예 농협을 정부의 허부기관으로 예측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금융에 직접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위험자산의 증가로 BIS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어 금융지주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손익악화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처분권을 갖는 상장주식을 출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금융으로의 직접 출자는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독배(毒盃)이다.

지금 농협의 형국은 정부의 꼼수정책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정부주도의 신·경 분리를 반대했던 국회는 정부에 대해 신·경 분리 연기를 요구하고, 농협을 파렴치한 조직으로 매도해 가며 신·경분리를 주도했던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물출자 외에도 국회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3조 원의 농금채를 연기금 등에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하기로 한 이자보전 외에 차입선 알선이나 인수조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책임을 농식품부에 전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농금채를 발행하는 등 현재 상황에서 다시 또 3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차입선 알선 없이 판매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통하여 국회에서 여·야·정부 3자가 합의로 연기금 등에서 인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결정은 곧 국민의 결정이다. 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종합농협이 해체되는 시기가 딱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치고 빠지기 식의 양치기 소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현물출자의 방식과 대상처가 결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시행일 이전까지 물리적으로 법인분할의 법적절차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경영진의 무계획적이고 무능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표리부동(表裏不同)하지 말고 국민과 더불어 300만 농민 앞에 진실을 공표하라!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족자본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종합농협을 해체할 만큼 국내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농협이 자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신·경 분리 시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용기있게 주장하라!

특히, 졸속적인 농협 신·경 분리 강행의 주범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작금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도저히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신·경 분리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연기논의를 공식화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300만 농민을 살리고 농협이 농촌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은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겨울부터 매서운 칼바람과 맞서 싸우며 농협 신·경 분리 연기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현재의 빚잔치 신·경 분리는 결코 300만 농민에게 실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건물로 치면 사상누각(砂上樓閣)이요, 그 누각 위에 농민들을 볼모로 붙잡아 두는 꼴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경 분리란 말인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그야말로 농민과 농촌이 피폐의 길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농협마저 자본금 부족상태에서의 법인 분할, 비상장 주식 출자에 따른 금융지주 경영악화, 차입선 부재에 따른 3조 원 농금채 발행 실패 등의 악재로 난파하게 된다면 더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농협 신·경 분리의 한 축인 보험사 신설이 시작 전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금감원의 '출범준비사항 점검' 결과, 법적 유예적용 미반영 및 전반적

인 IT 적용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들은 쉬쉬하기에 급급하다는 전언이다. 전년도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농협의 신뢰는 재생할 수 없다. 직원들의 능력부재라는 말을 또 할 수 있겠는가? 보험사 출범을 연기하고 완벽한 시스템과 법적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와 경영진에게 경고한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3월 2일 신드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라! 권토중래(捲土重來)하여 일어서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깊다. 진정으로 농업과 농촌을 위한다면 과감히 연기하는 용기를 가져라!

우리 노동조합은 불을 켜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농협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다하여 신·경 분리를 연기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과천과 여의도를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끝 끝내 조직을 사수할 것이다.

### 3.4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2012.3.2

#### 탐욕지존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규탄한다!

오늘(3월 2일)자로 작년 3월 11일 통과된 농협법이 시행된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농협캐피탈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다고 하니 농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농민에게서 농협마저 빼앗아 가는 농협법 시행을 규탄한다!

농협개혁을 앞세우며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사업이 아닌 신용사업 활성화에 있다. 농협법 통과 이후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회사 출범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농협개혁의 핵심이 경제사업 활성화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분리하는 금융지주와는 달리 경제지주회사의

분리 및 이관은 3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한다.

3년 동안은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산까지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출범이라는 잣대에만 관심이 있는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정권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도 5년 이내에 평가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연합회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 시행은 탐욕지존 농협중앙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되어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두 귀를 닫은 채 금리 장난에, 쌀 도둑질에, 비릿값 도둑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가 아닌가? 이제 지주회사가 되었으니 더는 농민들과 농업이 아닌 이윤 추구만을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모든 것을 경쟁과 이윤으로 판단하는 지주회사방식의 경제사업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미명 아래 또다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 저가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에 앞장서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농협법 개악이 최대 성과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번 농협법 개악은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다.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진 농협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경제사업을 중심에 둔 신·경 분리는 그 목표를 상실한 채 금융지주회사 출범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농협법 개악을 최대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무엇이 개혁이고 성과란 말인가?

농민과 농업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

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계다가 오늘 농협은행의 출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서 농협을 빼앗아가고 더욱더 탐욕지존이 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야욕에 축하를 보내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법 시행과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규탄한다.

농협이 농협답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이 아닌 연합회 방식의 농협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의원조합장에 의한 간선으로 선출되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한 해 8조 원이 넘는 무이자자금과 막강한 인사권을 휘두르며 농민과 농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천적 모습도 보이지 않는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4월 11일 총선을 맞아 작년 농협법 개악안 통과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또한 4월 총선투쟁을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실천투쟁으로 벌여 나갈 것을 선언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 제6장

## 범령

# 제6장 법령

##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3.2] [법률 제11304호, 2012.2.1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

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최대 봉사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조(중앙회 등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 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③ 중앙회 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 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 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조 삭제 <2011.3.31>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09.6.9>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군·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2절 설립 <개정 2009.6.9>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19.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절 조합원 <개정 2009.6.9>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3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 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24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을 납부할 때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7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8조(가입)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

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지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결 취소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4절 기관 <개정 2009.6.9>

제34조(총회)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최 전날까지 알린다.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전문개정 2009.6.9]

제42조(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는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



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⑦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1.3.31>

⑨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5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闕位)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할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7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

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償還)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揭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1. 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
2.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
3.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⑧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⑨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신설 2011.3.31>

⑩ 누구든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

감시단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신설 2011.3.31>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6.9]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현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조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제51조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

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11.3.31>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1]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수탁(受託)·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의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6.9]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에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에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에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56조(직원의 임면)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1.3.31>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절 사업 <개정 2009.6.9>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제품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 4. 삭제 <2011.3.31>
- 5. 복지후생사업
  -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장제(葬祭)사업
  - 다. 의료지원사업
-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填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填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 등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 등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 ④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

- 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60조(조합원 교육)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

- 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 ③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61조 삭제<2011.3.31>
- 제6절 회계 <개정 2009.6.9>**
- 제62조(회계연도) 지역농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전문개정 2009.6.9]
-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67조의2 삭제 <2011.3.31>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

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전문개정 2009.6.9]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이  
 2. 자산 재평가 차이  
 3. 합병 차이  
 [전문개정 2009.6.9]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절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 및 청산 <개정 2009.6.9>**

제75조(합병) 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6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77조(분할) 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8조(조직변경) ①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80조(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지역농협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6.9]

제83조(파산선고)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84조(청산인)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5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86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절 등기 <개정 2009.6.9>

제90조(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익을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제91조(지사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93조(변경등기)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5조(합병등기 등)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

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7조(해산등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8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9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1. 교육·지원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 가축의 개량·증식·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6.9]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개정 2011.3.31>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

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9조(구역) 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 1. 교육·지원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 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나.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라. 신제품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 마.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사. 보관사업
-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3. 삭제 <2011.3.31>
-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

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11.3.31>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품목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09.6.9>**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③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6(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 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

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 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 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 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1.3.31>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 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 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 제1절 통칙 <개정 2009.6.9>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0조(정관 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21조(설립·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2절 기관 <개정 2009.6.9>

제122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 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장
2. 농업경제대표이사
3. 축산경제대표이사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문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 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의2(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② 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각 소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31>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의3 삭제 <2009.6.9>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09.6.9>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30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2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28조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소관 경제대표이사에게 각각 위임·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2.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제3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③ 회장이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3.31>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3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

②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3.31>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3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 설정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3.31>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3.31>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차목·카목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 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 이사 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⑥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사업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1>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은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 등과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를 수탁(受託)·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러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⑪ 누구든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

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각각 임면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수행한다.

⑤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소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① 제125조의5제1항과 제1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28조제7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31>

② 이 법 시행 전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 관련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하려면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

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 제4절 사업 <개정 2009.6.9>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 3. 축산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 4. 상호금융사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 다. 회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 할인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

- 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3.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

- 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1>
-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3.31>
- 제134조의4(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2. 조합, 중앙회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법 제134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1]

제134조의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1.3.31]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

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135조의2(농산물 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 등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 이 조 및 제135조의3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 등은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제135조의3(농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 평가)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35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의 이사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 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 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5명
4.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6.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④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중앙회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1]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1. 농산물 등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등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 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

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

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1.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9조 삭제 <2011.3.31>

제140조(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제141조 삭제 <2001.9.12>

### 제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 <개정 2009.6.9>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전문개정 2009.6.9]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6.9]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09.6.9>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



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1조(우선출자자 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

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7절 농업금융채권 <개정 2009.6.9>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 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57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8절 회계 <개정 2009.6.9>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6.9]

제159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1]

제160조(결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절 준용규정 <개정 2009.6.9>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8항·제9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



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 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8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는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제162조(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1.3.31>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34조의4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⑥ 삭제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 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5조 삭제 <2011.3.31>

제166조(경영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 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등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 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쇠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수신(與信·受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 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 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 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해당 조합 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조합 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조합 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 등으로서 제142조 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 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회장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69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7장 벌칙 등 <개정 2009.6.9>

제170조(벌칙) ① 조합 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71조(벌칙)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 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 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 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6조제7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제111조 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6. 제67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7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 제69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12. 제72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85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14. 제87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경우

15. 제88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7. 제146조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나 제16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참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0조의3(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1.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제6항(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제112

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1조제6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단순위헌, 2008헌바106, 2010.7.29. 농업협동조합법(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31]

제174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51조제6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31>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1.3.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1]

### 부칙 <제11304호, 2012.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6018호, 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



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축산업협동조합법
3. 인삼협동조합법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 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

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의 부담 등)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③ 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임원 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임원 등의 선출·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② 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

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력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원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본다.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3.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3.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원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제4819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협

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 (회원의 사업참여 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축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낙농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③ 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0.1.28>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한국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0.1.28>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 예금자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 신용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 및 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예금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중앙회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2001.9.12>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177호, 2000.1.21> (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부칙 <제6256호, 2000.1.2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한국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부칙 <제6316호, 2000.12.29> (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 내지 ⑦ 생략

### 부칙 <제6514호, 2001.9.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6599호, 2002.1.1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40호, 2004.10.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273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1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제107조·제112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1조·제75조의2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5항·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61조의 개정규정 중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단서(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1항·제2항(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과 중앙회 전무이사의 총회 동의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의 회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의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제1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감사는 제1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상임으로 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회장이 임명한 집행간부는 제1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 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 부칙 <제7605호, 2005.7.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638호, 2005.7.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502호, 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35>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749호, 2007.12.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750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4〉 까지 생략  
〈2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8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79호, 2008.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980호, 2008.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9620호, 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9761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7·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상황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5항(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앙회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

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무소 등의 이전·설치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에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역농협 설립에 관한 특례)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제11조(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협에 관한 특례)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제1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역농협의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합 이사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

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경업자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중앙회 이사의 정수 및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이사는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보되, 중앙회 이사의 수가 30명 이내가 될 때까지는 총회에서 이사(중앙회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결원이 있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배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중앙회 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 및 이사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중앙회의 감사위원 임기 및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12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522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④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정관의 작성·변경,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사업부문 자본배분)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최초의 보유자본 배분에서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추진) ① 중앙회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2.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편입 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자문

2.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③ 중앙회는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의 추진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7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과태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9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 만료일까지 제46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될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제1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은행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3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0
2.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까지: 100분의 85
3.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 100분의 70
4.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 100분의 55
5.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100분의 40

④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모집자격자(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를 말한다)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에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⑧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⑨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특례) ①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를 포함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 등과 중앙회 사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협금

융지주회사 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같은 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으로 본다.

③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은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후 전산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이 전환계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회의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농협은행에 대한 출자 특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농협은행 설립 시에 한정하여 농협은행에 자기자본 이내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등기명의 등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

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19조(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20조(농협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중앙회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장기대출한 것은 농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제1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또는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것으로 보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제154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

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제26조(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① 회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7.14>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삭제 <2011.5.19>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 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1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삭제 <2012.2.10>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로 한다.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684호, 2011.5.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 부칙 <제10693호, 2011.5.1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략

### 부칙 <제10694호, 2011.5.19>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 부칙 〈제10854호, 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16〉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부칙 〈제10983호, 2011.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생략

##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2.3.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1.6,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 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 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 원 이상일 것

###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확약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9.12.11]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조의2(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居所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본조신설 2009.12.11]

[중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09.12.11>]  
제4조의3(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4조의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조의2에서 이동 <2009.12.11>]

제4조의5(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 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제5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① 조합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 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1]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

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②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업자(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업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천 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 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2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 조합원 수가 3천 명 이상인 조합은 3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가.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6>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2.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가.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6>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전문개정 2009.12.11]

[시행일: 2012.7.22] 제11조의5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09.12.11]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09.12.11]

[시행일: 2012.7.22] 제11조의7

제12조(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 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 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

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3. 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 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합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① 중앙회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운용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 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7. 제6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

[전문개정 2009.12.11]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1. 유가증권의 대차(貸借)거래
2.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1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3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15조의5(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중앙회는 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할 때에 법 제132조에 따른 축산경제사업 특례의 취지에 따라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17조 삭제 <2001.12.15>

제18조 삭제 <2001.12.15>

제19조 삭제 <2001.12.15>

제20조 삭제 <2001.12.15>

제21조 삭제 <2001.12.15>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조합, 중앙회, 연합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30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1]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

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 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는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전문개정 2009.12.11]

제29조(우선출자자 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 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 수와 번호
3. 증권 취득 연월일

[전문개정 2009.12.11]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1조의2(조합 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0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③ 조합 등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1.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2.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전문개정 2009.12.11]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6>

1.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9.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는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

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43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등 및 중앙회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6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4조의4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 등과 중앙회·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 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2.1.6]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 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 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 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조합 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해당 조합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3. 그 밖에 조합 등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

하는 채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 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에 따른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6>

1. 법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5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7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과태료 감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1]

**부칙 <제23496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 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에 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을 “신용사업에 한하여”로 한다.

-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8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⑨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 ⑪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 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⑮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은행”으로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2.3.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2호, 2012.3.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5·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설립비용)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 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 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가입신청) 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 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 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면
4. 가입을 의결한 해당 법인의 총회의사록(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이사록을 말한다)
5. 대차대조표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 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 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해당 사업 소관 사업

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3.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①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11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 나.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의4 삭제 <2012.3.2>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34조의4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 회사에 법 제13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

제1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2.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 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

## 부칙 <제262호, 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정부안

의안번호	7020
------	------

제출연월일: 2009.12.16.

제출자: 정부

### 제안 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 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로 변경함.
  - 3) 협동조합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합이 연합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안 제50조제4항)
  -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 시장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연합회의 임원(안 제125조 및 제128조제3항)
  - 1)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축소되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주요 업무 내용도 사업의 직접 수행에서 회원조합 지원업무로 바뀌에 따라 임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서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전무이사는 교육·지원부문을 직접 담당하면서 상임이사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는 농업경제업무와 축산경제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함.
  - 3) 전무이사의 총괄하에 상임이사가 각각 농업경제업무와 축산경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연합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 1) 현행 중앙회는 유통·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하면서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
  - 3) 연합회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 마.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 2) 연합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 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농협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 2) 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한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2) 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 1) 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수익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 2) 연합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합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2. 조진래 의원 대표 발의안**

의안번호	7396
------	------

발의연월일: 2010.1.12.  
 발의자: 조진래·유기춘·이한성·신상진·정병국·김정권·신성범·장제원·손숙미·최구식 의원(10인)

**제안 이유**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이라는 특정인만이 투표권을 갖는 등의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또한 통상 후보자와 투표자 간 학연·지연 등 친분 관계가 있어 금품수수 등과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려는 사



레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자 등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4항제3호).
- 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 메시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제5호).
- 다. 특정 조합장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4호 신설).
- 라.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5호 신설).
- 마.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6호 신설).
- 바.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72조제2항제7호 신설).
- 사.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177조 신설).

### 4.3. 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안

의안번호	7595
------	------

발의연월일: 2010.2.11.  
 발의자: 강기갑·곽정숙·이정희  
 홍희덕·권영길·최문순  
 유원일·조승수·김진애  
 김영진·천정배 의원 (11인)

### 제안 이유

현 「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달라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의 사업이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로 운영된다면, 농협중앙회는 날로 변창하지만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은 날로 쇠퇴하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개혁이 완성될 때 비로소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도 활성화될 것임. 한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사업조직으로 되어 있는 현행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조직으로 재편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의 연합사업으로 재편함으로써, 농협중앙회를 농협법에 있는 대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임.

하지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에 있어 지주회사 방식은 농협중앙회 자체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지,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할 것임.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본래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농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키며,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하되 협동조합의 큰 틀 내에 두는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현행 농협중앙회를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전환(제5장, 제5장의2, 제5장의3, 부칙 제3조)
  - (1) 현행 농협중앙회의 세 가지 기능(비사업기능,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킴.
  - (2) 전국협동조합총연합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함.
  -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 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 법인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나. 비사업 조직으로서의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의 설립(제5장)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품목조합, 연합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서 회원의 회비와 경비, 명칭사용료로 운영하되, 외국의 경우처럼 국고보조도 가능토록 함(제113조의2, 제115조, 제117조, 제134조제2항, 제159조의2).
  - (2)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농정활동을 담당함(제134조).
  - (3)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

(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하였으며,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제126조).

- 다.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제5장의2)
  - (1)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을 회원으로 함(제161조의4).
  - (2) 회원을 위한 연합경제사업, 회원들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 회원의 생산협동 및 생활협동사업에 관한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함(제161조의25).
  - (3) 임원으로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감사위원 3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 중 사업전담대표이사 2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제161조의17).
- 라.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제5장의3)
  - (1)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조직을 회원으로 함(제161조의45).
  - (2)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조합 및 연합회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제161조의43).
  - (3)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감사위원 3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 중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제161조의58).
- 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의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제161조의66)
  - (1)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
  - (2)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3) 연합회,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의 경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161조의66제4항).
  - (4) 신용사업연합회의 공제사업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66제3항제7호).



바.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  
 (1) 경제사업연합회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회원과 경합하는 사업에 대한 이관계획 및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회원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부칙 제13조).

사.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준비 행위

- (1)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함(부칙 제3조제1항).
- (2)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물 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부칙 제3조제2항).
- (3)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부칙 제6조, 제3조제3항).
- (4)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도록 함(부칙 제3조제4항).

아.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배분 및 확충 방안

- (1)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함(부칙 제7조 제1항).
- (2)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부칙 제8조제2항).

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

- (1)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시·군지부를 회원에 이관 또는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시·군지부

신용사업부문의 제1금융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협은행의 지점을 둘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제6항).

- (2)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회원에 이관 또는 폐지하도록 함(부칙 제14조).

차. 농협중앙회 직원의 승계 및 고용보장(부칙 제9조)

- (1) 농협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직원으로 승계하고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

#### 4.4.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안

의안번호	7632
------	------

발의연월일: 2010.2.18.

발의자: 김춘진·장세환·양승조·안민석·김성순·이용경·이석현·백원우·박은수·문학진 의원(10인)

#### 제안 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실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회원과 그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대화된 조직과 방만한 사업 경영으로 더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는 산지 및 소비자 유통

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는 상호금융의 영세성·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상호금융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이하 “경제연합회”라 함),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이하 “상호금융연합회”라 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3조,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1 신설).
- 나. 경제연합회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하고, 전무이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업경제업무와 축산경제 업무는 각각 상임이사가 전담하도록 함(안 제125조 및 제128조).
- 다.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안 제134조의2 신설).
- 라.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안 제134조의3 신설).
- 마.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안 제134조의4 신설).
- 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경제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

-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4조의5 신설).
- 사. 경제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4조의6 신설).
- 아. 경제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안 제137조).
- 자. 경제연합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 차. 상호금융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두고, 상호금융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161조의4·제161조의7 및 제161조의9 신설).
- 카.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 및 상호금융연합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 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161조의11 신설).
- 타. 상호금융연합회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14부터 제161조의19 까지 신설).
- 파.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안 제161조의21 신설).
- 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교육·연구 조사·홍보·지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 하며,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함(안 제161조의22 및 제161조의37 신설).
- 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의 구성원에 경제 연합회의 회장, 상호금융연합회의 회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61조의26 신설).
- 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61조의27 신설).
- 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되, 감사위원은 경제연합회 및 상호금융연합회의 감사위원장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이 맡도록 함(안 제161조의31 신설).
- 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농업협동 조합의 회장은 경제연합회 및 상호금융연합회의 회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161조의32 신설).
- 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회원을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61조의33 신설).
- 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영리·비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

함(안 제161조의38 신설).  
 서. 현행 중앙회의 재산,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 중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부문은 경제연합 회가, 상호금융사업부문은 상호금융연합회가, 교육·지원 및 감사 사업부문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어. 농업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정체성을 지키고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분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노력 으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 자금에 한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함(안 부칙 제6조).

#### 4.5. 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안

의안 번호	8185
----------	------

발의연월일: 2010.4.15.  
 발의자: 김영록·강기정·김영진·김재균·박은수·신건·신낙균·안규백·양승조·우윤근·원혜영·이용섭·조경태·조영택·최인기 의원(15인)

#### 제안 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회원과 그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었음. 또한 비대화된 조직과 방만한 사업 경영으로 더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는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협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제기 되었음. 농협중앙회가 비조합원 대상의 신용사업 수익제고에만 치중하고, 유통사업 등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제사업에 소홀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최근 금융위기 상황이 도래하여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신용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조합에 대한 경영보조와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현행 농협운영시스템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지 및 소비자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연합회, 농협금융지주 등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지 및 소비자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신설하도록 함.  
 상호금융은 영세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체제로의 전환과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상호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와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연합회(이하 “경제연합회”라 함)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3조 및 제161조의2).
- 나. 중앙회에 교육·지원사업을 전담처리하는 전무이사 1명과 상호금융사업을 전담처리하는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한편, 상호금융사업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에 소이사회를 두고 독립

- 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8조 및 제134조제4항).
- 다. 사업분리에 따른 중앙회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회 이사 수를 현행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도록 함(안 제126조 제1항).
- 라. 중앙회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7조).
- 마. 중앙회는 농업인 및 조합의 실익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37조의2).
- 바.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은행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은 경제연합회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37조의3).
- 사. 중앙회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37조4).
- 아. 조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 두되, 경제연합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6조).
- 자. 중앙회 및 경제연합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농협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의2 및 제161조의15).
- 차. 경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과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61조의6).

가. 경제연합회에는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업경제사업을,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 사업을 전담처리하도록 함(안 제161조의5, 제 161조의7).

다. 경제연합회의 축산경제사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모두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161조의8).

파. 경제연합회는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경제연합회의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연합회가 다른 법인의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12부터 제161조의14까지).

하. 중앙회의 사업분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경제연합회 등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경제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이 법 공포 후 즉시 조세감면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필요한 입법절차에 착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거. 경제연합회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가 경제연합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제연합회로 의제하도록 함(안 부칙 제6조).

너. 조합이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0년까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 금융위원회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농림수산물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9조).

더. 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전산업무 지원과 전산시설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설 및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0조).

러. 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적정자본 금을 경제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되는 자본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12조).

#### 4.6. 류근찬 의원 대표 발의안

의안 번호	8967
----------	------

발의연월일: 2010.7.29.

발의자: 류근찬·김영록·권선택·이명수·김용구·변용전·김낙성·임영호·김성수·박선영·김창수·이진삼 의원(12인)

#### 제안 이유

현재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가 각 조합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조합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공

정한 선거관리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 및 혼탁 선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 그 문제점이 상당한 실정임.

또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의 직(職)을 사직하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낙선 후 다시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해당 선거의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아울러 조합장, 이사·감사 및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에 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5조제8항 신설).

나. 지역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및 제112조제1항).

다.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4.7. 문학진 의원 대표 발의안

의안 번호	9708
----------	------

발의연월일: 2010.10.29.

발의자: 문학진·신낙균·조정식·정동영·이석현·

최규식·이춘석·김상희·장세환·김영진·강기정·이윤석·강창일·김충조·백원우·노영민·김재균 의원(17인)

#### 제안 이유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는 선거운동방법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지 등 기존 기득권 층에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와 투표자 간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하여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부행위의 제한 등 선거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규정하여 이를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하고 선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 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며 당선 무효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와 금품수수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규정하여 선거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7.29.2008헌바106)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법을 법률로서 정하고, 또한 50배 과태료 규정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09.3.26.2007헌가22)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개정에 따라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선거운동 방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0조제6항 신설).

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하거나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안 제5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라. 당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0조의2 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안 제173조제2호 신설).

마.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되, 그 상한액은 3천만 원으로 함(안 제174조).

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6조).

사.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177조 신설).